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864-01

202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864-01

2021년도 인권교육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보고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12.

연구수행기관 국제아동인권센터
책임연구원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前 사무국장/변호사)
공동연구원 노운영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원)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상원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오혜민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전미아 (프롬맘프롬미 심리상담센터 센터장)
연구보조원 이하영 (국제아동인권센터 연구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8
3. 연구 방법	8

II. 이론적 배경

1. 아동복지시설의 인권보장 실태	13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17
3. 인권 친화적 아동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국내법·제도	24
4. 소결	31

III.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현황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태	37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효과성	39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41
4. 소결	49

IV.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53
2. 설문조사 결과	55
3. 면접조사 개요	88
4. 면접조사 결과	92
5. 소결	175

V.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필요성	183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요	186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192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동지	226

VI.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제언

1.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243
2. 다른 교육체계와의 연계와 단계적 통합	245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모니터링 제도 마련	246
4. 인권교육·훈련을 위한 실효적인 공적 지원	247
5. 인권‘교육’과 인권‘옹호’의 유기적 연결	248
6. 인권교육 활성화와 시설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249

참고문헌	251
------------	-----

별첨자료	257
------------	-----

1. 설문조사 질문지	257
2. 면접조사 질문지	266

표 목 차

〈표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현황	4
〈표 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교육 관련 권고	6
〈표 3〉 연구방법 개요	9
〈표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15
〈표 5〉 아동공동생활가정 교육가이드 참조	41
〈표 6〉 설문조사 참여 시설	53
〈표 7〉 설문조사 내용	54
〈표 8〉 응답자 정보	56
〈표 9〉 응답자 근무 시설 정보	57
〈표 10〉 성별에 따른 시설 내 종사자 수	58
〈표 11〉 시설 이용 아동 수	59
〈표 12〉 근무환경	61
〈표 13〉 업무 만족도	62
〈표 14〉 출생미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아동	63
〈표 15〉 아동의 원가정 보호 관련 정보 및 교육 유무	63
〈표 16〉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한 노력	65
〈표 17〉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아동	66
〈표 18〉 형제자매 동일 시설 거주 시 함께 생활하도록 배치 여부	66
〈표 19〉 형제자매 타 시설 거주 시 연락 가능 유무	67
〈표 20〉 시설 내 아동의 참여권	68
〈표 21〉 종교의 자유	69
〈표 22〉 진정제도의 필요성	70
〈표 23〉 진정제도의 활용	70
〈표 24〉 진정제도 활용 시 종사자나 아동의 신원 보장 여부	71
〈표 25〉 소지품 검사 여부 및 방식	71
〈표 26〉 외부인의 아동 개인 공간 방문 시 사전 동의 여부	72
〈표 27〉 CCTV 설치된 위치 및 이유 설명의 필요성	72
〈표 28〉 CCTV 열람에 대한 관리	73
〈표 29〉 시설 내 상담 전문인력·외부 상담사 연계	74
〈표 30〉 시설 내 상담 공간 여부	74
〈표 31〉 장애아동 담당 여부	75
〈표 32〉 장애아동의 해당 장애 관련 교육 여부	75

〈표 33〉 장애아동 특성 고려한 양육환경 제공 여부	76
〈표 34〉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여부	76
〈표 35〉 아동의 자립 지원 담당자	77
〈표 36〉 개별 아동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여부	77
〈표 37〉 자립 준비 프로그램·서비스 자체 운영 또는 연계 여부	78
〈표 38〉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어려움의 원인	78
〈표 39〉 시설 내 공동 훈육 지침 마련 여부	79
〈표 40〉 신체 처벌, 강압적인 말, 간접체벌에 대한 필요성	80
〈표 41〉 코로나19 이후 아동 및 종사자의 경험	82
〈표 42〉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지에 대한 여부	83
〈표 43〉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	83
〈표 44〉 인권교육의 강의 방식	84
〈표 45〉 인권교육이 직업 태도 또는 행동에 미친 영향	85
〈표 46〉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인권교육 여부	85
〈표 47〉 인권교육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86
〈표 48〉 종사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88
〈표 4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 질문 분석틀	91
〈표 50〉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102
〈표 51〉 프로그램 세부 활동 및 소요 시간	190
〈표 52〉 세부 활동별 목표	191

그림 목 차

<그림 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3
<그림 2> 보건복지부 지침이 안내하는 아동인권교육	29
<그림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43
<그림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44
<그림 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45
<그림 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회복지와 인권”	46
<그림 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46
<그림 8> 국제아동인권센터 교육계획(안)	48

연구 요약

I. 서론

○ 연구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인권 보장 실태와 종사자 인권 의식의 관련성: 아동복지시설은 집단생활시설의 특성상 일상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제한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사생활과 기본적 자유가 적절히 보장되기 어려움. 아동의 일상을 사회와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 보호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 대부분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조치되는 현재, 시설 내 아동의 인권보장은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의식이 특히 중요한 요인에 해당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체계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관련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생활환경 및 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지지체계의 역할이 아동권리 보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부재함
- 아동과 아동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중요성: 유엔의 인권교육훈련 선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일반논평, 그리고 현재까지 채택된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촉진하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등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있음. 즉, 인권을 아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권리이며,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으로서, 아동의 가정환경이자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 아동의 권리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
- 사례 중심의 인권교육 필요성: 최근 아동복지시설 현장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유입에 따른 저연령 아동의 입소 비율 증가 및 출생등록의 어려움, 학대피해아동의 시설 배치 증가, 집단생활에 따른 사생활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어려움, 우범소년 통고 문제, 아동참여와 의견청취권 실현의 한계, 나아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원가족과의 교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음.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갈등 상황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의 인권보장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현황 및 실태 파악
-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법·제도 현황 확인
-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현장의 아동인권 이슈와 인권교육에 대한 시설 종사자의 욕구 파악
- 4)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5)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 및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연구 방법

- 문헌조사: 인권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국제법규와 국내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인권교육, 아동인권교육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파악함
- 설문조사: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총 492명에 대한 인권의식과 경험을 조사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함
- 면접조사: 시설 종사자 18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답변의 경향성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종사자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파악하여 설문조사의 정량적 한계를 보완함. 나아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사례를 취합·정리함

II. 이론적 배경

○ 아동복지시설의 인권보장 실태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종사자 대상으로 수행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견청취권 등 각 권리 항목에서 아동과 종사자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즉, 시설보호아동의 인권보장 상황에 대해 종사자가 아동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2020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물관리나 약물복용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대 중에서 정서학대의 빈도가 가장 높았음. 집단 생활이라는 특성상 인권침해나 제한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결과임
- 한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시설보호아동의 권리 보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상심리상담원과 보육사,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의 인원수가 현저히 부족한데,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임상심리상담원을 포함한 여타 최소한의 법정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태임. 결국 종사자가 아동을 중심에 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노동환경이며, 이는 곧 시설보호아동의 권리 침해 가능성으로 이어짐

-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을 중심에 둔 아동보호체계의 한 내용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아동보호에 최선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함. 10년의 기간을 사이에 둔 아동복지시설 대상 실태조사 결과와 지금의 미비한 법·제도는 시설보호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줌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1)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 1978년 비엔나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이후, 1994년 유엔총회는 1995년 1월 부터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으로 선포함. 유엔총회는 1995년 「유엔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1995-2004)을 채택하면서, 특히 아동 등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훈련에 대하여 특별히 중점을 둔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2004년 유엔총회는 모든 영역에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을 선포하고, 2005년부터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함. 1·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채택에 따른 활동들의 결과로, 2011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인권교육 훈련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RES/66/137, 이하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이 채택됨
- 이후 유엔은 제1·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행 강화 및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 대상 인권교육 촉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을 거쳐, 2019년에는 제4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20-2024) 행동계획 초안을 채택하였으며(A/HRC/42/23),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 Development Goals)의 세부목표도 “인권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강조함(세부목표 4.7.)

2) 인권교육과 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 제28조(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제29조(교육의 목적)
- 아동권리협약 제3조(아동 최상의 이익), 제20조(아동의 대안양육에 대한 권리)
- 아동권리협약 제12조(아동참여와 견해존중)
- 아동권리협약 제25조(시설 배치를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
- 아동권리협약 제42조(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알릴 당사국의 의무)
- 일반논평 제5호: 협약 이행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행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및 사법부 구성원, 그리고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훈

련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수준에서의 직접 훈련과정, 행동강령 및 교육과정에 협약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강조함

- 일반논평 제13호: 당사국은 아동을 위해 일하거나 아동을 상대하는 전문가 등 아동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협약 제3조 제1항 및 그 실질적인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함
- 일반논평 제12호: 시설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배치, 위탁가정에서의 양육 규정,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또한, 아동이 다른 아동 및 성인과 학습하고 놀고 생활하는 시설에서 인권이 실천되고 있을 경우에만 인권교육이 아동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아동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기관에서는 아동의 의사표현 권리가 아동의 철저한 검증 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언급함

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1996년 제1차 최종견해에서부터 2019년 제5-6차 최종견해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아동 관련 종사자의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훈련을 시행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함
-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특히 아동의 일상을 함께하는 보호자이자 지지체계로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천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특별히 중요함

○ 인권 친화적 아동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국내법·제도

1)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할 책무를 짐.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분석 및 그 이행,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운영 등을 수행함

2)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

-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이 제시됨. 그러나 인권교육의 명시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3) 아동복지시설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

-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아동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보편적인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교육·훈련을 대학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55조)

-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야말로 인권교육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지만,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을 뿐, 그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지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듣고 있음(연 1회, 4시간 이상)

- 다만, 지침상 인권교육을 하도록 안내하고,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만 평가지표에 안내되어 있을 뿐, 아동의 권리가 무엇이고 아동권리 보장과 실현을 위해 종사자가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는 지침과 평가지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

III.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현황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태

-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91.0%가 2019년에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음. 인권교육 방법으로는 외부교육 참여(44.0%)가 가장 많았고, 시설 자체 및 외부교육 참여(32.3%), 시설 자체 진행(23.7%) 순으로 나타남. 인권교육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평소에 몰랐던 인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26.6%)',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24.1%)' 이라는 이유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반복되는 교육으로 유사한 내용 반복(56.4%)', '강의내용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서(16.4%)' 등의 이유가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남

- 2017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아동 인권교육이 시설 종사자의 행동이나 직업 태도 변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평균이 3.89로 나타나 '꽤 그렇다(4점)'에 가까웠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 아동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묻는 질문에 응답 평균 점수가 4.53(5점 리커트 척도)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인권교육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해당 조사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쉼터를 표집하여 실시한 것으로 표본에 한계가 있음

-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따르면, 아동 시설은 2016년에 3.4점(5점 만점), 2019년에 3.9점을 받아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가 양호한 편이었음. 다만, 인권교육에 관한 평가는 종사자의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지고, 그 세부 내용은 평가대상이 아님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효과성

- 2019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결과, 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거나 아동권리 교육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인식도조사에서도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경험과 아동권리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동 인권교육이 아동권리 인식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유추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있으며, 인권교육 이수 횟수가 많은 종사자일수록 아동에게 논리적 설명의 지도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인권교육이 종사자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권교육 이수시간이 많을수록, 인권교육을 경험할수록, 인권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긍정적인 인권태도를 보였음. 선행연구 전반에서 아동권리 인식을 높여 줄 수 있는 인권교육을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국제 아동인권센터 교육 진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은 크게 아동인권의 이해와 아동인권의 실천으로 구분할 수 있음. 아동인권의 이해 영역에서는 아동의 개념,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및 일반원칙,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에 대해 다루며 아동인권의 실천 영역에서는 아동인권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들에 대해 안내함
- 그러나 기존의 인권교육은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 공통된다는 점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며, 제목과 목표 이외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일관된 방향성도 확인할 수 없음. 인권

교육의 모니터링과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도 정리된 문서로 누적되어 있지 않았음

- 다만, 인권교육 자체가 업무에 의미가 있다고 응답한 다수 조사와 함께 인권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인권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시사함

IV.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 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설문 응답자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0년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에 명시된 시설명단을 기준으로 권역 및 시설 유형별로 임의표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아동양육시설 107곳, 공동생활가정 85곳에서 근무하는 492명의 보육사(생활지도원)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함
- 설문조사는 2021년 7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함
- 조사내용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정보와 근무하고 있는 시설 정보, 아동의 인권 상황, 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 등을 포함함

○ 설문조사 결과

1) 종사자의 업무환경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으나, 업무 만족도에 있어 보상, 노동강도,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그런 편이다)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상황

-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상황에서 후견인이 없는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가 112명(38.1%)으로 나타나 시설보호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와 관련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진정제도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진정제도의 활용은 평균 3.0(그런 편이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진정제도 활용 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29명(6.0%) 있었음
-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종사자의 33.4%는 장애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24.7%는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시설보호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과 관련하여 인력부족, 차량부족, 기타의 이유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태(132명)도 나타남

3) 인권교육과 경험

- 공공기관(377명, 50.1%), 복지시설(179명, 23.8%)에서 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동영상 강의(295명, 33.8%), 강의식 비대면 강의(280명, 32.1%), 강의식 대면 강의(230명, 26.3%) 형태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접근 가능한 범주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인권교육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교육 시간대,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순으로 나타나, 인력 부족 문제를 거듭 확인할 수 있음

○ 면접조사 개요

- 면접조사는 보육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달리, 아동복지시설 내 다양한 직무 종사자(사무국장, 임상심리상담원, 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지도원, 간호사,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18명을 섭외하여 진행함
- 총 6개의 아동양육시설에서 12명의 종사자가, 6개의 공동생활가정에서 6명의 종사자가 참여함. 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시설장 1명, 사무국장 3명, 생활복지사 3명, 임상심리상담원 1명, 간호사 1명, 보육사(선임생활지도원 포함) 3명이었고, 공동생활가정은 6명 모두 시설장이었음
- 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섭외는 우선 전국을 인구비례할당으로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¹⁾으로 분류한 뒤, 각 권역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무선표집하였음
- 면접조사는 개별면접과 초점집단면접(FGI)을 병행하여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와 보육사 등 각 종사업무의 특성과 직무별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사자의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또한,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별 방역지침과 시설의 요청에 따라,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면접조사를 실시함
- 면접조사 질의는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구성하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를 포함한 현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었음. 구체적으로 종사자의 업무환경, 아동의 원가정 보호, 아동의 자유권과 참여, 시설보호아동의 특별한 욕구, 그리고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을 포함함

○ 면접조사 결과

1) 종사자의 업무환경

- 종사자의 업무환경을 질의한 결과,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가 다르게 지급되는 문제, 과도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아동생활시설의 특성상 휴게시간 확보의 어려움, 주 40시간(최대 52시간) 근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력

1)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충청권: 강원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경북권: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경남권: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전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여건, 나아가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외부의 대체인력을 활용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 등이 언급됨

- 시설은 대체로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자들도 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필수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이외의 교육 경험은 거의 없었음. 모든 어려움은 사실상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맞닿아 있었음

2)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상황

- 출생등록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 등이 보고되어 시설배치에 있어 아동의 출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니터링 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참여자 모두 원가정의 존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는 이해하고 있었으나 원가정 복귀를 넘어 원가정과 교류하고 그 관계를 유지·개선하는 과정 자체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매가 다른 시설에 배치되거나 같은 시설에서도 다른 방에 분리배치되고, 같은 성별인 경우에도 연령과 아동 특성이나 시설 인원수에 따라 분리되는 실태도 제시됨.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과 법원 판단으로 시설이 직접 아동양육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권이 없어 아동의 휴대전화 개통, 통장 개설,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아동의 자유권과 참여권 보장에 대한 조사 결과, 시설의 설립주체와 운영자의 종교와 관계없이 대부분 시설에서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의무교육이 아닌 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도 가급적 존중한다고 밝힘. CCTV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리주체를 정하여 활용되고 있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설치되고,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담인력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라는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 할 것인데, 법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거나 인력채용이 어려워 임상심리상담원이 없는 양육시설이 있었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상담인력 배치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상담이 가능한 일정한 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음. 장애아동 관련하여 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육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참여자가 있었고,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적합한 양육기술과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참여자도 있었음.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준비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정부 정책이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설보호라는 상황적 맥락과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설계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자립전담인력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단위의 자립지원체계를 통해 실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필요도 찾을 수 있었음
- 대부분 공통의 양육지침을 통해 지도와 안내를 제공하며 종사자 회의나 아동과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러한 양육방법이 종사자와

아동 간 갈등을 회피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있으며, 참여자 대부분 차별이 금지된 이후 아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이 어려워졌다고 밝혀 양육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알 수 있었음

3) 인권교육과 경험

- 참여자 대부분 1년에 4시간으로 제시된 지침에 맞춰 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만 있어 아쉬웠다거나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한편, 참여자 대부분 아동권리교육이 대두되면서 종사자 인권교육이 간과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인권교육이 종사자를 지지하고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는 형태로 제공되지 못한 현실을 방증함. 다만, 인권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는 참여자의 응답에 주목할 때, 인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 목적을 둔 인권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음

V.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 본 인권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옹호가로서의 역량 개발, 나아가 아동보호체계의 의무이행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에 목적을 둬. 이를 위해 첫째,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와 더불어 아동의 연령과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한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며, 둘째, 시설에 대한 점검과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이슈들에 대한 발전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들을 제시하였음
- 아동복지시설은 24시간 업무가 지속되는 생활시설의 특성과 제한된 인력 등 교육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근무 환경으로, 이에 본 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의 가치'에 관해 생각하도록 유도하여 교육 참여의 내적 동기 형성에 중점을 두며, 동시에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하였음

○ 교육 목표 및 기대효과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업적 역할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성찰하고 자기 역할을 강화함
- 발달 연령의 특성과 아동 개개인이 경험한 삶에 기반하여 아동을 인식하고, 아동의 주체성과 능동성, 진화하는 능력(Evolving Capacity)을 이해함
- 인권의 맥락에서 아동인권을 이해함
-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와 현장 적용 능력을 촉진하여 업무 현장의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함
- 인권옹호 역량 강화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 및 실행 방안을 설계하는 등 인권에 기반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극적 옹호자로 활동함

○ 프로그램 구성

- 본 프로그램은 5개의 활동으로 구성된 기본 프로그램과 3개의 심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육 시간은 기본 활동은 총 4시간, 심화 활동은 활동 당 2시간으로 총 6시간으로 구성됨
- 기본 프로그램은 첫 해 인권교육 시 반드시 진행되기를 원하는 4시간 프로그램으로,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를 돌아보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아동을 이해하는 과정을 안내함. 또한 인권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점검하고, 특별히 아동인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내재화하는 기회를 제공함
- 심화 활동들은 인권에 기반한 시설 점검 및 시설 내의 다양한 인권 이슈를 분석하며, 구체적인 문제해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더불어 종사자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촉진함

○ 프로그램 세부 활동과 목표

구분	활동명	목 표	시 간
기본 프로그램	지금, 여기, 나.	1) 라포(rapport)를 형성한다. 2)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긴다. 3) 시설 종사자이자 의무이행자로서 인권교육 참여에 대한 동기를 형성한다.	40분
	다시 만나보는 그 아이	1) 아동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아동을 인식한다. 2) 아동에 대한 나의 인식을 성찰하고 재정립한다. 3) 아동의 주체성과 능동성, evolving capacity에 관하여 이해한다. 4) 아동의 생태체계를 이해하고 균형적으로 인식한다.	80분

구분	활동명	목 표	시 간
기본 프로 그램	나는야, 인권 전문가?!	1) 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점검한다. 2) 아동인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성을 안다.	40분
	아동최상의 이익과 종사자의 노동권	1) 아동 최상의 이익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아동인권과 종사자 인권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이해한다.	40분
	아동인권 이해하기	1) 보편적인 인권의 맥락에서 아동인권을 이해한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과 의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40분
심화 활동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1) 유엔아동권리협약 4가지 일반원칙에 준거하여 지금의 우리 시설을 점검한다. 2) 점검 후, 유엔아동권리협약 4가지 일반원칙에 기반하여 문제해결 및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3)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의 구체적인 역할을 점검하고 재설정한다.	120분
	Six Questions	1) 시설 내의 다양한 인권 이슈를 논하고 분석한다. 2) 종사자들 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다. 3)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를 성찰하고, 시설 종사자이자 의무이행자, 아동인권 옹호가로서 수행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모색한다.	120분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	1)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우리 시설의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 2) 양육에 있어 주양육자들 간의 협력과 합의된 약속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 일관된 양육 체계를 세우고 실현하는데 종사자들 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120분

VI.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제언

○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 현행법상 아동권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이해되는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책무가 분명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결국 아동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침이나 평가지표가 아닌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인권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의 근거가 마련되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시 역량이 주요하게 요구되는 변화
- 의무적 인권교육의 제도화는 곧 인권교육 제공기관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준비도 병행되어야 함.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아동복지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실시주체인 법무부, 그리고 관계부처 모두가 갖춰야 할 전문성임

○ 다른 교육체계와의 연계와 단계적 통합

- 종사자가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보수교육, 직무교육 등 관련 교육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관련 교육과정이 인권교육을 포함해 하나의 틀 속에서 각 교육과정의 강점을 살리고 중복되지 않으면서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음. 보편적 인권교육이 일관된 체계에서 실시될 때, 아동권리교육, 노동인권교육, 성인권교육 등 전문화된 인권교육이 사회 각 분야의 직무 특성에 맞게 연계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모니터링 제도 마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진단이 전제되어야 함. 인권교육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그 역할을 하는 주체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인권교육에 관한 모니터링은 민관이, 그리고 행정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예방적·협력적 관점이어야 하며,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아동복지시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음
- 대부분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버 인권교육을 수강하거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국가인권위 강사를 섭외하여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실태를 고려할 때, 국가인

권위원회가 아동복지시설 현장에 교육을 나가는 강사의 인권교육을 모니터링하고 지도·감독(슈퍼바이징)을 제공하여, 이들의 강사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권교육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강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임

○ 인권교육·훈련을 위한 실효적인 공적 지원

- 「아동복지법」 제5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책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훈련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참여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도 반드시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시설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인권교육을 마련하거나,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종사자와 직종별 참여자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편성하는 등 효과적인 인권교육 운영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 대면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명확하게 설계하여 안내하는 방안도 종사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임

○ 인권‘교육’과 인권‘옹호’의 유기적 연결

- 인권교육의 경험은 현장의 실천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인권에 기반한 관점과 태도를 내재화하며, 아동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춰야 함
- 즉,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제도에 명시된 원칙을 안내하는 것에서 나아가,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수방법(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이로써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보호하는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함

○ 인권교육 활성화와 시설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 무엇보다 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훈련이 확산되고 활성화되며 나아가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참여자 대부분 인권교육을 포함해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시설을 벗어날 수 없는 업무 여건상 최소한의 교육을 받는 현실에 그쳤음. 결국 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중심에 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노동환경은 시설의 양적·질

적 개선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아동 처우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육사를 비롯해 종사자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아동의 권리침해라 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목표가 분명하게 실천되려면, 생활시설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설계되고, 종사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인적·물적·재정적 지원도 확보되어야 함.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 대규모 생활시설이 갖는 한계를 인지하고, 탈시설 정책에 대안 중장기 계획도 준비되어야 함. 아동·청소년의 탈시설을 바라보는 중장기 정책도 아동복지 시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찾고, 이를 위한 종사자의 대안적 업무환경을 고민해야 함. 모두 종사자의 참여를 통해 종사자가 변화하는, 나의 삶과 아동의 삶을 옹호하는 사회의 동반자로 나아가는 인권교육을 통해 만들어가야 할 과제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1. 연구 필요성

1)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인권²⁾ 보장 실태와 종사자 인권 의식의 관련성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호조치는 가정보호(원가정 지원, 입양, 가정위탁)를 우선으로 하여 부득이한 경우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시설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³⁾

〈그림 1〉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보호자 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 → ④ 아동 보호 희망 가정에 위탁 → ⑤ 적합한 아동복지 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 1, p.3

그러나 지난 10년간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 비율은 계속하여 증가하였고,⁴⁾ 아동복지시설의 선택과 입소 절차는 아동의 의사나 특성에 앞서 지역 내 입소 가능한 시설의 존재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아동 중심적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때의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가 정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및 장애영유아 거주시설과 아동이 생활하는 장애인거주시설(장애아동시설)을 포함한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은 집단생활시설의 특성상 식사, 수면시간, 외출, 운동시간, 가족 만남과 같은 일상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제한되고 교육, 종교, 통신, 건강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기 어렵다. 최근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 시기에 사실상 코호트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곳도 있어⁵⁾, 아동의 일상을 사회와 단절시킬

2) 이때의 아동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보건복지부.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3.

4)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표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현황

연도	보호대상 아동 발생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시설입소		가정보호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09	10,500	1,472	14.0%	4,767	45.4%	4,261	40.6%
2010	9,960	1,370	13.8%	4,842	48.6%	3,748	37.6%
2011	8,436	953	11.3%	3,752	44.5%	3,731	44.2%
2012	8,003	1,077	13.5%	3,748	46.8%	3,178	39.7%
2013	6,834	814	11.9%	3,257	47.7%	2,763	40.4%
2014	6,014	1,020	17.0%	2,900	48.2%	2,094	34.8%
2015	4,975	472	9.5%	2,682	53.9%	1,821	36.6%
2016	5,221	638	12.2%	2,887	55.3%	1,696	32.5%
2017	4,850	725	14.9%	2,421	49.9%	1,704	35.1%
2018	4,538	620	13.7%	2,449	54.0%	1,469	32.4%
2019	4,612	565	12.3%	2,739	59.4%	1,308	28.4%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 보호조치의 근본적인 한계 또한 알 수 있다. 보호조치 대부분이 시설보호로 결정되는 현재,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인권보장에 있어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의식은 특히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체계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비율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집단생활을 전제하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종사자의 아동인권에 대한 민감도와 인권의식은 특별히 중요한 요인임에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아동권리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인권 존중·침해 경험과 인권교육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가족 유형 및 경제적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지 외, 2019).⁵⁾ 즉, 아동의 생활환

5)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60436>

6) 김영지 외 3인. (2019).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p.410-4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 및 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지지체계의 역할이 아동의 삶에 있어 주요하며, 결과적으로 아동권리 보장에도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 및 시민단체의 아동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대상은 보육시설,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아동보호체계에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인권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⁷⁾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인식도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연도별 혹은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권의 주체이자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한 의무이행자로서 인권교육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이나, 아동복지시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현실을 유추할 수 있다.

3) 아동과 아동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중요성

유엔은 「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을 통해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는 일생의 과정이며(제3조), 모든 사람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찾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교육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제1조)을 강조한다. 모든 분야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이행을 촉진하고, 인권교육의 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엔이 채택한 제1차(2005-2009)와 제2차(2010-2014) 및 제3차(2015-2019) 행동계획에 이어, 2019년 채택한 제4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20-2024) 행동계획 초안도 확인할 수 있다(A/HRC/42/23). 또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제29조, 그리고 일반논평 제1호⁸⁾에서 교육은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촉진하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등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하는데 그

7) 2017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11개 교육지원청(초중고학생, 부모, 교사)과 서울시 소재 어린이청소년시설(아동, 종사자)에서 응답자를 표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어린이청소년시설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쉼터 종사자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관련 정보를 질의하여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여부와 내용, 효과 등은 알 수 없다.

8) 일반논평 1호(2001):「교육의 목적」

목적이 있다고 규정한 것과 협약 제42조에서 성인과 아동에게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널리 알릴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즉, 인권을 아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권리이며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으로서, 아동의 가정환경이자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통해 아동의 권리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를 통해 특히 아동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아동권리 인식도가 낮다는 점을 우려하며, 아동 관련 종사자에 대한 필수적 인권교육을 반복적으로 권고하였다. 인권은 지식과 기술, 태도로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학습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보호자로서 아동의 발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은 특별히 중요하다.

〈표 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교육 관련 권고

-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과과정에 인권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식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방안을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CRC/C/KOR/CO/3-4, paras. 22-23.)
 - a)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욱 포함시킬 것.
 - b)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할 것.
 - c)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할 것.
- 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대안양육시설에 대한 행정운영만을 평가하며, 보육, 보육 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하며 지적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 내 학대 및 방임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하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을 위한 추적제도의 부재에도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인 교육, 공립 및 사립 대안양육기관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협약 제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 b) 대안양육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 피해자들이

<p>진정절차, 상담, 진로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p> <p>c) 대안양육 환경 내 아동이 부모를 찾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p> <p>d) 200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에 대한 인식도가 특히 아동들에게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과 인권교육을 보장하고,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자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CRC/C/KOR/CO/5-6, para. 13)

4) 사례 중심의 인권교육 필요성

2019 아동권리인식도조사에 따르면, 성인과 아동 모두 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거나 아동권리교육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국제아동인권센터, 2019),⁹⁾ 2020 아동권리인식도조사에서도 인권교육 경험과 아동권리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20a).¹⁰⁾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아동권리교육 또는 인권교육을 경험한 빈도가 높아졌다는 결과와 함께 보고되고 있으나,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능감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 아동복지시설 현장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유입에 따른 저연령 아동의 입소 비율 증가 및 출생등록의 어려움, 학대피해아동의 시설 배치 증가, 집단생활에 따른 사생활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어려움, 우범소년 통고 문제, 아동참여와 의견청취권 실현의 한계, 나아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원가족과의 교류 문제 등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정책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 맞닥뜨리고 있다. 이는 시설 내 아동학대와 구조적인 폭력의 원인이 되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다양한 경로와 기관을 통한 인권교육의 경험은 많아졌으나, 실생활에서 마주

9)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 2019 아동권리 인식도조사. p.45.

10)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20 아동권리인식도조사. p.11.

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현장의 실천적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의 인권보장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법·제도 현황을 확인한다.

셋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현장의 아동인권 이슈를 확인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시설 종사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넷째,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섯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하며,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국제법규와 국내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인권교육, 아동인권교육의 현황과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위한 주요 질문을 구성하였다.

둘째, 아동복지시설¹¹⁾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종사자

에 대한 인권의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해당 시설은 학대, 가정해체 등 가정환경상 실 아동이 장기 거주하며 ‘집’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아동이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기본적 권리들이 지켜지기 위해 어떠한 환경이 갖춰져야 하는지, 종사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시설이라는 특성상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에 대한 종사자들의 역량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 지원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에 조사의 목적이 있다. 아동보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욕구에 기반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들이 아동인권을 실천하는 보호자로서 그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셋째,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 이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답변의 경향성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종사자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설문조사의 정량적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인권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종사자들이 마주치는 실제 사례를 취합·정리하여, 아동복지시설 현장과 관련된 인권 사례에 기초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3〉 연구방법 개요

조사방법	조사목적	참여대상	조사규모	조사 방식	조사기간
설문조사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경험 및 인권의식 조사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492명	우편조사	2021년 7월~ 2021년 8월
면접조사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현장사례 조사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8명	1:1 개별면접 또는 2~3명 초점집단면접	2021년 9월~ 2021년 10월

11) 2020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현황 (보건복지부, 2020)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보호치료 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아동상담소, 전용시설, 그리고 개인양육시설로 구분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1. 아동복지시설의 인권보장 실태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3. 인권 친화적 아동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국내법·제도
4. 소결

1. 아동복지시설의 인권보장 실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결과, 심리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우울성향, 정서적 불안정성, 만성적인 공허함,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성취동기 부족, 책임회피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같은 아동의 특성은 물리적·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종사자 대상으로 수행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아동은 의식주와 관련해 비교적 만족한다고 보고하였고, 편지나 소포 등 개인물품을 검사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시설 종사자로부터 적절하게 학습지도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반면, 약 70%가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시설이 자신들의 방을 외부인들에게 공개하는 편이라고 답하였으며,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시설보호아동은 전체의 23.4%였다. 응답자의 41.9%는 시설에서 정해주는 외부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다고 답하여 문화활동 및 지역사회와의 접근이 제한적인 실태가 제시되었고, 의무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47.1%였다. 아동 응답자의 41.7%는 시설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묻기는 하지만 결정은 선생님/원장님이 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또한, 아동이 보장받고 싶다고 표기한 권리로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권리(39.5%)'와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할 권리(20.4%)' 등이 있었다.

반면, 종사자는 62.8%가 방을 공개할 때 아동의 의견을 묻고 원치 않으면 보여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아동의 외출과 관련하여서도 종사자의 47.9%가 규칙만 지키면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종사자의 76.9%는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서 아동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해당 의견은 결정에 반영된다고 답하거나 종교활동 역시 권유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61.2%) 아동과 종사자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이후로 전국단위의 아동복지시설 인권 실태에 관한 최신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운

데,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778개소에서 보호 중인 아동 13,09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물관리나 약물복용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의심사례도 확인되어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시설 38개소에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 아동은 230명이었는데, 정서학대 비율(59.1%)이 가장 많았다(한겨레, 2021.08.09.).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상 인권침해나 제한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들이다.

한편, 아래 표에서 제시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시설보호아동의 권리 보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상심리상담원과 보육사, 자립지원 전담요원 등의 인원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태를 알 수 있다. 특히 '보육사'는 시설에서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임상심리상담원을 포함한 여타 최소한의 법정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사가 다른 종사자의 역할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실정이다. 결국, 법령상 종사자 배치기준과 배치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장의 실태는 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중심에 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노동환경을 드러내는데, 이는 곧 시설보호아동의 권리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것이다.

〈표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직종별	법정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4] 참조)
시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당 1명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30명 이상 시설당 1명 (자립지원시설은 10명 이상 1명) * 공동생활가정,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해당없음
상담지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일시보호, 상담소는 필요인원 • 자립지원시설은 아동 10명 미만 1명, 아동 10명 이상~30명 미만 2명, 아동 30명 이상 3명
임상심리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일시보호, 상담소는 30명 이상 1명 • 보호치료시설은 시설당 1명
보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세까지 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 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 *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해당없음
생활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는 30명 이상 1명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은 30명 초과시 1명 추가 ex) 아동 31명부터 생활복지사 2명 배치 • 10명 이상 전용시설은 필요인원 • 지역아동센터는 30명 이상 2명(50명 초과시 1명 추가), 10명 이상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상담소 30명 이상 1명
직업훈련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보호치료 시설은 필요인원
조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시설은 10명이상 1명(30명 초과시 1명 추가) ex) 아동 31명부터 조리원 2명 배치
위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30명 이상 1명
안전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2명(40명 이상 4명), 전용시설은 30명 이상 1명
영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지역아동센터는 50명 이상 1명
사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는 10명 이상 1명 • 자립, 상담소, 전용시설은 30명 이상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보호치료시설은 10명 이상 1명, 자립지원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양육시설은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 공동생활가정은 필요인원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1], p.189-190.

2019년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유엔 국제연구를 주도한 독립전문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그들의 아동기 전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가정환경에서 분리되어 시설보호되는 상황을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는 유형의 하나로 보고 있다(UNGA, 2019).¹²⁾ 이에, 국가는 아동의 자유박탈을 야기할 수 있는 결정과 관련해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전문가 및 구금된 동안 아동의 웰빙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증진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다.¹³⁾ 아동보호 및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자유박탈의 위험에 처해있거나 자유가 박탈된 아동과 만나는 모든 개인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을 중심에 둔 아동보호체계의 한 내용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는 종사자 개인의 기량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종사자가 아동보호에 최선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10년의 기간을 사이에 둔 아동복지시설 대상 실태조사 결과와 지금의 미비한 법·제도는 시설보호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12) A/74/136, paras. 1-3.

13) A/74/136, para. 105.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1)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¹⁴⁾

1978년 비엔나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는 “인권교육은 인권에 내재되어 있는 관용과 존중, 연대의 태도를 배양하고,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이행을 위한 체계를 알려주어야 하며,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이 사회적·정치적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각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선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94년 유엔총회는 1995년 1월부터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으로 선포하였다. 유엔총회는 1995년 「유엔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1995-2004)을 채택하면서, 특히 아동 등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훈련에 대하여 특별히 중점을 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행동계획에 열거된 기타의 모든 원칙과 그 원칙들이 기반하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일관성을 가지면서 학습자에게 기술과 지식을 주는 동시에 학습자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유엔총회는 2004년 모든 영역에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을 선포하고, 2005년부터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1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05-2009) 행동계획은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지침(교육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제1번) 등을 근거로 ‘초·중등학교 제도 내 인권교육’을 제1차 행동계획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아동과 교사 및 행정기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단위의 교육 방침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였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10-2014)에서는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한다.¹⁵⁾ 제2차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아동

14) 법무부. (2011).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 참고

15) 국가인권위원회. (2018).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참고

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¹⁶⁾를 위한 인권교육 및 훈련 제공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로, 2011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인권교육 훈련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RES/66/137, 이하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이 채택되었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 따르면,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는 일생의 과정이며(제3조), 모든 사람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찾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교육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제1조). 또한,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하여(about), 인권을 위해(for), 인권을 통한(through) 방법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제2조)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후 유엔은 제1·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행 강화 및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 대상 인권교육 촉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을 거쳐, 2019년에는 제4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20-2024) 행동계획 초안을 채택하였다(A/HRC/42/23). 제4차 행동계획 초안에서는 인권교육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외·취약계층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형식 및 비형식 교육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비형식학습에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 인권교육을 확대할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강조한다. 여기에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시설보호)청소년뿐만 아니라 비행청소년, 폭력피해 청소년, 장애청소년, 소수민족·종교집단이나 원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청소년, 난민 등 이주청소년 등이 포함될 수 있다.¹⁷⁾

“인권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세부목표 4.7.)에도 있다(UN, 2015).

16) 여기에서 “교육자”는 제도권, 비제도권, 비형식적 환경 내 교육활동을 기획, 개발, 이행 및 평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7) A/HRC/42/23, para. 22.(b)

2) 인권교육과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은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과 같은 취지에서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제28조)와 함께 아동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 등 교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제29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9조(교육의 목적)

- ① 당사국은 아동 교육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1. 아동의 인격, 재능,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
 2.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3. 아동의 부모와 아동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서로 다른 문명의 차이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4.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선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5.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 ② 교육기관의 교육은 국가가 설정한 최소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요청 하에, 본 조 또는 제28조의 어떤 조항도 개인 및 단체의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되는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당사국은 아동 보호나 돌봄에 책임이 있는 기관, 사업, 시설이 주무관청이 설정한 적정한 직원의 수 및 숙련된 관리와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이와 같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을 보장해야 하는데 보호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양육을 포함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제20조).

또한,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제12조).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또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의견표명과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게 돌봄, 보호,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배치 결정된 아동이 그들에 대한 처우 및 결정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제25조),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본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당사국의 의무 또한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은 각 당사국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의무이행자의 협약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택되었다.¹⁸⁾ 이 중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제5호 일반논평인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ts. 4,42 and 44 para. 6)]’는 ‘훈련 및 역량 강화’라는 별도의 장을 두고 있다. 여기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행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및 사법부 구성원, 그리고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훈련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그 대상에는 사회복지사 및 시설이나 구금 장소에서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때 훈련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훈련의 목적은 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지위를 강조하는 것, 협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는 것, 협약 규정을 적극적으로 존중할 것을 장려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수준에서의 직접훈련과정, 행동강령 및 교육과정에 협약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는 협약 및 개별 조항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 향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태도와 실천을 발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제13호 일반논평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권리(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18) 국제아동인권센터. (2018). 일반논평 5호,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7.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에서는 당사국은 아동을 위해 일하거나 아동을 상대하는 전문가 등 아동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협약 제3조 제1항 및 그 실질적인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또한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200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제12호 일반논평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할 권리(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에서는 당사국이 가정 내 학대 등의 사유로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아동의 견해를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률, 행정규칙, 정책방향을 통해 아동이 위탁가정 또는 시설배치, 양육 계획 수립 및 검토, 부모와 가족의 방문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사를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시설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배치, 위탁가정에서의 양육 규정,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다른 아동 및 성인과 학습하고 놀고 생활하는 시설에서 인권이 실천되고 있을 경우에만 인권교육이 아동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아동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기관에서는 아동의 의사표현 권리가 아동의 철저한 검증 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주어지고 있는지 아동 스스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1996년 제1차 최종 견해에서부터 2019년 제5-6차 최종견해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아동 관련 종사자의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훈련을 시행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하였다.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특히 아동의 일상을 함께하는 보호자이자 지지체계로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천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은 특별히 중요하다. 그러나 반복된 동일한 내용의 권고를 통해 19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초 심의가 이루어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동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최종견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제5-6차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는 특히 협약에 대한 인식도가 특히 아동들에게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하고,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다.¹⁹⁾ 또한 가정환경을 상실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필요, 최상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해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²⁰⁾

2011년 제3-4차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는 역시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특히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²¹⁾ 또한,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대안돌봄시설에 대한 평가는 오직 행정운영만을 평가하며, 보육, 보육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동시에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인 교육, 공립 및 사립 대안돌봄기관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협약 제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²²⁾

2003년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는, 위원회는 아동 및 대중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전문가 역시도 협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협약에 담

19) CRC/C/KOR/5-6, para. 13.

20) CRC/C/KOR/5-6, para. 32.

21) CRC/C/KOR/3-4, para. 23.

22) CRC/C/KOR/3-4, para. 48.

긴 아동권리에 기초한 접근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함을 우려하며, 특히, 아동과 함께 혹은 아동을 위해서 종사하는 전문가에 대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²³⁾

1996년 1월 대한민국의 최초 보고서 심의에 따라 채택된 최종견해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 조약의 원칙과 조항들을 자국의 아동들과 성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며, 위원회는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공무원 등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위하여 아동 가까이에서 일하는 여러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협약 내용에 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여긴다는 점을 밝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위하여 아동 곁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공무원 등을 의미)에 대하여 이 협약에 관한 교육 활동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권고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의 권리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⁴⁾

23) CRC/C/15/Add.197, paras. 25.-26.

24) CRC/C/15/Add.51/para. 10., 21.

3. 인권 친화적 아동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국내법·제도

1)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

특정한 인권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권교육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할 책무를 진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서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인권교육을 다룰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이 교육부장관에게서 국가교육위원회로 개정되었다(2022년 7월 시행).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²⁵⁾는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분석 및 그 이행,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운영 등까지 수행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8조 제8항 및 제9항).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 법률에는 ‘인권’ 교육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교육발전계획

25) 직제상 정책교육국의 인권교육기획과장과 인권교육운영과정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이나 국가교육과정, 교육정책에 인권에 관한 내용 또한 함께 포함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

아동·청소년에 관한 인권교육 법령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해석될 수 있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제7항).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며(제10조의2 제2항 제11호),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 또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취할 의무도 부담한다(제22조 제1항 제2호).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제26조)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제26의2)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교육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의 고려해 매년 아동의 안전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1조). 아동복지시설 관련 교육은 3)항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청소년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 법 및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제8조의2). 특히,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의2 제3항), 「아동복지법」에는 이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비교할 만하다.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의 보수교육에 관해서도 명시하고 있고(법 제24조의2), 그 교육의 대상과 기간,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등이,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0조의2, 10조의3).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4조). 여기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포함된다(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교육·훈련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2021년 3월 개정(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점도 신설되었다(제16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등을 위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제19조, 제20조),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제18조).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과 달리, 학생이나 학교폭력 등 특정한 대상과 영역에 관한 개별 법률에도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학생의 인권보장에 관해 규

정하고 있지만(제18조의4), 보장되어야 할 학생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이러한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책무를 지는지, 그리고 인권교육의 실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조사·연구·교육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또한, 이러한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제6조 제1항). 학교의 장은 학생들,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관련 프로그램 운영방법,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시행령 제17조), 권리나 인권 관점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3) 아동복지시설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도 해당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사회복지사업법」제3조),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31조). 이때 실시되는 ‘안전’ 교육에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이 포함된다. 교육에 관한 실시주기와 내용, 방법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6]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교육·훈련을 대학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

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제55조).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관련 규정에서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안전’에 국한해서만 규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야말로 인권교육과 밀접하게 맞닿아있지만,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을 뿐, 그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지침

다만, 아동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에 해당하여, 법령의 근거와 관계없이 실제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아동 인권 보호 및 교육’²⁶⁾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아동 인권의 내용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입소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권 보장을 설명한다. 그 밖에 ‘아동 교육’ 항목에 아동학대 및 성범죄 신고와 함께 아동인권교육과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을 담고 있으며,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아동학대의 유형을 참고사항으로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아동인권교육으로는 아동의 일반적 권리,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

26) 보건복지부. (2021).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 1. 154-159.

시해서 문서화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문서로 전달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한다.

〈그림 2〉 보건복지부 지침이 안내하는 아동인권교육

다. 아동 교육

(1) 아동 인권 교육

- 아동시설은 아동이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침해받아온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아동의 인권의식 강화를 비롯해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 아동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동시설 내에 인권보호 및 실현에 대한 제도 구비
- 아동인권교육은 아동이 자신의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아동 스스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아동 본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게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권리교육은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보호자로서 인권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동의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권교육을 직접 실행하므로 인권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하고, 교육을 통해 아동시설 내에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체벌, 성학대 등 인권침해상황을 예방 노력
- 아동의 일반적 권리,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노력, 권리 침해 시 호소경로 장치 등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해서 문서화해야 하며, 아동 인권 규정은 아동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문서로 전달하여 아동인권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하고, 아동시설내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호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통보

※ 출처: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1], p.156.

이러한 지침에 근거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²⁷⁾ 직원필수교육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목표는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으로, 아동 대상 인권교육과 별개로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점수가 부여된다. 이러한 직원 인권교육은 ‘아동의 권리보호자로서 인권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동의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점수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은 각각 1시간씩 별도로 이수하도록 하여, 보편적 인권에 초점을 둔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밖에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포함)도 연 1회 이상

27) 아동생활시설 유형은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만 대상으로 하며,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평가지표는 달리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 2022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실시해야 점수가 부여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시설(상위시설 및 품질개선 시설)은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시설(D, F시설)은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되며, 영역별 평가결과 C등급 이하시설은 역량강화 교육이 지원되는데, 사실상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지원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지표에 포함된 항목은 모든 시설이 준수하려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평가지표도 유사하다.²⁸⁾ 공동생활가정도 아동 대상 인권교육은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인권교육에 아동과 직원 간, 직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 등이 포함되어 4시간 이상 실시하였으면 인정한다고 하여, 평가지표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아동양육시설과 다소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침과 평가지표에 생활시설 종사자가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만 평가지표에 안내되어 있을 뿐, 아동의 권리가 무엇이고 아동권리 보장과 실현을 위해 종사자가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28)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침.

4. 소결

법령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법에서 정한 배치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현장의 실태는 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중심에 둔 본연의 업무를 집중할 수 없는 노동환경을 드러내며, 이는 곧 시설보호아동의 권리 보장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분리되어 시설에서 보호되는 상황을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는 유형의 하나로 보고, 이러한 자유박탈의 위험에 처해있거나 자유가 박탈된 아동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978년 비엔나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를 시작으로,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채택 이후 1994년 유엔총회가 「유엔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아동 등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후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1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20-2024)은 시설보호청소년을 포함한 소외·취약 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권교육을 통한 청소년 역량강화를 세부목표로 제시한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과 같은 취지에서 아동권리협약 또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제28조), 교육의 목적(제29조)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가정환경에서 박탈당한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제20조),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널리 알릴 국가의 의무(제42조) 등을 명시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등을 통해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 및 역량 강화의 중요와 필요를 제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1996년 제1차 최종견해에서부터 2019년 제5-6차 최종견해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아동 관련 종사자의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훈련을 시행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하였다. 계속하여 반복되는 권고는 곧 아동 관련 종사

자를 위한 인권교육 실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아동 친화적인 아동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분석 및 그 이행,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 및 인권교육 과정 개발·운영 등을 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8항 및 제9항).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4조가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31조가 아동복지시설장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의무를, 제55조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훈련 실시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교육은 안전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포함되어야 할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아동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등 지침과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따라 작동하고 있었다.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는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의 입소아동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안전교육 계획 등을 담고 있다. 평가지표는 직원필수교육에 인권교육을 포함하는데,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아동의 권리보호자로서 인권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및 아동의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점수가 부여되며, 공동생활가정은 아동과 직원 간, 직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 등을 포함해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지침상 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고 인권

교육 강사의 자격만 평가지표에 제시할 뿐, 아동의 권리가 무엇이고 아동권리 보장과 실현을 위해 종사자가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는 인권교육의 필수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며, 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할 내용은 마련되지 않은 채, 그저 현장에 내맡겨진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권교육과 관련해 증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역할이 법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책무를 지는 국가기관으로서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좀 더 구체적인 역할을 고민하고 이행할 필요를 시사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3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현황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태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효과성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4. 소결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태

「아동복지법」에 인권교육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지침 및 평가지표에 의해 매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수로 진행되고 있지만,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효과성 등에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장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현황과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현황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제아동인권센터, 2017),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인식도조사(아동권리보장원, 2020a;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 등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실태조사,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0),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국가인권위원회, 2020) 등의 연구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최근 자료를 반영한 인권교육 현황(국가인권위원회, 2020)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91.0%가 2019년에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인권교육 방법으로는 외부교육 참여(44.0%)가 가장 많았고, 시설 자체 및 외부교육 참여(32.3%), 시설 자체 진행(23.7%)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최고관리자 인권교육 수강 여부 또한 조사되었는데, 참여한 인원(46.4%)보다 참여하지 않은 인원(53.6%)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인권교육 시 종사자 집단을 직급/직종/기타 방식으로 구분하여 진행한 곳은 22.2%로 구분하지 않은 곳(77.8%)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 외 강사의 전문성, 강사료 지급기준, 강사비, 진행 시간(업무시간), 참여기관, 강사 소속, 수강 내용, 수강 방법 등이 조사되었다.

인권교육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되었는데 ‘평소에 몰랐던 인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26.6%)’,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24.1%)’이라는 이유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반복되는 교육으로 유사한 내용 반복(56.4%)’, ‘강의내용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서(16.4%)’ 등의 이유가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즉, 인권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아동권리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론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반복적인 교육 내용에서 현장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선해

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7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제아동인권센터, 2017)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 여부, 아동권리 및 규범 인지도, 인권교육 이수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추가로 아동 인권교육이 시설 종사자의 행동이나 직업 태도 변화에 미친 영향도 질의하였는데, 평균이 3.89로 나타나 ‘꽤 그렇다(4점)’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 아동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4.53(5점 리커트 척도)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인권교육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조사는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청소년시설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쉼터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여부, 내용, 효과 등은 알 수 없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아동시설의 인권보장 부분에 대한 평가영역에서 인권교육 실시 여부가 평가 되는데 인권교육 평가 부문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시설은 2016년에 3.4점(5점 만 점), 2019년에는 3.9점을 받아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인권교육에 관한 평가는 종사자의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지고, 그 세부 내용은 평가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인권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묻는 설문 문항이 있었는데, 아동시설 종사자들의 약 17%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 이유로는 과도한 증빙서류, 서류 위주의 형식적 평가 등이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효과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실태에서 나아가,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하여 다른 국내 선행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인권교육 유무에 따라 종사자들의 아동권리 인식, 인권감수성, 지도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2019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결과, 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거나 아동권리 교육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국제아동인권센터, 2019). 나아가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경험과 아동권리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아동권리보장원, 2020a), 아동 인권교육이 아동권리 인식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

아동권리 인식뿐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이 사전에 타인에 대한 공감에 적었던 인권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원 외, 2010). 또 다른 효과로 인권교육의 경험 정도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지도방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이수 횟수가 많은 종사자일수록 아동에게 논리적 설명의 지도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인권교육이 종사자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영주, 2019; 손명동, 2021).

덧붙여, 인권교육 이수 횟수 등 실제 경험은 아니지만,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과 아동권리 인식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일수록(현영렬, 2009),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일수록(감영숙, 2012),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그 대상을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부모, 그리고 교사까지 확장하여 인권교육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종사자들의 최근 인권교육 이수시간, 인권교육 경험, 그리고 인권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영, 2016). 인권교육 이수시간이 많을수록, 인권교육을 경험할수록, 인권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긍정적인 인권태도를 보였다.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인권교육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해당 연구에 참여한 부모는 아동인권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아동의 인권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방법들을 알게 되었고 권리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김금희, 2020). 또한 아동권리존중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부모의 인권의식뿐 아니라 긍정적 양육행동에도 정적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인권교육에 관한 연구는 유아교사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유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이 교육을 받기 전 이미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고 발달권과 참여권을 나머지 두 가지 권리보다는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구미향, 황소영, 2014). 프로그램 실시 후 유아교사들은 전보다 참여권과 발달권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게 되는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김지혜(2019)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체험적 인권교육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약간 왜곡되어 있던 예비유아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이고 더욱 명확한 개념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김지혜, 2019).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인식이 높을수록 유아권리존중 실행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김정화, 2014), 아동권리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인권교육을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짚게 된다.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아동권리교육은 「아동복지법」 제55조에 따른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내용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일반논평 제1번에 따르면 아동권리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촉진하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등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아동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인권 존중·침해 경험과 인권교육의 효과가 다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인권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도 그에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아동공동생활가정 교육가이드 참조

구분	의무 교육 주제	이수시간
1	아동학대예방교육	연1회/1시간이상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연1회/1시간이상
3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연1회/8시간
4	종사자인권교육	연1회/4시간
5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1시간이상
6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	연1회/1시간이상
7	(아동관련)성폭력예방교육	연1회/1시간이상
8	(아동관련)안전교육	연1회/1시간이상
9	(아동관련)아동권리교육	연1회/1시간이상
10	(아동관련)ADHD약물오남용방지등에 대한 교육	연1회/1시간이상
11	(직장내)장애인인식교육	연1회/1시간이상
12	퇴직연금교육	연1회/1시간이상
13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연1회/1시간이상

※ 출처: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홈페이지.

우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국제아동인권센터 교육 진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 주최하고 국제아동인권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아동권리교육은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과정 중 하나로 실시되고 있으며,²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공무원과 민간회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인권 관련 온라인 교육은 각 복지시설에 따라 의무 교육 수강시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아동생활시설은 제외한 지역아동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아동복지 종사자 교육 표준화 방안 연구’를 실시 중인 것으로 보인다.³⁰⁾

이러한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은 아동인권의 이해와 아동인권의 실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인권의 이해 영역에서는 아동의 개념,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및 일반원칙,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에 대해 다루며 아동인권의 실천 영역에서는 아동인권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들에 대해 안내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21년 아동복지시설 보육사과정을 진행하며, 그 과정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보육사를 대상으로 아동과 아동발달을 이해하고,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양육효능감을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1일 8시간 교육과정으로 아동발달의 이해, 사례로 보는 시설아동의 문제행동과 증재, 공감과 소통 기술을 포함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수강할 수 있는 인권교육 사이버과정을 운영하며, 각 15차시로 구성된 ‘사회복지와 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과정에서 아동인권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개발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 자료집(2016) 외에 다른 교육과정들은 교육 안내문을 참고하여 살펴 보았다.

29) https://seoulcenter.org:44438/pages/page_98.php?menu_id=98&act_module=board_board_3&site_m=title+like&keyword=%5B%EC%95%84%EB%8F%99%EC%9D%B8%EA%B6%8C%5D

30)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icareinfo.go.kr/notice/notice/noticeDetail.do?menuNo=2003110&bbs_no=2295 (2021. 12. 9. 최종확인)

〈그림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목 차

Part I. 아동인권의 이해

1. 나와 아동

- 1) 나와 우리 집(아동복지시설) 8
- 2) 우리 집과 아동 14

2. 아동과 권리

- 1) 인권과 아동인권 23
- 2)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25
- 3)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32



Part II. 아동인권의 실천

1.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실천 1

- 1) 긍정적 훈육 40
- 2) 아동인권 존중 실천 54

2.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실천 2

- 1) 아동참여 증진 61
- 2) 사례토의 66

부록

69



〈그림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2021년 아동복지시설보육사과정 안내문)



I 교육과정 개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정 안내

2021년 아동복지시설보육사과정

과정구분	아동복지	과정분야	아동복지
교육시간(일수)	8시간 (1일)	기당인원	50명
교육일정	■ 3기) 2021. 8. 6.(금)	신청일정	■ 3기) 2021. 7. 12.(월)~23.(금)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아동발달을 이해한다.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양육효능감을 높인다. 		
교육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라이브교육(ZOOM 활용) ※ ZOOM 입장코드 등 교육생 확정 통보 시 개별 안내 예정 		
교육비	40,000원	숙박비	해당없음
교육장소	자택 등 ZOOM 활용 가능한 개별장소	입교시간/퇴교시간	입교 09:30 / 퇴교 18:30
평가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평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참여 시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사용 필수 / 노트북, 태블릿 사용 권장 ■ 교육 확정 통보 후 사전 설문조사(교재 수령지) 참여 필수 ■ 교육 확정 통보 후 사전 테스트 참여 권장 ※ 자세한 사항은 교육생 확정 시 개별 안내 예정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신진희 주임 ☎ 043-710-9054 / shin0440@kohi.or.kr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발달의 이해 	2	강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로 보는 시설아동 문제행동과 중재 	2	강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과 소통 기술 	3	강의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및 수료 	1	행정

* 본 과정안내문의 교육계획은 교육준비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그림 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과정 안내)



2021년 인권위 사이버과정 운영일정

<홈페이지별 운영 일정> 매월 1일과 16일 개강합니다. 수강신청기간과 학습기간 모두 1개월입니다. (12월 16일만 12월 31일 종료)

연번	유형	과정명	총 차시	총 페이지수	상시학습 인정시간	화면 구성	인권 교육센터	월 부터	나라 배움터	월 부터	콘텐츠 공동활용	월 부터
1	일반개론	세계인권선언	15	264	10시간 10분	애니메이션	○	2	○	2	○	4
2	일반개론	인권의 이해	15	270	10시간 30분	애니메이션	○	1	○	2	○	4
3	일반개론	인권의 이해 입문편	4	45	1시간 40분	애니메이션	○	4	○	5	○	4
4	일반개론	인권의 이해 권리구제편	4	43	1시간 40분	애니메이션	○	4	○	5	○	4
5	일반개론	차별예방교육	15	350	13시간 30분	애니메이션	○	2	○	2	○	4
6	일반개론	인권 공부 첫걸음	8	8	2시간	애니메이션	○	9	○	9	X	
7	개별분야	성차별 예방교육	15	135	5시간 10분	애니메이션	○	4	○	5	○	4
8	개별분야	성희롱 예방교육	5	109	4시간 10분	애니메이션	○	2	○	2	○	4
9	개별분야	기업과 인권	10	107	4시간	애니메이션	○	4	○	5	○	4
10	개별분야	사회복지와 인권	15	166	6시간 20분	애니메이션	○	2	○	2	○	4
11	개별분야	스포츠와 인권	15	154	5시간 50분	애니메이션	○	4	○	5	X	
12	개별분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설	15	204	7시간 50분	애니메이션	○	2	○	5	○	4
13	개별분야	신 행정과 인권	10	121	4시간 40분	애니메이션	○	2	○	2	○	4
14	개별분야	학교폭력예방교육	15	155	6시간	애니메이션	○	4	X		X	
15	개별분야	이주민과 인권	15	256	9시간 50분	애니메이션	○	9	○	9	X	
16	개별분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15	142	5시간 30분	애니메이션	○	4	○	5	X	
17	개별분야	노인 인권의 이해	8	74	2시간 50분	애니메이션	○	4	○	5	X	
18	개별분야	군인 인권의 이해	5	48	1시간 50분	애니메이션	○	4	○	5	○	4
19	개별분야	선생님을 위한 인권플러스	15	270	교원·교직원 1학점	애니메이션	X		X		X	

〈그림 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회복지와 인권”

10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에 바탕을 둔 사고와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이해를 증진하는 과정입니다.



상시학습 인정시간
6시간 20분



총 차시
15차시



총 페이지수
166p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종사자
- 사회복지 실천에 인권을 접목하고 싶은 사람
-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 관점으로 종사하고 싶은 사람

일반개론

개별분야

애니메이션



차시	페이지수	내용
01차시	11	인권의 개념 이해
02차시	12	인권의 발달과 국내외 관련법과 기구
03차시	11	인권과 사회복지
04차시	12	인권과 사회복지전문직
05차시	11	사회복지 전문직의 인권문제
06차시	10	인권관점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07차시	11	인권관점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모델
08차시	11	인권기반 아동청소년 복지
09차시	11	인권기반 노인 복지
10차시	11	인권기반 장애인 복지
11차시	10	인권기반 정신 장애인 복지
12차시	11	인권기반 여성 복지
13차시	11	인권기반 이주민 복지
14차시	11	인권기반 노숙인 복지
15차시	12	인권과 사회복지 전망

#사회복지 #실천 #모델

〈그림 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16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원칙과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상시학습 인정시간
5시간 30분



총 차시
15차시



총 페이지수
14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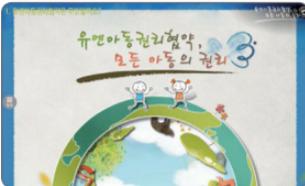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사람
- 우리나라 법체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조화시키고 싶은 사람
- 아동 인권에 대한 지식을 국제협약으로 뒷받침하고 싶은 사람

일반개론

개별분야

애니메이션



차시	페이지수	내용
01차시	11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엇일까요?
02차시	10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권리와 일반원칙이에요.
03차시	10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04차시	9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05차시	9	사생활을 보호받고, 정보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06차시	9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07차시	9	부모의 양육을 받고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08차시	9	친부모를 대신하여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09차시	9	특별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10차시	11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어요.
11차시	10	학교에 가고 행복하게 놀 권리가 있어요.
12차시	9	노동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13차시	9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14차시	9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15차시	9	회원국들은 협약을 잘 이행해야 해요.

#UN #아동권리 #회원국의 의무

한편,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중 심화과정은 거시적 관점과 시스템의 틀에서 바라보는 인권의 개념, 종사자가 느끼는 업무환경의 어려움과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 제시하기, 아동의 심리와 아동권리 연계에 대한 이해 및 종사자의 역할 인식,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한 종사자와 아동 간 상호작용 사례 분석 등을 다룬다. 실제 이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나의 가치관과 아동의 입장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인지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인상적이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등의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림 8〉 국제아동인권센터 교육계획(안)

2021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교육계획(안)

- 공동생활가정 심화교육(종사자) -

국제아동인권센터(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 존엄성, 진실성이 존중 받는 환경 속에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인류 보편적 가치를 따르고 글로벌 경험과 지식을 알리며 인권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국(2021년 1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으로 경제, 사회, 문화, 시민, 정치적 권리와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교육 대상	종사자		강 사 명	
교육 장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Zoom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교육 일시				
참여 인원 및 모듈수	20명 (워크샵) * 상황에 따라 Zoom 플랫폼 내 소그룹 회의 기능 사용할 수 있음			
준 비 물	[기본 환경 구성] ① 개인 PC: 노트북 or 캠이 있는 데스크탑			
	[교육 준비물]			
	강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시설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① ppt 파일		① 온라인 교육 세팅	
목 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시적 관점과 시스템의 틀에서 인권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종사자가 느끼는 업무환경의 어려움과 그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공감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이라는 목적 안에서 아동의 심리와 아동권리를 연계하여 이해하고, 나의 역할에 대해 인식한다.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종사자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 사례를 분석한다. 			

4. 소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지침 및 시설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국 90%의 아동복지시설이 인권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인권인식과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반복되는 교육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 내용 등이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실시 여부를 서류로만 파악하는 문제가 지적된 조사도 있다. 선행연구 전반에서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효과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미흡했으며, 특히 아동생활시설의 특성에 따른 인권교육의 영향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특별히 없었다.

그러나 인권교육이 현장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면 인권교육 수강 이후에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어렵다. 각 아동 분야 종사자의 직무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한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 서로 다른 특성의 다수 아동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이며, 이들 아동은 가정과 분리되는 결과로 심리·정서적으로 위기에 처할 어려움이 크다는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주양육자로 돌봄과 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인권교육은 ‘아동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제목과 목표 이외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일관된 방향성도 확인할 수 없었다.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 공통된다는 점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인권교육의 모니터링과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도 정리된 문서로 누적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인권교육 자체가 업무에 의미가 있다고 응답한 다수 조사와 함께 인권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인권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시사한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방법은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증대화하기 위한 실태 확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례에 기반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나아가기 위한 종사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장의 설문 및 면접조사는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조사 문항을 구성한 것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4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면접조사 개요
4. 면접조사 결과
5. 소결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참여자

설문 응답자는 보건복지부(2020)의 2020년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³¹⁾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명단을 기준으로 권역 및 시설 유형별로 임의표집하여 구하였다. 전국 아동양육시설 281곳 가운데 124곳(시설별 2~3인), 공동생활가정 578곳 가운데 116곳(시설별 1~2인)을 표집하여 해당 시설의 보육사³²⁾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표 6). 그러나 시설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시설 폐쇄, 또는 참여 거절 등의 이유로 목표했던 응답 수에 미치지 못하여 2차로 아동양육시설 27곳 및 공동생활가정 53곳(시설별 1~2인)을 추가 표집하여 참여를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아동양육시설 107곳, 공동생활가정 85곳에서 근무하는 492명의 보육사(생활지도원)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6〉 설문조사 참여 시설

시설 유형	최대 요청 부수	1차 발송 시설 수	2차 발송 시설 수	참여 시설 수
아동양육시설	3	124	27	107
공동생활가정	2	116	53	85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21년 7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가장 먼저 권역별 및 시설 유형별로 시설을 임의표집한 뒤 표집한 시설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설문지³³⁾를

31) 2019년 12월 31일 기준.

32) 보육사는 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당사자이자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직군이므로 본 연구에서 설문응답은 보육사에 한정하여 요청하였다.

33) 우편으로 발송한 설문조사 꾸러미는 설문 협조 공문, 참여 안내문, 설문지 2부(공동생활가정) 또는 3부(아동양육시설), 설문지 작성 후 밀봉할 수 있는 개별 봉투, 회신용 대봉투(우표 부착)가 포함되었다.

우편으로 발송한 뒤, 개별 시설에 전화로 공문과 우편 발송 안내 및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였다. 2차로 표집한 시설 역시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공동생활가정에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우편으로 수집하였다.

3) 조사내용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 및 그 실태를 살펴보면서 시설 내 인권보장의 정도를 함께 포괄하여 보육사들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정보와 근무하고 있는 시설 정보, 아동의 인권 상황, 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 등을 포함하여 연구진이 개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설문조사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참여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인적정보 • 응답자 근무 시설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호아동 인원수 • 근무환경 및 업무 만족도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출생등록 • 원가정 보호 • 아동의 참여권 • 종교의 자유 • 독립적 기구의 접근성 • 사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 장애아동 • 자립 지원 • 의료서비스 접근 • 공동의 양육지침 • 코로나19와 시설보호아동
종사자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참여의 방해요인

2. 설문조사 결과

1) 참여자 정보

(1) 응답자 인적정보

본 연구는 설문에 응답한 시설 종사자 492명 중 시설유형을 응답하지 않은 종사자 2명을 제외한 총 490명의 응답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³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317명(64.7%),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173명(35.3%)이다. 설문조사 문항에 대하여 전체 응답과 더불어 시설 유형별 응답을 살펴보고,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문항별로 유효한 응답만을 분석하였으므로 각 결과별로 전체 응답 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정보를 살펴보면(표 8), 남자가 85명(17.4%), 여자가 404명(82.6%)이었으며, 시설유형과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에서 여자 보육사가 약 80% 정도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만 나이는 41.72세(SD = 10.31)로 연령의 범위는 만 21~68세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평균 40.66세(SD = 9.15), 공동생활가정은 평균 43.70세(SD = 11.9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이전 직장을 포함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근무했던 총 종사기간을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전체 평균 약 8년 5개월(SD = 77.25)이었으며, 응답 범위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72개월(31년)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평균 113.47개월(SD = 76.97)로 약 9년 5개월이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약 6년 6개월(SD = 72.8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 시설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평균 약 6년 5개월로(SD = 67.25), 응답 범위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14개월(26년 2개월)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평균 약 7년 5개월(SD = 68.98)이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평균 약 4년 7개월(SD = 57.81)로 나타났다.

34) 아동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평균 응답을 제시하되 부가적으로 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8〉 응답자 정보

항목			시설유형		전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성별	남자	N(%)	55(17.4)	30(17.4)	85(17.4)
	여자	N(%)	262(82.6)	142(82.6)	404(82.6)
	전체	N(%)	317(100.0)	172(100.0)	489(100.0)
연령		N	315	170	485
		평균	40.66	43.70	41.72
		표준편차	9.15	11.94	10.31
		최솟값	22	21	21
		최대값	60	68	68
총 종사기간		N	306	167	473
		평균	113.48	78.75	101.22
		표준편차	76.96	72.78	77.24
		최솟값	1	1	0
		최대값	372	365	372
현 시설 재직기간		N	312	172	484
		평균	89.81	55.13	77.48
		표준편차	68.98	57.81	67.25
		최솟값	1	1	1
		최대값	314	288	314

(2) 응답자 근무 시설 정보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설립 주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324명(66.5%), 개인시설이 116명(23.8%), 국가/지자체(사회복지법인 수탁)가 11명(2.3%), 그리고 국가/지자체는 2명(0.4%)으로 나타났다. 기타응답(34명, 7.0%)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 12명, 재단법인 10명, 사회적 협동조합 8명, 그리고 교회, 비영리법인, 법인 각각 1명, 무응답 1명을 포함하고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근무지역에 따른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경기(64명, 13.1%), 서울(60명, 12.2%), 대구(41명, 8.4%), 전남(40명, 8.2%), 경남(39명, 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응답자 근무 시설 정보

N(%)

항목		시설유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전체
시설 설립 주체	국가/지자체	2(0.6)	0(0.0)	2(0.4)
	국가/지자체(사회복지법인 수탁)	7(2.2)	4(2.3)	11(2.3)
	사회복지법인	295(93.4)	29(17.0)	324(66.5)
	개인시설	7(2.2)	109(63.7)	116(23.8)
	기타	5(1.6)	29(17.0)	34(7.0)
	전체	316(100.0)	171(100.0)	487(100.0)
지역	서울	37(11.7)	23(13.3)	60(12.2)
	부산	26(8.2)	9(5.2)	35(7.1)
	대구	30(9.5)	11(6.4)	41(8.4)
	인천	11(3.5)	6(3.5)	17(3.5)
	광주	12(3.8)	19(11.0)	31(6.3)
	대전	14(4.4)	5(2.9)	19(3.9)
	울산	3(0.9)	4(2.3)	7(1.4)
	세종	3(0.9)	0(0.0)	3(0.6)
	경기	28(8.8)	36(20.8)	64(13.1)
	강원	15(4.7)	6(3.5)	21(4.3)
	충북	18(5.7)	7(4.0)	25(5.1)
	충남	21(6.6)	9(5.2)	30(6.1)
	전북	14(4.4)	12(6.9)	26(5.3)
	전남	31(9.8)	9(5.2)	40(8.2)
	경북	23(7.3)	4(2.3)	27(5.5)
	경남	28(8.8)	11(6.4)	39(8.0)
	제주	3(0.9)	2(1.2)	5(1.0)
	전체	317(100.0)	173(100.0)	490(100.0)

또한,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 내 종사자 수를 성별을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10). 아동양육시설은 남자 종사자가 평균 5.25명(SD = 4.09), 여자 종사자는 평균 22.11명(SD = 12.71)으로, 전체 종사자 중 남자 종사자 비율을 산출한 결과 평균 22.17%였다. 여자 종사자만 근무하거나 남자 종사자만 근무하는 아동양육시설은 각각 13곳, 6곳이었다. 공동생활가정은 남자 종사자가 평균 0.71명(SD =

1.18), 여자 종사자는 평균 2.52명(SD = 1.27)으로, 남자 종사자 비율은 평균 19.86%이었다. 여자 종사자만 근무하는 시설은 100곳, 남자 종사자만 근무하는 시설 9곳으로 나타났다.

〈표 10〉 성별에 따른 시설 내 종사자 수

항목		아동양육시설 (N =308)			공동생활가정 (N = 170)		
		남자(명)	여자(명)	남자 비율(%)	남자(명)	여자(명)	남자 비율(%)
개월	평균	5.25	22.11	22.17	0.71	2.52	19.86
	표준편차	4.09	12.71	17.99	1.18	1.27	28.22
	최솟값	0	0		0	0	
	최댓값	39	70		7	8	

Note. '남자 비율'은 개별 시설의 전체 종사자 대비 남자 종사자의 비율임.

(3) 시설보호아동 인원수

응답자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수는 전체 평균 29.83명(SD = 22.74)으로 최소 3명에서 최대 116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보호연장 아동의 경우 전체 평균 1.54명(SD = 3.15)으로 최소 0명에서 최대 41명으로 응답되었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평균 43.03명(SD = 17.51), 보호연장 아동은 평균 2.08명(SD = 3.74)이었으며,³⁵⁾ 공동생활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평균 5.87명(SD = 2.86), 보호연장 아동은 평균 0.55명(SD = 0.99)이었다.

35) 보호연장 아동 수를 41명이라고 응답한 시설은 한 곳이었으며, 다음으로 2개 시설에서 20명, 1개 시설에서 16명을 응답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최댓값은 11명이다.

〈표 11〉 시설 이용 아동 수

항목		시설유형		전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 수	N	312	172	484
	평균	43.03	5.87	29.83
	표준편차	17.51	2.86	22.74
	최솟값	8	3	3
	최댓값	116	39	116
보호연장 아동 수	N	309	169	478
	평균	2.08	0.55	1.54
	표준편차	3.74	0.99	3.15
	최솟값	0	0	0
	최댓값	41	7	41

(4) 근무환경 및 업무 만족도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실태/특성에 대하여 각 문항에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12).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 내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3.28(SD = 0.65), 시설 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3.28(SD = 0.65), 업무 수행 방법이나 업무 내용은 본인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3.02(SD = 0.67)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담당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1.78(SD = 0.71)로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시설 내 상하직급 간 또는 동료 간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1.18(SD = 0.42), 시설 내 직원이 아동에게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1.15(SD = 0.40)로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설은 업무 관련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3.43(SD = 0.60), 시설은 업무 관련 개인 면담을 실시하는 편(M = 3.03, SD = 0.71)이라고 답해 전반적으로 업무환경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시설 내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

는 편이며($M = 3.14$, $SD = 0.64$), 시설 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편이고($M = 3.15$, $SD = 0.62$), 업무 수행 방법이나 업무 내용은 본인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라 답하였다 ($M = 2.93$, $SD = 0.67$). 담당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1.87($SD = 0.70$), 시설 내 상하직급 간 또는 동료 간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1.23($SD = 0.47$), 시설 내 직원이 아동에게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1.18($SD = 0.42$)로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시설은 업무 관련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편이며($M = 3.41$, $SD = 0.61$), 시설은 업무 관련 개인 면담을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2.97($SD = 0.70$)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은 시설 내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며 ($M = 3.55$, $SD = 0.59$), 시설 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편이고 ($M = 3.51$, $SD = 0.63$), 업무 수행 방법이나 업무 내용은 본인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편이라고 답했다 ($M = 3.19$, $SD = 0.62$). 담당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1.60($SD = 0.69$), 시설 내 상하직급 간 또는 동료 간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1.07($SD = 0.28$), 시설 내 직원이 아동에게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1.10($SD = 0.37$)으로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시설은 업무 관련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3.47($SD = 0.59$), 마지막으로 시설은 업무 관련 개인 면담을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3.13($SD = 0.73$)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평소 업무 관련 만족도에 관하여 각 문항에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13).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가 받고 있는 보상(급여, 휴가 등)에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2.77($SD = 0.86$), 업무의 고용안정성에 대하여 평균 3.09($SD = 0.66$), 일의 의미에 대한 만족은 평균 3.34($SD = 0.58$),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은 평균 2.94($SD = 0.77$), 노동 강도에 대한 만족은 평균 2.85($SD = 0.73$)로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지만, 보상, 근로시간, 그리고 노동강도 만족도에 있어서 3점(그런 편이다)에 미치지 못하게 나타났다.

〈표 12〉 근무환경

항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전체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1) 시설 내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16	3.14	0.64	172	3.55	0.59	488	3.28	0.65
2) 시설 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17	3.15	0.62	173	3.51	0.63	490	3.28	0.65
3) 업무 수행 방법이나 업무 내용은 본인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13	2.93	0.67	172	3.19	0.62	485	3.02	0.67
4) 담당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한다.	317	1.87	0.70	173	1.60	0.69	490	1.78	0.71
5) 시설 내 상하직급 간/동료 간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다.	316	1.23	0.47	172	1.07	0.28	488	1.18	0.42
6) 시설 내 직원이 아동에게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한다.	316	1.18	0.42	173	1.10	0.37	489	1.15	0.40
7) 시설은 업무 관련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315	3.41	0.61	172	3.47	0.59	487	3.43	0.60
8) 시설은 업무 관련 개인 면담을 실시한다.	316	2.97	0.70	172	3.13	0.73	488	3.03	0.71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보상(급여, 휴가 등)에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2.97(SD = 0.72), 업무의 고용안정성에 대하여 평균 3.13(SD = 0.58), 일의 의미에 대한 만족은 평균 3.36(SD = 0.55),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은 평균 3.09(SD = 0.66), 노동 강도에 대한 만족은 평균 2.94(SD = 0.67)로 노동강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은 보상(급여, 휴가 등)에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2.40(SD = 0.97), 업무의 고용안정성에 대하여 평균 3.03(SD = 0.78), 일의 의미에 대한 만족은 평균 3.31(SD = 0.62),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은 평균 2.66(SD = 0.87), 노동 강도에 대한 만족은 평균 2.68(SD = 0.80)로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3〉 업무 만족도

항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전체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1) 나는 내가 받고 있는 보상 (급여, 휴가 등)에 만족한다.	317	2.97	0.72	173	2.40	0.97	490	2.77	0.86
2) 내 업무의 고용안정성에 만족한다.	316	3.13	0.58	172	3.03	0.78	488	3.09	0.66
3) 나는 내가 하는 일의 의미에 만족한다.	317	3.36	0.55	173	3.31	0.62	490	3.34	0.58
4) 나는 내 근로시간에 만족한다.	317	3.09	0.66	172	2.66	0.87	489	2.94	0.77
5) 나는 내 노동 강도에 만족한다.	317	2.94	0.67	172	2.68	0.80	489	2.85	0.73

2)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상황

(1) 아동의 출생등록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최근 3년 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상황에서 입소하였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도중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아동이 있었는지 질의하였을 때, 66명(13.8%)이 있다고 답하였다(표 14).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61명(20.0%),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5명(2.9%)이 '예'를 응답하였다.

최근 3년간 출생신고가 안 되었거나 도중에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당시 어떤 방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했는지 물었을 때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34명(51.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관련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25명(37.9%), 그리고 외부 도움 2명(3.0%)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응답(5명, 7.6%)을 살펴보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응답(2명)과 여러 방안을 활용했다는 응답(1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14).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29명(47.5%), 관련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25명(41.0%), 외부 도움이 2명(3.3%)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모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고 응답하였다(5명, 100.0%).

〈표 14〉 출생미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아동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출생미등록/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아동 여부	예	61(20.0)	5(2.9)	66(13.8)
	아니오	244(80.0)	167(97.1)	411(86.2)
	전체	305(100.0)	172(100.0)	477(100.0)
해결 방안	시설 자체적으로 해결	29(47.5)	5(100.0)	34(51.5)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도움	25(41.0)	0(0.0)	25(37.9)
	외부 도움	2(3.3)	0(0.0)	2(3.0)
	기타	5(8.2)	0(0.0)	5(7.6)
	전체	61(100.0)	5(100.0)	66(100.0)

(2) 원가정 보호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아동의 원가정 보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표 15).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59명(76.5%)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110명(23.5%)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82명(27.5%), 공동생활가정은 27명(16.2%)이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하였다.

〈표 15〉 아동의 원가정 보호 관련 정보 및 교육 유무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69)	
	아동양육시설 (N = 302)	공동생활가정 (N = 167)		
원가정 복귀 관련 정보/교육 유무	예	219(72.5)	140(83.8)	359(76.5)
	아니오	83(27.5)	27(16.2)	110(23.5)

응답자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가운데 연락이 닿는 원가정 보호자(부모 또는 친인척 등 아동의 주양육자)가 있는 아동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하여 시설의 노력과 관련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16). 이 때 응답자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경험이 없을 경우를 고려하여 '모르겠음'을 응답 보기에 포함하였으며, 본 결과를 분석할 때는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지속해서 원가정 보호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응답은 평균 3.63(SD = 0.65), 아동이 원가정 보호자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을 다룬다는 응답은 평균 3.08(SD = 0.87), 원가정 보호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지원한다는 응답은 평균 3.16(SD = 0.69), 원가정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다는 평균 2.96(SD = 0.77), 아동 관련 정보(예: 시설 내 활동, 학교 활동 등)를 원가정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예: 카카오톡, 문자 등 SNS 활동)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3.27(SD = 0.68),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2.85(SD = 0.83), 마지막으로 아동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과정에 원가정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에 관하여 평균 3.01(SD = 0.73)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에서 원가정 보호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 등을 활용해 원가정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아동의 시설 내 활동이나 학교활동을 알려준다는 평균이 가장 높았고,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응답 평균이 가장 낮았다.

〈표 16〉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한 노력

항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전체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1. 지속해서 원가정 보호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게 지원한다.	296	3.59	0.54	165	3.69	0.51	461	3.63	0.53
2. 아동이 원가정 보호자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을 다루어준다.	285	3.00	0.85	165	3.21	0.90	450	3.08	0.87
3. 원가정 보호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지원한다.	280	3.13	0.67	165	3.21	0.71	445	3.16	0.69
4. 원가정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다.	275	3.00	0.74	162	2.91	0.82	437	2.96	0.77
5. 아동 관련 정보를 원가정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289	3.27	0.64	162	3.27	0.74	451	3.27	0.68
6.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75	2.97	0.80	163	2.64	0.84	438	2.85	0.83
7. 아동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과정에 원가정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81	3.02	0.72	163	2.98	0.75	444	3.01	0.73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아동이 있는지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전체 응답 중 ‘예’가 309명(66.0%), ‘아니오’가 159명(43.0%)로 나타났다(표 17).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예’가 229명(75.8%), 공동생활가정은 ‘예’가 80명(48.2%)로 확인되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아동이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 중인 아동보다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아동에게 후견인이 있는지 물었고, 절반 이상이 후견인이 있다고 답하였으나(182명, 61.9%), 112명(38.1%)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되었지만 후견인이 없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적 절차의 까다로움,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 없었음,

과도한 책임 부담, 후견인 지정 진행 중 등의 응답이 있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예'가 139명(63.8%), '아니오'가 79명(36.2%)이며, 공동생활가정은 '예'가 43명(56.6%), '아니오'가 33명(43.4%)이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아동 중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되었지만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비율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보다 높은 편이었다.

〈표 17〉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아동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친권자 연락 단절 아동 여부	있음	229(75.8)	80(48.2)	309(66.0)
	없음	73(24.2)	86(51.8)	159(34.0)
	전체	302(100.0)	166(100.0)	468(100.0)
후견인 여부*	있음	139(63.8)	43(56.6)	182(61.9)
	없음	79(36.2)	33(43.4)	112(38.1)
	전체	218(100.0)	76(100.0)	294(100.0)

Note. *'후견인 여부'는 '친권자 연락 단절 아동 유무'에 "예"를 응답한 경우에만 답하도록 함.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 형제자매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함께 생활하도록 배치하였다는 응답이 291명(74.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01명(25.8%)으로 나타났다(표 18).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함께 배치했다는 응답이 213명(74.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5명(26.0%)이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함께 배치했다는 응답이 78명(75.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6명(25.0%)이었다.

〈표 18〉 형제자매 동일 시설 거주 시 함께 생활하도록 배치 여부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392)
		아동양육시설 (N = 288)	공동생활가정 (N = 104)	
형제자매 함께 생활하도록 배치	예	213(74.0)	78(75.0)	291(74.2)
	아니오	75(26.0)	26(25.0)	101(25.8)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형제자매가 있지만 서로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아동이 원할 때 언제든지 형제자매에게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체 응답 중 약 97%가 원하는 경우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는 형제자매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6%를 차지했다(표 19).

〈표 19〉 형제자매 타 시설 거주 시 연락 가능 유무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156)
		아동양육시설 (N = 123)	공동생활가정 (N = 33)	
형제자매 연락	예	120(97.6)	32(97.0)	152(97.4)
	아니오	3(2.4)	1(3.0)	4(2.6)

(3) 아동의 참여권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 대하여 각 문항에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선택하여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0). 시설이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아동과 함께 정하는지에 대하여, 전체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3.44(SD = 0.54)로 나타났으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3.41(SD = 0.55), 3.49(SD = 0.52)로 보고되었다. 아동이 시설의 아동자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종사자의 전체 응답 평균이 3.35(SD = 0.64)로 나타났고,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3.35(SD = 0.67), 3.36(SD = 0.59)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아동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설 운영에 반영되고,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지 사항 안내 등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보기 ‘모르겠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답자 전체 평균이 3.46(SD = 0.56),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평균은 3.46(SD = 0.57),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평균은 3.47(SD = 0.5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은 학원, 복지관, 방과 후 학교 등의 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지 질의하였고, 전체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3.40(SD = 0.57)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

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3.39(SD = 0.57), 3.42(SD = 0.5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시설 내 아동의 참여권 보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 전체의 평균은 3.31(SD = 0.58)로 나타났으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3.27(SD = 0.60), 3.38(SD = 0.54)로 나타났다.

〈표 20〉 시설 내 아동의 참여권

N(%)

항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전체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7. 시설은 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외출, 휴대폰 사용, 취침 시간 등) 아동과 함께 정하나요?	315	3.41	0.55	173	3.49	0.52	488	3.44	0.54
8. 아동은 시설의 아동자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나요?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도 포함합니다)	313	3.35	0.67	173	3.36	0.59	486	3.35	0.64
8-1. 아동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설 운영에 반영되고,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공지사항 안내나 여타 방법으로 아동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나요?*	304	3.46	0.57	171	3.47	0.55	475	3.46	0.56
9. 아동은 학원, 복지관, 방과 후 학교 등의 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나요?	313	3.39	0.57	172	3.42	0.56	485	3.40	0.57
10. 아동은 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나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도 포함합니다.)	315	3.27	0.60	173	3.38	0.54	488	3.31	0.58

Note. *문항 8-1은 응답 보기에 '⑥모르겠음'을 포함하고 있어 무응답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4) 종교의 자유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 되었다(표 21). 아동이 원하는 종교를 스스로 선택하는지에 대하여(종교를 가지지 않을 경우,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포함), 전체 응답자 중 454명(93.6%)이 그렇다고 답하여 아동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 별 종사자 응답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288명(9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166명(96.5%)이 '예'라고 응답하여 공동생활가정의 긍정응답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21〉 종교의 자유

항목		시설유형		전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종교의 자유	예	288(92.0)	166(96.5)	454(93.6)
	아니오	25(8.0)	6(3.5)	31(6.4)
전체		313(100.0)	172(100.0)	485(100.0)

(5) 독립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독립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묻는 조사 결과는 표 22부터 표 24와 같다. 종사자와 아동이 인권침해 사실이나 해결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과 같은 외부 기관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22). 그 결과, 종사자 전체의 응답 평균이 3.11(SD = 0.63)로 진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3.08(SD = 0.72), 3.13(SD = 0.57)으로 나타났다.

〈표 22〉 진정제도의 필요성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87)
		아동양육시설 (N = 315)	공동생활가정 (N = 172)	
진정제도 필요성	평균	3.13	3.08	3.11
	표준편차	0.57	0.72	0.63

다음으로 종사자와 아동이 외부 기관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질의하면서 ‘필요한 경우가 없었다’는 보기를 함께 포함하였다(표 23). 종사자 전체의 응답 평균이 2.87(SD = 0.76)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경우가 없었다’에는 89명이 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2.89(SD = 0.73), 2.83(SD = 0.81)로 나타났다.

〈표 23〉 진정제도의 활용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00)
		아동양육시설 (N = 272)	공동생활가정 (N = 128)	
진정제도 활용	평균	2.89	2.83	2.87
	표준편차	0.73	0.81	0.76

이어 종사자나 아동이 외부 기관에 진정했을 경우, 종사자나 아동의 신원이 보장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표 24). 전체 응답자 중 253명(52.4%)이 ‘예’, 201명(41.6%)이 ‘모르겠음’, 29명(6.0%)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응답자 중 169명(54%)이 ‘예’, 128명(40.9%)이 ‘모르겠음’에 답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응답자 중 84명(49.4%)이 ‘예’, 73명(42.9%)이 ‘모르겠음’에 응답하였다.

〈표 24〉 진정제도 활용 시 종사자나 아동의 신원 보장 여부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신원 보장 여부	예	169(54.0)	84(49.4)	253(52.4)
	아니오	16(5.1)	13(7.6)	29(6.0)
	모르겠음	128(40.9)	73(42.9)	201(41.6)
전체		313(100.0)	170(100.0)	483(100.0)

(6) 사생활 보장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사생활 보장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5부터 표 27과 같이 보고되었다. 아동의 소지품을 어떻게 검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약 72%가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소지품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때(308명, 63.2%)’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기적으로(24명, 4.9%)’와 ‘비정기적으로(17명, 3.5%)’ 한다는 응답이 일부 있었다. 그 외 110명(22.6%)은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음’에 답하였고, ‘기타’에 28명(5.7%)이 응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중 약 74%는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유가 있을 때(205명, 65.3%)’ 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음’에는 60명(19.1%)이 응답하였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또한 약 68%가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유가 있을 때(103명, 59.5%)’에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음’에는 50명(28.9%)이 응답하였다.

〈표 25〉 소지품 검사 여부 및 방식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소지품 검사	정기적으로	15(4.8)	9(5.2)	24(4.9)
	비정기적으로	12(3.8)	5(2.9)	17(3.5)
	이유가 있을 때	205(65.3)	103(59.5)	308(63.2)
	하지 않음	60(19.1)	50(28.9)	110(22.6)
	기타	22(7.0)	6(3.5)	28(5.7)
전체		314(100.0)	173(100.0)	487(100.0)

다음으로 시설 평가 등을 목적으로 외부인이 방문하여 아동의 방 등 개인공간을 둘러보는 경우, 아동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지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6). 종사자 전체의 응답 평균이 3.24(SD = 0.67)로 나타나 아동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3.21(SD = 0.70), 3.30(SD = 0.59)으로 나타났다.

〈표 26〉 외부인의 아동 개인 공간 방문 시 사전 동의 여부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86)
		아동양육시설 (N = 314)	공동생활가정 (N = 172)	
사전동의	평균	3.21	3.30	3.24
	표준편차	0.70	0.59	0.67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에게 CCTV가 설치된 위치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전체 중 430명(97.1%)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304명(98.7%),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126명(93.3%)이 ‘예’라고 답하였다.

〈표 27〉 CCTV 설치된 위치 및 이유 설명의 필요성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43)
		아동양육시설 (N = 308)	공동생활가정 (N = 135)	
CCTV 안내 필요성	예	304(98.7)	126(93.3)	430(97.1)
	아니오	4(1.3)	9(6.7)	13(2.9)

이어 CCTV를 정해진 담당자 외에 열람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지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중 303명(71.8%)이 ‘예’라고 답하였으며, 60명(14.2%)은 ‘아니오’, 59명(14.0%)은 ‘모르겠음’이라고 답하였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예’에 답한 응답자 수가 각각 218명(71.9%), 85명(71.4%)으로 나타났으며, ‘아니오’는 각각 43명(14.2%), 17명(14.3%), ‘모르겠음’은 각각 42명(13.9%), 17명

(14.3%)으로 나타나 응답 비율에 있어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표 28〉 CCTV 열람에 대한 관리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22)
		아동양육시설 (N = 303)	공동생활가정 (N = 119)	
CCTV 열람 관리	예	218(71.9)	85(71.4)	303(71.8)
	아니오	43(14.2)	17(14.3)	60(14.2)
	모르겠음	42(13.9)	17(14.3)	59(14.0)

note. 〈표 27〉에 대한 질문에서 CCTV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표 28〉에서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무응답 처리함.

(7)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체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9, 표 30과 같다. 먼저 아동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내 상담 전문인력이 있거나, 시설에 없는 경우 외부 상담사와 연계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시설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458명(93.5%)이 '예'라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아동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한편 18명(3.7%)은 '아니오', 14명(2.9%)은 '모르겠음'에 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 시설 경우 응답자 중 302명(95.3%)이 '예'라고 응답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가 '예'에 응답한 비율(156명, 90.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니오'에 응답한 비율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응답(12명, 6.9%)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응답(6명, 1.9%)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동생활가정의 시설 내외에서 상담 여건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표 29〉 시설 내 상담 전문인력·외부 상담사 연계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90)
		아동양육시설 (N = 317)	공동생활가정 (N = 173)	
시설 내외 상담	예	302(95.3)	156(90.2)	458(93.5)
	아니오	6(1.9)	12(6.9)	18(3.7)
	모르겠음	9(2.8)	5(2.9)	14(2.9)

이러 시설 내에 아동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451명(92.0%)이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5명(1%)이 '아니오', 34명(6.9%)은 '상담실이 없음'이라고 보고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응답자 311명(98.1%)이 '예'라고 답한 반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응답자의 140명(80.9%)이 '예'라고 답하여 약 18%의 응답 비율 차이를 보였다. 공동생활가정 응답자 중 31명(17.9%)은 '상담실이 없음'이라고 답하여 아동양육시설 응답자의 해당 보기 비율(3명, 0.9%)과 차이를 보였다.

〈표 30〉 시설 내 상담 공간 여부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90)
		아동양육시설 (N = 317)	공동생활가정 (N = 173)	
상담 공간 여부	예	311(98.1)	140(80.9)	451(92.0)
	아니오	3(0.9)	2(1.2)	5(1.0)
	상담실이 없음	3(0.9)	31(17.9)	34(6.9)

(8) 장애아동

아동복지시설 내 장애아동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1에서 표 33의 결과와 같다. 종사자가 담당하는 아동 중,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모두를 포함하여, 장애아동이 있는지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 중 301명(61.8%)이 '예'라고 응답하였고 186명(38.2%)이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응답자 213명(67.8%), 공동생활가정은 응답자 88명(50.9%)이 '예'라고 답하여 아동양육시설 내 장애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결과를 보였다.

〈표 31〉 장애아동 담당 여부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87)
		아동양육시설 (N = 314)	공동생활가정 (N = 173)	
장애아동 담당 여부	예	213(67.8)	88(50.9)	301(61.8)
	아니오	101(32.2)	85(49.1)	186(38.2)

위 문항(표 31)에서 장애아동을 담당한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만, 장애아동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해당 장애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는지 질문하였다(표 32). 해당 문항에 답한 전체 응답자 중 197명(66.6%)이 ‘예’, 99명(33.4%)이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의 응답자 중 139명(66.5%), 공동생활가정의 응답자 중 58명(66.7%)이 ‘예’라고 응답하여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약 33%는 장애아동을 담당하지만 해당 장애와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장애아동의 해당 장애 관련 교육 여부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296)
		아동양육시설 (N = 209)	공동생활가정 (N = 87)	
해당 장애 관련 교육	예	139(66.5)	58(66.7)	197(66.6)
	아니오	70(33.5)	29(33.3)	99(33.4)

이어 〈표 31〉의 문항에서 장애아동을 담당한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만, 시설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지 질문하였다(표 33). 응답자 중 75.3%만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응답자 중 135명(68.9%), 공동생활가정의 응답자 중 78명(89.7%)이 ‘예’라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장애아동 특성 고려한 양육환경 제공 여부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283)
		아동양육시설 (N = 196)	공동생활가정 (N = 87)	
장애아동	예	135(68.9)	78(89.7)	213(75.3)
양육환경	아니오	61(31.1)	9(10.3)	70(24.7)

(9) 자립 지원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응답 결과는 표 34에서 표 37에 제시하였다. 먼저 시설 내외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정 직업군 체험, 멘토 연결, 강연회 참가,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아동에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96.7%가 ‘예’라고 답하였으며, 시설 유형을 나누어 보았을 때에도 대부분이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중 2.6%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4.7%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표 34〉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여부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78)
		아동양육시설 (N = 307)	공동생활가정 (N = 171)	
진로 탐색	예	299(97.4)	163(95.3)	462(96.7)
기회 제공	아니오	8(2.6)	8(4.7)	16(3.3)

다음으로 시설에서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표 35). 전체 응답자 중 306명(63.6%)이 ‘자립전담요원’이 담당한다고 하였고, ‘기타’에 159명(33.1%)이 응답하였으며, ‘자립전담요원’과 ‘기타’ 모두에 답한 비율도 3.3%에 달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274명(88.7%)이 ‘자립전담요원’이 담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의 답변은 약 11%를 차지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32명(18.6%)이 ‘자립전담요원’이 담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에 137명(79.7%)이 응답하였다.

〈표 35〉 아동의 자립 지원 담당자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81)
		아동양육시설 (N = 309)	공동생활가정 (N = 172)	
자립 지원 담당자	자립전담요원	274(88.7)	32(18.6)	306(63.6)
	기타	22(7.1)	137(79.7)	159(33.1)
	기타(1,2모두) ^a	13(4.2)	3(1.7)	16(3.3)

^a원 설문지에는 없는 응답보기였으나 복수 응답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아 따로 분류하였음.

이어 응답자가 담당하는 아동이 만 15세 이상일 경우, 아동마다 자립지원계획(주거, 생활, 경제, 금융, 진로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36). 전체 응답 중 담당 아동의 연령이 만 15세보다 어려서 '해당 없음(39명, 8.1%)'에 답한 응답을 제외하고, 411명(85.8%)이 '예'라고 답하였으며, 5명(1.0%)이 '아니오', 24명(5.0%)이 '모르겠음'에 응답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응답자 중 265명(85.5%),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46명(86.4%)이 아동마다 자립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표 36〉 개별 아동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여부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79)
		아동양육시설 (N = 310)	공동생활가정 (N = 169)	
개별 아동 자립지원계획	해당없음	27(8.7)	12(7.1)	39(8.1)
	예	265(85.5)	146(86.4)	411(85.8)
	아니오	3(1.0)	2(1.2)	5(1.0)
	모르겠음	15(4.8)	9(5.3)	24(5.0)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해 시설에서 프로그램/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역사회 내 센터/시설들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448명(93.3%)은 '예'라고 답하였고, 11명(2.3%)은 '아니오', 21명(4.4%)은 '모르겠음'이라고 보고하였다(표 37).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응답자 중 288명(92.9%)은 '예', 4명(1.3%)은 '아니오', 18명(5.8%)은 '모르겠음'이라 응답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의 응답자는 각각 160명(94.1%), 7명(4.1%), 3명(1.8%)으로 나타났다.

〈표 37〉 자립 준비 프로그램·서비스 자체 운영 또는 연계 여부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80)
		아동양육시설 (N = 310)	공동생활가정 (N = 170)	
자립 준비 프로그램/서비스	예	288(92.9)	160(94.1)	448(93.3)
	아니오	4(1.3)	7(4.1)	11(2.3)
	모르겠음	18(5.8)	3(1.8)	21(4.4)

(10) 의료서비스 접근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이 병원에 가야할 때, 병원 방문 등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질의하였다. 해당 질문에 '어려웠던 적이 없음'에 응답한 357명과 '무응답' 2명을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어려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32명 중 83명(62.9%)이 그 이유로 '인력부족'을 꼽았고, 21명(15.9%)이 '차량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기타'에 28명(21.2%)이 응답하였는데, 이 중 '차량부족'과 '인력부족'에 중복 응답한 14명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인력부족'에 50명(67.6%), 그 다음으로 '기타'에 15명(20.3%), 마지막으로 '차량부족'에 9명(12.2%)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이유로 제시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또한 '인력부족', '기타', '차량부족' 순서대로 각각 33명(56.9%), 13명(22.4%), 12명(20.7%)이 응답하였다.

〈표 38〉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어려움의 원인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132)
		아동양육시설 (N = 74)	공동생활가정 (N = 58)	
의료서비스 어려움	차량부족	9(12.2)	12(20.7)	21(15.9)
	인력부족	50(67.6)	33(56.9)	83(62.9)
	기타	15(20.3)	13(22.4)	28(21.2)

Note. '기타' 응답 중 차량부족과 인력부족에 중복 응답한 14명이 포함되어 있음.

(11) 공동의 양육지침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이 규칙을 어기거나 문제되는 행동을 했을 때, 종사자들을

위한 공동의 양육지침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39).³⁶⁾ 전체 응답자 중 350명(72.9%)은 '예'라고 응답하여 공동의 양육지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6명(17.9%)은 '아니오', 나머지 44명(9.2%)은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양육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아동양육 시설의 20%,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의 14.1%는 양육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시설 내 공동 훈육 지침 마련 여부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80)
		아동양육시설 (N = 310)	공동생활가정 (N = 170)	
공동 훈육 지침	예	212(68.4)	138(81.2)	350(72.9)
	아니오	62(20.0)	24(14.1)	86(17.9)
	모르겠음	36(11.6)	8(4.7)	44(9.2)

추가적으로 공동의 양육지침 내용을 주관응답의 형태로 질의하였고, 총 195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은 크게 '규칙에 따라 훈육함', '직원회의를 통해 사안에 따라 대응함', '대화 또는 상담을 통해 훈육함' 그리고 '아동을 중심으로 훈육함'으로 구분되었다. 규칙에 따라 훈육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때 규칙은 아동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경우, 아동 자치회를 통해 규칙을 정하는 경우, 가족회의를 통해 규칙을 정하는 경우, 또는 지도위원회/선도위원회가 규칙을 정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 외에 상벌제도, 다짐문 또는 반성문 작성, 생각할 시간(time-out) 갖기 등이 예시로 제시되었다. 응답한 공동의 양육지침 중 효과적인 점을 묻는 질문도 제시했는데, 일관적으로 훈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지침이 있더라도 개별아동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다소 부정적인 응답도 있었다.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의 실수가 많이 줄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아동을 양육하는데 신체적인 처벌이나 강압적인 말, 또는 간접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

36) 설문조사에서는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훈육지침'으로 제시하였다.

로 응답하도록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다(표 40).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1.90(SD = 0.76)으로 나타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0〉 신체 처벌, 강압적인 말, 간접체벌에 대한 필요성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81)
		아동양육시설 (N = 309)	공동생활가정 (N = 172)	
처벌에 대한 필요성	평균	1.86	1.97	1.90
	표준편차	0.760	0.748	0.76

이와 관련하여,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주관 응답의 형태로 질의하였고 총 299명이 답변하였다. 그 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급여·휴가를 포함한 근로조건,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소진 등을 포함한 종사자의 정신건강 관리가 그 뒤를 이었다. 인력보충과 관련해서는 인력부족으로 돌봄이 어렵다거나 종사자 대비 아동수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주를 이루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행동 등을 다루기 어려움에 기인한 요청도 상당히 있었으며 장애아동의 양육을 고려한 인력 충원, 간호사 등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요청에 대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다.

(12) 코로나19와 시설보호아동

코로나19 이후,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 및 종사자의 경험에 대해 총 여섯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각 문항에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표 41). 첫째,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외출을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3.17(SD = 0.75)로 나타나 아동의 외출이 제한되는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3.23(SD = 0.70), 3.06(SD = 0.82)로 나타나, 아동양육시설의 평균이 약간 더 높았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교류가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2.74(SD = 0.83)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

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2.81(SD = 0.79), 2.61(SD = 0.87)로 나타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더 제한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전환이나 관련, 아동 1인에게 제공할 교육기자재(온라인 컴퓨터 환경)가 부족한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2.11(SD = 0.92)로 보고되어 교육기자재 지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향이 보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응답자 평균은 2.07(SD = 0.90), 공동생활가정의 응답자 평균은 2.18(SD = 0.94)로 나타나 공동생활가정의 교육기자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 19 이후 아동의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대체 활동 마련과 관련한 지자체나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2.92(SD = 0.79)로 보고되어 지원이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향이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응답자 평균은 2.85(SD = 0.78), 공동생활가정의 응답자 평균은 3.03(SD = 0.78)으로 나타나 공동생활가정 응답자들이 대체 활동 마련과 관련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이 부족한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1.73(SD = 0.79)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물품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향이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응답자 평균은 1.64(SD = 0.66), 공동생활가정의 응답자 평균은 1.88(SD = 0.82)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감염예방 및 대응 관련 매뉴얼이 충분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평균이 1.69(SD = 0.66)로 나타나 매뉴얼이 충분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응답자와 공동생활가정의 응답자 평균이 각각 1.70(SD = 0.64), 1.68(SD = 0.70)로 나타나 유사한 수준에서 보고되었다.

〈표 41〉 코로나19 이후 아동 및 종사자의 경험

N(%)

항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전체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1) 아동의 외출을 제한하고 있다.	315	3.23	0.70	171	3.06	0.82	486	3.17	0.75
2)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교류가 제한되고 있다.	302	2.81	0.79	170	2.61	0.87	472	2.74	0.83
3)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전환 관련, 아동 1인에게 제공할 교육기자재(온라인 컴퓨터 환경)가 부족하다.	311	2.07	0.90	171	2.18	0.94	482	2.11	0.92
4) 아동의 외부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대체 활동 마련과 관련하여 지자체나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다.	314	2.85	0.78	173	3.03	0.78	487	2.92	0.79
5)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마스크, 소독제 등)이 부족하다.	316	1.64	0.66	172	1.88	0.82	488	1.73	0.73
6) 감염예방 및 대응 관련 매뉴얼이 충분하지 않다.	314	1.70	0.64	172	1.68	0.70	486	1.69	0.66

3) 종사자 인권교육

(1) 인권교육 경험

아동복지시설 내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응답 결과는 표 42부터 표 46에 제시하였다. 먼저 종사자가 현재 근무하는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고 있는지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 중 485명(99.2%)이 ‘예’, 4명(0.8%)이 ‘아니오’라고 답하여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응답자 중 315명(99.7%), 공동생활가정 응답자 중 170명(98.3%)이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42〉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지에 대한 여부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정기적 인권교육	예	315(99.7)	170(98.3)	485(99.2)
	아니오	1(0.3)	3(1.7)	4(0.8)
전체		316(100.0)	173(100.0)	489(100.0)

위 문항에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느 기관에서 제공한 교육을 받았는지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표 43). 응답자들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었고, 전체 응답 수 753명 중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받았다는 응답이 377명(50.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학, 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기관에서 받았다는 응답이 179명(23.8%), 인권단체, 복지단체 등 민간기관이 98명(12.9%), 대학, 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기관이 75명(10.0%), 그 외 기타 응답이 24명(3.2%)으로 순서대로 보고되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전체 응답 수 475명 중 가장 많은 응답은 공공기관(251명, 52.8%)이었고, 그 다음은 순서대로 복지시설(83명, 17.5%), 민간기관(77명, 16.2%), 교육기관(49명, 10.3%), 그리고 기타(15명, 3.2%)이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응답 수 278명 중 공공기관(126명, 45.3%)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가장 많았고, 복지시설(96명, 34.5%), 교육기관(26명, 9.4%), 민간기관(21명, 7.6%), 그리고 기타(9명, 3.2%) 순으로 보고되었다.

〈표 43〉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82)
		아동양육시설 (N = 312)	공동생활가정 (N = 170)	
교육 제공 기관	공공기관	251(52.8)	126(45.3)	377(50.1)
	교육기관	49(10.3)	26(9.4)	75(10.0)
	복지시설	83(17.5)	96(34.5)	179(23.8)
	민간기관	77(16.2)	21(7.6)	98(12.9)
	기타	15(3.2)	9(3.2)	24(3.2)
전체 응답 수		475(100.0)	278(100.0)	753(100.0)

이어 <표 42>에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표 44).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고, 전체 응답 수 872명 중 동영상 강의로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295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280명(32.1%)이 강의식 비대면 강의, 230명(26.3%)이 강의식 대면 강의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토론식 대면 강의(33명, 3.8%), 토론식 비대면 강의(16명, 1.9%), 서면 강의(15명, 1.7%), 기타(3명, 0.5%) 순으로 응답이 보고되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동영상 강의(33.8%), 강의식 비대면 강의(30.6%), 강의식 대면 강의(29.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답변은 응답 수대로 토론식 대면 강의(3.2%), 서면 강의(1.6%), 토론식 비대면 강의(1.4%), 기타(0.2%)로 토론보다는 강의형식으로 제공되는 경향을 보였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강의식 비대면 강의(34.8%), 동영상 강의(33.9%), 강의식 대면강의(21.3%)라는 답변이 차례로 많았다. 그 외 답변은 응답 수대로 토론식 대면 강의(4.8%), 토론식 비대면 강의(26%), 서면 강의(1.9%), 기타(0.6%) 순이었다.

<표 44> 인권교육의 강의 방식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82)
		아동양육시설 (N = 313)	공동생활가정 (N = 169)	
강의 방식	강의식 대면	164(29.2)	66(21.3)	230(26.3)
	토론식 대면	18(3.2)	15(4.8)	33(3.8)
	강의식 비대면	172(30.6)	108(34.8)	280(32.1)
	토론식 비대면	8(1.4)	8(2.6)	16(1.9)
	동영상 강의	190(33.8)	105(33.9)	295(33.8)
	서면	9(1.6)	6(1.9)	15(1.7)
	기타	1(0.2)	2(0.6)	3(0.5)
전체 응답 수		562(100.0)	310(100.0)	872(100.0)

다음으로 <표 42>에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받음으로써 응답자의 직업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로 응답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표 45).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3.07(SD = 0.54)로, 인권교육이 종사자의 직업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응답자의 평균은 3.07(SD = 0.49), 공동생활가정 응답자의 평균은 3.05(SD = 0.61)로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표 45〉 인권교육이 직업 태도 또는 행동에 미친 영향

N(%)

		시설유형		전체 (N = 481)
		아동양육시설 (N = 312)	공동생활가정 (N = 169)	
인권교육 영향	평균	3.07	3.05	3.07
	표준편차	0.49	0.61	0.54

〈표 42〉에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아동생활시설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표 46). 전체 응답자 중 373명(77.5%)이 ‘예’, 44명(9.1%)이 ‘아니오’, 64명(13.3%)이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하여, 약 78%가 아동생활시설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동의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 응답자 중 258명(82.4%)이 ‘예’, 14명(4.5%)이 ‘아니오’, 41명(13.1%)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하였고, 공동생활 가정 응답자는 각각 115명(68.5%), 30명(17.9%), 23명(13.7%)이 순서대로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인권교육 여부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특성 고려한 인권교육	예	258(82.4)	115(68.5)	373(77.5)
	아니오	14(4.5)	30(17.9)	44(9.1)
	모르겠음	41(13.1)	23(13.7)	64(13.3)
전체		313(100.0)	168(100.0)	481(100.0)

(2) 인권교육 참여의 방해요인

아동복지시설 내 종사자들로 하여금 인권교육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7). 응답자들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었고, 전체 응답 수 658명의 답변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육 시간대(178명, 27.3%),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172명, 26.1%), 과중한 업무(85명, 12.9%),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75명, 11.4%)를 꼽았다. 그 외 답변으로 교육 기간(30명, 4.5%), 비용부담(26명, 3.9%), 시설장의 관심 부족(4명, 0.6%)이 보고되었다. 기타(88명, 13.3%) 응답이 있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코로나19 관련한 어려움(6명), 교육 내용의 질이나 교육 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5명), 강사 섭외의 어려움(3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전체 응답과 동일한 순서대로 인권교육 참여 방해 어려움의 요인을 꼽은 반면,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62명, 24.1%)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교육 시간대(48명, 18.7%)와 과중한 업무(48명, 18.7%)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40명, 15.6%), 비용부담(16명, 6.2%), 교육기간(8명, 3.1%), 시설장 관심 부족(2명, 0.8%) 응답이 있었다. 기타에 33명(12.8%)이 응답하였다.

〈표 47〉 인권교육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N(%)

항목	시설유형		전체 (N = 453)	
	아동양육시설 (N = 291)	공동생활가정 (N = 162)		
방해요 인	시간대	130(32.4)	48(18.7)	178(27.3)
	거리	35(8.7)	40(15.6)	75(11.4)
	교육기간	22(5.5)	8(3.1)	30(4.5)
	대체교사 확보 어려움	110(27.4)	62(24.1)	172(26.1)
	비용부담	10(2.5)	16(6.2)	26(3.9)
	시설장 관심부족	2(0.5)	2(0.8)	4(0.6)
	과중한 업무	37(9.2)	48(18.7)	85(12.9)
	기타	55(13.7)	33(12.8)	88(13.3)
전체 응답 수	401(100.0)	257(100.0)	658(100.0)	

마지막으로, 응답자에게 기억에 남는 인권교육이 있는지를 주관식 질문으로 제시하였다. 응답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 주체, 교육 형태, 교육 방식, 교육 내용 등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춘 답변이 있었다.³⁷⁾ 그 중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토론 등 소통에 기반을 둔 교육(14건), 경험 또는 사례에 기반을 둔 교육(32건), 시설 환경을 고려한 교육(8건), 그리고 특정 활동을 통한 교육(3건)을 받았을 때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하였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아동 중심의 태도, 아동 발달을 고려한 교육, 훈육방식, 아동학대 등 아동과 관련한 정보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이 기억에 남는다는 답변이 많았으나, 종사자에 초점을 맞춘 교육(종사자 보호, 양육자로서 역량강화, 종사자로서 자아탐색/성찰 등)을 언급한 응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욕구는 인권교육에 특별히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인권교육에 종사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폭력에 대처하는 방안, 권리 침해 시 대처방안(동료, 외부기관 등), 아동과 종사자의 인권이 상충하는 경우 해결방안, 종사자의 심리·정서 회복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종사자에 방점을 둔 인권교육과 더불어 아동의 개별특성을 고려한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양육시설 내 장애를 진단받은 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학대로 분리조치되어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수의 증가에 따라 양육시설 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도 연결 지어볼 수 있다.

37) 일부 응답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 등 교육주체를 명시하기도 하였고, 장소 및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대면 교육이 좋았다는 응답도 현장감이 있어서 대면 교육이 좋았다는 등 교육제공 형태를 중심으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3. 면접조사 개요

1) 면접조사 참여자

면접조사는 보육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달리, 아동복지시설 내 다양한 직무 종사자(사무국장, 임상심리상담원, 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지도원, 간호사,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18명을 섭외하여 진행하였다. 대부분 30명 이상의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은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가 아동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는 반면, 8인 미만 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외에는 보육사만 배치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 참조). 그 결과, 공동생활가정의 보육사는 아동양육시설의 다양한 종사자가 분담하는 업무를 증첩하여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도 보육사가 돌봄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긴 하지만 생활시설의 특성상 종사자 모두가 아동을 양육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면접조사는 아동이 생활하는 곳이 어디든 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의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종사자의 분화된 직종의 특성보다는 아동의 시설 생활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접조사는 6개의 아동양육시설에서 12명의 종사자가, 6개의 공동생활가정에서 6명의 종사자가 참여하였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시설장 1명, 사무국장 3명, 생활복지사 3명, 임상심리상담원 1명, 간호사 1명, 보육사(선임 생활지도원 포함) 3명이었고, 공동생활가정은 6명 모두 시설장이었다.

〈표 48〉 종사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참여자 번호	성별	지역	시설 유형	담당 업무	조사일	비고
1	남	경기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21.09.24.	개별
2	여	인천	아동양육시설	생활복지사	21.09.29.	집단
3	여	인천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	21.09.29.	집단
4	남	충북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21.10.01.	개별
5	남	대전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	21.10.01.	집단

참여자 번호	성별	지역	시설 유형	담당 업무	조사일	비고
6	여	대전	아동양육시설	생활복지사	21.10.01.	집단
7	남	경기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21.10.04.	개별
8	여	대구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21.10.06.	개별
9	여	경북	아동양육시설	생활복지사	21.10.06.	집단
10	여	경북	아동양육시설	보육사(선임생활지도원)	21.10.06.	집단
11	남	광주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21.10.07.	개별
12	여	전남	아동양육시설	시설장 (전 사무국장)	21.10.07.	집단
13	남	전남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	21.10.07.	집단
14	여	부산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21.10.11.	개별
15	여	경기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 (전 자립지원전담요원)	21.10.13.	개별
16	여	충남	아동양육시설	간호조무사	21.10.22.	개별
17	남	충남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21.10.22.	개별
18	여	충남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21.10.22.	개별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섭외는 우선 전국을 인구비례할당으로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전라권)³⁸⁾으로 분류한 뒤, 각 권역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무선표집하였다. 표집된 대상 시설에는 공문을 발송하기 전 유선전화화를 통해 면접조사의 목적과 방법, 질문 내용을 설명하였고, 내부 논의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시설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공문을 발송하였다.³⁹⁾

면접조사에 참여한 시설 종사자는 개별면접과 초점집단면접(FGI)을 병행하여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와 보육사 등 각 종사업무의 특성과 직무별 차이에 대한

38)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충청권: 강원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경북권: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경남권: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전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39) 국가기관의 일방적 요청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강요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사자의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별 방역지침과 시설의 요청에 따라,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윤리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한 후,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을 진행하였다. 녹음자료는 전사하여 축어록을 만들었으며, 녹음파일과 축어록을 함께 살펴보며 조사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 5개의 주제를 분석틀로 구체화했으며,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유의미한 답변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답변을 정리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응답한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제 면접조사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상호검토하였다.

3) 조사내용

면접조사 질의는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구성하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를 포함한 현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종사자의 업무환경, 아동의 원가정 보호, 아동의 자유권과 참여, 시설보호아동의 특별한 욕구, 그리고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해 종사자가 아동보호와 양육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노동환경인지 알아보고, 시설보호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의 개별적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는 무엇인지 청취하였다. 또한,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였다. 면접조사에서 제시된 참여자들의 답변은 아동보호 현장의 한계와 제한점을 확인하는 한편 긍정적 경험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다. 면접조사에 제시한 구체적 내용은 [별첨 2] '면접조사 질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면접조사 질문 분석틀

순번	항목	세부 항목
1	종사자의 업무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 • 업무 부담 현황 • 업무 관련 교육 및 상담
2	아동의 원가정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신고 및 부모를 알 권리 • 원가정 보호에 대한 시설의 역할과 어려움 • 아동의 법정대리인 문제
3	아동의 자유권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생활의 자율성 보장 • 아동의 사생활 보호 • 외부 모니터링 제도
4	시설보호아동의 특별한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전문인력 현황과 필요성 • 장애아동 보호와 지원 • 자립 지원 • 양육환경과 양육 방법
5	인권교육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 • 종사자의 인권교육 욕구

4. 면접조사 결과

1) 종사자의 업무환경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이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공간이다. 소위 ‘아동생활시설’로 불리는 각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가정환경을 벗어난 아동에게 의식주는 물론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보호자로 역할해야 하며, 이에 그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업무환경은 필수적이다. 대안양육체계에서 공식적으로 양육을 책임지는 종사자의 보수를 포함한 근무환경은 이들의 동기부여, 직업만족도, 직업지속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UNGA, 2010).⁴⁰⁾ 종사자들이 최선의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할 조건이 갖추는 것은 공공의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계약조건과 형태,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등 종사자의 업무환경을 질의하였다.

(1)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차등 지급〉

조사 결과,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조건으로 인한 어려움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로 일하는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은 인건비 문제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는데(보건복지부, 2021a), 이는 종사자의 낮은 임금수준과 불안정한 고용을 예방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는 당해 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준수하

40) A/RES/64/142, para. 114.

도록 하여 호봉경력이 인정되는 반면, 공동생활가정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일률적으로 정하는 금액⁴¹⁾을 지급하도록 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아동복지시설에 공동생활가정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지침을 통해 지원단가를 정하여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달리 규정하는 것이다. 다수 아동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배치와 지자체 관리감독, 종사자의 자격 요건까지 사실상 양 시설의 종사업무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박탈감과 업무만족도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 우리가 정규직하면 뭐 합니까? 사실상 비정규 무기계약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호봉제가 아니고, 시설장이나 보육사나 같은 급의 인건비를 내려주잖아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호봉제를 하는데, 법인에서 부담이 엄청나요. 이게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까지는 못 가구요, 호봉간의 격차를 최대한 촘촘하게. (...중략...) 상여도 투쟁을 해서, 대구시가 작년부터 1인당 연 200만 원 나오는데 그게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양육시설이랑 똑같이 기본급의 60%를 자체적으로 주자. 우리는 호봉이 있으니까, 이것도 60%씩 하면은 이제 좀 많죠. (참여자 8)
- 양육시설 종사자들이나 그룹홈 종사자들이나 자격 요건이나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쪽(양육시설)으로 가면 시간외수당도 나오는데, 그룹홈은 그냥 딱 정액. 시설장이나 한 달 된 보육교사나 똑같이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법인에서도 그런 지원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간섭만 심하게 하는 거고. 맨날 보고해야 되고, 그 법인의 어떤 시스템에 맞게 뭘 해야 되고, 그 일이 별도로 더 있더라고요, 법인에 대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들이 그 시설장의 마인드에 따라 천차만별이잖아요. (참여자 8)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야간 근무 시간은 (급여에)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참여자 11)
- 제가 20호봉인데 (양육시설보다) 연간 3,000만 원 정도 작게 받고 있어요. 이 괴리감 말도 못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사자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아이들

41) 2021년 기준 28,928천원(인, 연간). 이때, 시설에 교부하는 인건비 총액에서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및 종사자 퇴직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인원수에 맞게 배분함(보건복지부, 2021a: 204).

도 오래 경력 있는 좋은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길어야 3년.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조금 이렇게만 하면 선생님이 가버리고 가버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참여자 14)

〈과도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아동보호의 일차적 의무이행자인 부모가 그 역할을 할 수 없어 원가정에서 분리된 경우, 이들 아동의 보호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시설 종사자는 아동 보호체계에서 공공의 업무 대행자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동 복지시설은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종사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직무교육,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시설 운영의 적합성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시설배치를 정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장부 및 서류를 만들고 보관하는 것은 필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는 물론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류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아동보호와 양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사실상 방해가 되고 있으며, 결국 아동이 잠든 시간에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모든 참여자가 지적한 어려움이었다.

-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평가하는 항목들이 막 나왔는데, 그 안에서 만들어야 될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중략...) 상담을 했으면 상담 기록하고, 외출했으면 외출 기록 하고, 막 아이들의 인권이다 해서 무슨 의견 수렴을 하고 거기에다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직원들의 고충은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것들을 서류들 다 이렇게 하라는데, 그런 것들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다 애들 밥도 해야지, 애들 같이 데리고 어딜 돌아다녀야지, 프로그램도 해야지, 어디 캠프도 가야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3교대다 보니까, 결국은 교사 1명에서 2~3일씩 애들을 봐야 하는데, 그런 일처리는 일단 애들 다 재우고 나서 해야 하잖아요. 저희는 또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 정리도 해야 하고. 애들 재우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참여자 1)
-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그 행정 일이 어마어마해요. 상담을 하고, 애들하고 뭘 하고, 그거를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거야. 한 보육사가 우리 여자 그룹홈 있다가 양육시설로 가는데 그게 자기는 너무 부담이래. 너무 부담이래. 일지 쓰고, 여기 맞춰가지고 하는 게. 양육시설에서는 애들 케어만 하면 되죠. 애들 케어하고 보육 일

지 정도 쓰나 몰라. 근데 우리는 지금 근무자가 다 써야 돼. (…중략…) 일지로 들어가면은 근무자가 해야 되니까, 양호일지, 보육일지, 상담일지, 프로그램일지, 사례 관리… (참여자 8)

〈휴게시간 확보의 어려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시설은 아동이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시설로서,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분리되기 어렵다. 예컨대, 수유가 필요한 영아는 통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식사시간이 달리 있을 수 없다. 유아와 초등학교 저연령 아동의 식사시간에는 생활지도와 함께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양한 연령 범주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 특성상, 아동간 갈등 상황과 그로 인한 각종 위험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돌봄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보육사는 물론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일하는 시간 내내 담당 업무의 범위를 넘어 아동의 일상을 민감하게 지켜보고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종사인력은 한정된 결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의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54조)는 규정을 사실상 준수하기 어렵다.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정규교육과정과 대외활동이 상당히 제한된 현재, 종사자의 업무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공동생활가정의 부담은 아동양육시설보다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 그전에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을 휴게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는 어린 아동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 식사 지도를 하시잖아요. 밥을 먹게끔 지도하고, 식판을 이렇게 배식도 도와줘야 되고, 꼬맹이들은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지도해야 되니까, 실제로 정말 그게 휴게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업무환경 특성상. (참여자 3)
- 아이들을 보면서 휴게시간을 갖는 건 사실 저희한테 불가능한 일여서 선생님들이 그냥 감수를 하고 일을 하는 상황이긴 해요. 휴게시간을 편성해준다고 해도 계속 대기 중인 시간일 뿐이지, 선생님들이 정말 쉴 수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못 되거든요. 언제든지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오롯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자 6)
- 식사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원래 지원이 되는 건데, 식사 시간에 아이들 밥을 준비해

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아이들 없는 시간에 휴게시간 만들어서 하면, 휴게를 잡으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간은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진행해야 되고, 또 구청에서나 메시지나 전화나 이런 것들 오면 놔둘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1시 반 정도 되면 귀가를 합니다.⁴²⁾ 귀가하니까 준비를 또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불가능하다고,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참여자 11)

- 저같은 경우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의 아침에 가면은 아이들이 오후나 되어서, 학원 다니는 애들은 12시 넘어서 오고, 아니면 4, 5시에 오니까. 그때 시간을 활용해서 쉬기도 하고, 그 시간에 업무를 한다든가. (참여자 1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특성〉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가 정한다([별표 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 참조). 이에 따라,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필수인력은 시설장과 보육사이며, 0~2세 아동은 2명당 보육사 1명, 3~6세 아동은 5명당 보육사 1명, 7세 이상 아동은 7명당 보육사 1명을 두어야 한다.⁴³⁾ 이는 시설 내에 아동 인원수 기준에 따른 보육사 다수가 상주하는 형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대체로 시설장 1명과 보육사 2명이 종사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예로 들면, 3명이 24시간, 주 7일을 나누어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최대 7명의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 내에 종사자는 1명만 근무하는 것이다. 2명의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아동의 교육이나 병원 진료, 상담을 포함한 일상을 지원하는 과정에 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여, 결국 종사자 1명만 시설에 남게 되거나 대체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아동양육시설도 보통 7~10명이 함께 생활하는 각 방에 보육사가 1~2명씩 배치되어,⁴⁴⁾ 공동생활가정과 마찬가지로 종사자 1인이 다수 아동에 대한 보육업무를 혼자 담당하거나 시설 내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42) 참여자 11이 근무하는 그룹홈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연령대 아동 7명이 생활하는 곳이다.

43) 30명 이상의 아동이 생활하는 양육시설은 시설장과 보육사 외에도 사무국장, 의사(또는 계약의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이 배치된다.

44) 보육사의 담당아동 인원수와 근무시간은 이하에 인터뷰 인용문구를 통해 보다 자세히 제시하였다.

- 우리 어떻게 하나면은 보육사 두 사람이 이틀 근무하면은 수목금 쉬고, 토요일 근무하고 월화수 쉬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 대신 시설장들이 수요일 날은 혼자 커버를 해주어야 삼 일 쉬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말에 이틀을 한 사람이 풀로 하는 게 익숙한 경력직들은 되는데, 만약에 신입이 들어왔다면 그만큼을 못하는 거야. (참여자 8)
- 작년 초에 심리치료 받는 애가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 캠프처럼 하는 한 달 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대구로) 데리고 오고, 일요일 저녁에 다시 (경기도로) 데려다 줘야. 이게 그 프로그램 참가하는 데는 무료였어요, 그런데 비용이 백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교통비하고 하루를 잡고 경기도 그 골짜기 어디로 들어가니까 교대 근무하고 쉬는 사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데리고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선생님들의 협조가 되니까 가능하지 제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참여자 8)
- 원장을 포함해서 사무업무 쪽에 사무직, 일반직. 거기는 아홉 시에 출근해서 여섯 시에 퇴근하는 기본적인 일반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대들이 근무해서 보육사 선생님들이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데이(낮근무)는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거의 사무실하고 똑같고요. 나이트(야간근무)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오후 5시 30분에 출근을 하셔서 다음 날 아침 9시 30분에 퇴근을. 저희가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주근로, 그리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시간외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밤 12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퇴근은 못 하지만 선생님들 숙소에서 별도로 휴게시간으로 상호협약해서 하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9시 반까지 예 퇴근하는 시간까지 3.5를 해가지고 통상 8시간 주 근로에 2시간 시간외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3조 2교대라 한 분은 휴게가 되겠조? 그리고 우리 조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취사에 관련 교직원들은 격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어서, 아침에 6시에 출근을 하셔서 오후 5시까지, 중간에 한 시간 정도 휴게 시간은 있지만 주근로 시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저희는 인제 탄력근로제는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여자 12)
- 보통 저희는 48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1일 기준 저녁시간, 점심시간 해서 2시간 휴게시간이 있구요. 그리고 10시 이후부터는 취침시간으로 보고 있어서 취침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저희가 또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해서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주 40시간을 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연평균으로 따져서 월 2회 대체 휴무를 따로 주고 있어요. (참여자 15)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 최대 52시간 근로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도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각 지자체장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보육사, 조리원 등)에 대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안내한다(보건복지부, 2021a).⁴⁵⁾ 조사 결과, 아동복지시설에도 52시간 근로가 전면도입되면서 24시간 근무를 이어가는 보육사의 업무여건이 다소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아동생활시설이라는 직무 특성상 법정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고도 있었다. 예산확보가 어렵거나 예산이 마련된 때에도 추가인력 채용이 어려운 등 지역격차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참여자 14가 종사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방비 지원으로 상담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주 4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아동 인원수에 따른 적정 종사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문제를 알 수 있다.

- 이게 52시간이라는 게 아동 양육 시설의 특성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양육자가 수시로 바뀐다 그러면 아이들은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이 이틀이든 해서 한 선생님이 계속해서 꾸준히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참여자 5)
- 그룹홈은 5인 미만 시설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넣어가지고 통화를 했거든요. 우리는 법인 시설이라고, 5인 미만 시설이 아니다, 법 위반이다. 법인 시설은 전체 인원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 5인 미만 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은 자영업 소상공인이나 이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배려지, 정부는 자영업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푸쉬를 세 개 했어요. (...종략...) 대구에는 4명을 주겠대요, 내년엔. 그룹홈이 11개인데. (참여자 8)
- 근래에 3교대 근무로 바뀌면서 그나마 예전에 비하면, 시간적으로 되게 좋아진 건 있는데, 3교대라고 인력을 주신 부분이 휴가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세 명에서 근무를 여덟 시간씩 꼬박 했을 때만 3*8=24, 그러면 하루가 딱 맞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로만 인력이 충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휴가를 가야

45) 2018년 3월 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개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되어,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되면 대체인력이 없는 거예요. (...중략...) 연속성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휴가를 갔다가 와서 보면은 뭔가 좀 달라져 있고 그렇게,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애들이 익숙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은 잠깐 봤는데 애들이 며칠 동안 계속 못 보다가 또 어색해지고. (참여자 9)

- 저희는 현재 2교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3교대로 해야 하는데, 인원이 총원이 안 돼서. 계속 구하고는 있는데 어려워서. 또 저희가 다섯 방이거든요. 다섯 방 선생님이, 원래 3교대를 돌려면 15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또 2분은 총원이 되어가지고. 두 방에는 3분씩 들어갔는데, 아직은 3교대로 돌지 않고 2교대로 돌고 있다가, 다 총원되면 그때 3교대로 돌 예정이거든요. (...중략...) 맞교대로 해서, 이렇게 한 분이 나가면 이제 들어오고. (참여자 17)
- 원래 그룹홈은 시설장 1명, 종사자 2명이 기준이에요. 근데 부산시에서 학대피해아동전담그룹홈은 한 6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는 부산시 전체 시비로 상담사가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학대피해아동전담그룹홈으로 분류가 되어서 다른 그룹홈보다 한 명의 인력이 더 많죠. 보육사 3명, 상담사 1명, 저(시설장), 이렇게 4명에서 아이들 7명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주 40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참여자 14)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의 외부의 대체·지원인력 활용 가능성〉

외부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것도 아동생활시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이하 “유엔 대안양육 지침”)은 양육환경의 잦은 변화는 아동의 발달과 애착형성 능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⁶⁾ 같은 맥락에서, 참여자들은 낯선 사람이 대체인력으로 시설에 투입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언급하였다.

- 외부인력이 도움을 봐도 아이들한테는 되게 낯선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오히려 외부자가 아이를 돌본다거나 외부자가 아이를 (병원에) 인솔해가는 것도 그닥... 아이를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히 일이면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양육이라는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참여자 2)
- 대체인력을 요청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대신 봐달라고 부탁도 하긴 하는데, 아동시설이다 보니까 대체인력이 오더라도 그 대체인력과 아동이 있기는 힘들고 같이 있어야

46) A/RES/64/142, para. 60.

될 종사자 한 명이 실질적으로 더 있어야 돼요. 결국은 대체인력이 확보되더라도 그 대체인력하고 종사자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한 분은 일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이 많이 되죠. (참여자 11)

〈인력 부족〉

상시적인 인력 부족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에서 제시된 문제였다. 각 종사 유형별 안정적인 인력이 부족한 결과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종사자의 소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지적이었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직접적인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자유가 상당히 제약되면서 아동들의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어려움도 언급되었다.

- 저희는 (보육사 1명당) 8명, 9명. 심지어는 지적장애 아동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 그 친구들은 사실 선생님들이 정말 일대일 케어해야 될 아이들인데. 이 안에 포함시켜서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 어려움이 참 커요. (…중략…) 전에는 저희 되게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코로나 이후) 계속 힘들죠. 아이들의 액팅아웃이 심한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참여자 3)
- 야간에는 1명이 근무를 해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난다든가, 해열제로는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한 명이 종사하면 응급실을 가기가 너무 힘들니까. 시설장이 온다거나 다른 직원이 출근을 해야 한다든지,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을 보고 한 명이 가야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적어도 2인 1조는 되어야, 외부로 나갈 때 나머지 아이들을 한 종사자가 보호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밤에 그렇게 일이 생겼을 때도 따지고 보면 근무시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야 하죠. (참여자 11)
- 저희가 간호사 선생님이 상담을 좀 많이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원내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으세요. 공주도 가면 왔다 갔다 이동시간만 한 3-4시간을 잡아먹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종합심리검사 받으러) 천안도 가야 하고, 아이들은 많고. 조금 어려움이. 또 간호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면 또 가야하는데, 그러면 생활지도원들이 각 방에 아픈 아이들 데리고 병원으로 나가야 하고. 근데 1일 2교대니까 한 선생님이 나가면, 그 방은 옆방 선생님이 케어를. (참여자 18)

한편,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 30명 이상이 생활하는 양육시설은 임상심리상담원 배치가 법정기준인데, 여전히 임상심리상담원이 부재한 실태가 적지 않

았다. 다양한 사유로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겪었을 트라우마를 이해한다면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고 가정과 관계를 유지·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관련하여, 지역에서 임상심리상담원 채용이 어려운 문제와 함께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아동보호체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일관된 정책 수립과 예산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보여준다.

- 지금 저희 기관 같은 경우 원래 생활복지사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고, 임상심리상담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치가 안 돼 있어요. 대전에는 임상심리상담원이 있는 곳이 극히 드물어요.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구에서도 알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항상 이 인력에 대해서는 후순위예요. (…중략…) 이게 지자체 지방 이양 사업이에요, 아동 복지는. 그러니까 거의 다 100% 대전 시비하고 국비로 이루어지거든요. 시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이 한두푼이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인제 보육사 선생님들의 인력 총원이 최우선이 되고 나머지 인력은 항상 후순위가 되는 거죠. (참여자 5)
- 원래 30명 이상부터 상담사 1명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없고, (지자체에서) 고려해주신다고 했다고 들었어요. (참여자 10)
- 현재 임상심리상담원은 없습니다. 예산 부분 때문에, 사실 전남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7월 1일부터 우리 보육원 선생님들도 52시간제 도입하고 예산확보랑 다 돼서 도입되면서, 이제 저희 임상도 배정받도록 확정은 됐는데, 아시다시피 시골이에요. 임상심리상담원 자격을 갖추신 지원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현재는 아직 미채용 상태인. (참여자 12)
-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저희만 없습니다. 거의 5년째 싸우고 있고요, 내년 말에는 임상심리상담원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참여자 15)
- 올해 초였나 작년 말이었나, 좀 됐어요. 이제 상담 선생님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또 공석이라서, 그 부분도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랑 생활복지사 선생님 둘이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뽑고는 있는데, 이력서를 넣으시는 분들도 확인하면 여기랑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면접하러 왔다 보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참여자 17)

〈시설보호아동의 특성〉

참여자 대부분 시설에 보호조치된 아동 상당수가 학대피해아동이라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경향이며, 이는 아동양육에 어려움이 되는 주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중 ‘학대’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보호조치된 아동의 42.89%가 학대를 사유로 하였다.⁴⁷⁾ ‘미혼부모·혼외자’, ‘부모이혼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호조치가 더 많았던 과거와 달리, 2015년 이후로는 학대피해아동이 가장 많다. 또한,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돌봄과 보호가 제공되기 어려운 문제도 반복하여 언급되었다.

〈표 50〉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4,583	4,125	3,918	4,047	4,120
유기	191	218	235	285	282	321	264	261	320	237	172
미혼부모·혼외자	2,804	2,515	1,989	1,534	1,226	930	855	847	623	464	463
미아	210	81	50	21	13	26	11	12	18	8	11
비행·가출·부랑	772	741	708	512	508	360	314	227	231	473	468
학대	1,037	1,125	1,122	1,117	1,105	1,094	1,532	1,442	1,415	1,484	1,767
부모빈곤·실직	586	418	448	338	308	279	290	223	198	265	181
부모사망	772	536	533	545	450	301	286	279	284	297	279
부모질병	203	154	166	133	65	122	126	87	92	83	74
부모교정시설입소	-	-	-	-	-	-	-	-	-	-	166
부모이혼등	2,015	1,695	1,675	1,535	1,037	1,070	905	747	737	736	539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l2, 접속일 2021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2018). 2020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page=1, 접속일 2021년 12월 10일.

* 원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주: 전체 보호대상아동 발생수 중 '귀가 및 연도자 인도' 사례는 제외함

47) 국가통계포털,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l2, 접속일: 2021년 12월 10일)

- 예전에 입소해 있는 10년 이상 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해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입소했던 아이들이 많다면, 요새는 학대로 해서 입소하면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복귀가 최우선으로 되고 있어요. (참여자 5)
- 얼마 전에 조사를 했을 때 ADHD하고 경계선 지적기능, 뭐 이런 아이들만 단순 계산했을 때 저희가 40%가 넘었던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 정도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중략…) 1~2년 기준으로 학대피해아동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자 6)
- 최근 들어서 학대가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그전에는 보육할 형편이 안 되는 경우, 거의 한부모가 많아가지고. (…중략…) 근데, 폭력이나 그런 가정에서 온 애들은 조금 그런 성향, 난폭행동이나 자기 멋대로 하고 좀 그런 부분이 보이는 애들이 제법 있긴 한 것 같아요. (참여자 9)
- 저희는 대부분 그런 부모하고 아이들을 상대하잖아요. 근데 이 애들은 50살을 산 저희 어른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학대나 어려운 환경,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다 온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참여자 11)
- 거의 7~80% 이상이 학대예요. 가정 내 빈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정말 낮고요, 그니까 이제 생계형 방임에서부터 신체적인 학대, 정서학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참여자 12)
-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60% 넘는 아이들이 ADHD를 앓거나, 경계선 이거나, 그리고 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이 전체 인원의 50%가 넘고요. (참여자 15)
- 지금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과반수 이상이 다 경계선 지능이기 때문에. 한끝 차이로 장애 판정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봐도 재는 장애일 것 같은데 검사를 하면 또 경계선 지능으로 나와서. (참여자 18)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사명/전문성〉

시설보호아동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며, 성인으로서 사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출 때 시설 종사자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종사자들의 사명이 아동보호를 위한 전문성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지원, 노동조건 개선 등으로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종사자들의 욕구를 시사한다.

- 이제 약 먹고 치료받는 애들 이런 경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머슴아들, 아주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밤에 늦게 들어오는데 연락을 썩까거든. (...중략...) 그런데 어떤 삶의 태도가 가치 지향적인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왔을 때는 이 조건과 상관없이 있어요. 이미 아이들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남아요. (참여자 8)
- 제일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아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그러니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말하다가도, “아, 그래, 나는 이 상황에 안 살아봤지” 이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진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활을 했더라면 나도 어쩌면 이럴 수 있겠다. 내가 애를 이해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해요. (참여자 10)

(2) 업무 분담 현황

〈생활시설 특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분담의 어려움〉

생활시설은 24시간 아동의 일상이 지속되는 곳이며, 그에 따라 시설 종사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시간은 시설보호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동보호와 양육의 목적은 이들의 주체성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전 과정으로, 아동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지도와 안내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며, 예측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비하고, 예측 못 한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민감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시설이 제 기능을 하려면, 단순히 아동수와 연령 대비 종사자 수를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별아동과 아동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주양육자와 지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은 최소한 ‘직접적인 돌봄’의 공백을 막는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각각의 시설 종사자가 전문성을 갖고 본연의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로 이어진다. 인력 부족 및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는 곧 근로시간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와도 결부된다.

- 이게 업무분담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가 취사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식사도

준비를 해야 하고, 교육 이런 것들도 해야 해서. 일단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아동보호, (…중략…)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장인 제가 보통 외부 업무들,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든지, 저희는 또 법인이다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들에서 뭔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운영하는 것도 시설장인 제가 보통 하는 편이고, 생활 교사들은 보통 가정 업무에 충실하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분담했어요. 시설장도 공통으로 업무할 때, 상주할 때는 똑같이 밥하고, 애들 하는 것도 보고요. (참여자 1)

- 업무를 분담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정해진 업무들을 처리하고 그거에서 생기는 공백들을 이제 사무실 직원들이 좀 메꿔주는 식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외부로 상담을 나간다거나 외부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해서 일부의 아이들만 선생님들이 데리고 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면 그 빈자리를 이제 사무실 직원들이 채워주는 식으로, 업무는 그런 식으로 분담이 되고 있고요. 양육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그 외의 업무들은, 간호 선생님은 아이들 의료나 간호보건 쪽 파트를 맡아서 하시고, 영양 선생님은 영양 파트에 맡아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자립지원전담 선생님은 자립과 관련된 거하고, 그리고 사업 관련한 것들 이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참여자 6)
- 저는 외부 활동. 그래서 애들 데리고 병원에 가고, 또 시설장으로 해야 되는, 공문 같은 거 시에서 주고받는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계, 그래서 회계 부분은 제가 맡고 있고. 그다음에 한 부분(그룹홈 종사자 1)은 주로 조리하시면서 주방 정리도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하여튼 거기 관계되는 거 하시는 거. 우리 딸(그룹홈 종사자 2)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미처 못하는 행정일, 그 밖의 회계 외의 하는 것은 제 딸이 좀 도와줬고 그랬습니다. (참여자 7)
- 생활지원팀이랑 사무지원팀, 역량지원팀 이렇게 3팀으로 나뉘져 있어요. 생활 지원팀은 말 그대로 아동들 직접적으로 보육하는 담당이 주업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랑 생활복지사랑 사무국장님, 자립전담요원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무지원팀으로 회계, 프로그램, 후원업무 이런 것들, 역량지원팀은 영양사 선생님이랑 조리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중략…)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사무업무만 한다, 그런 건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보완을 해주고 있어요. (참여자 9, 10)
- 업무분담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설장 한 명하고 보육사 두 명이 분담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지금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장 포함해서 나이트가 세 분이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진행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참여자 11)
- 저는 모든 걸 다 총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선임보육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회계업무, 그리고 집안 살림 사는 거를 하고 있고. 저희 그룹홈 같은 경우 자립전담요원이

라는 명칭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만 있다 자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립전담요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보육사 두 번째 선생님한테는 자립전담업무를 맡겼고,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업무를 맡겼고, 상담쌤한테는 상담, 그다음에 보육 업무 같이. 그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죠. (…중략…) 한 선생님은 아침에 8시 반부터 저녁에 5시 반까지, 그다음에 또 한 선생님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또 한 선생님은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겹치게 해갖고, 서로 인수인계하고, 같이 회의할 시간도 있고, 저는 특별한 일, 나갈 일 없으면 지내는 거죠. (참여자 14)

- 보육사의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케어하는데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일반 그냥 가정집에서 엄마가 아이들 챙겨주는 것처럼 똑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분류할 거는 행정적인 업무가 있는데요, 아이들을 관찰했던 보육일지,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학교 상담일지라든지, 학교 업무 처리 그 외에 아이들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육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구요. 그 외에 사무실 행정 인력들이, 행정 인력들은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외에 업무들은 사무실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자 15)

이하는 면접조사에 참여자들의 보고한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인용한 부분이다. 각 직종에 요구되는 업무의 주된 내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시설 여건에 따라 실제적인 업무 내용과 지원업무 범위가 상당히 다른 현실을 알 수 있다.

① 보육사

- 아이들이 상담을 하고 나면은 항상 부모 상담이 같이 이뤄지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부모님이 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보육사 선생님이 직접 가져가지고 이제 상담이 끝나고 부모 상담 대신 상담을 받는 거죠. 상담을 받고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나머지 근무자 선생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그 아이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여덟 명의 아이들을 한 선생님이 보게 되면 이거를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는 하죠. (참여자 5)
- 저희가 총 4개의 생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생활실에 선생님들이 3분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아반하고 애들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8명? 시간대별로 돌아가니까 거의 혼자서. (참여자 9)
- 저희는 총 3개의 집이 있구요. 지금 그 생활실마다 남자 큰 아이들, 남자 작은 아이

들, 여자 아이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 12명의 아이들을 4분이 보고 계시구요. 10명의 작은 아이들은 5분이 보고 계시구요. 여자 생활실 같은 경우에는 1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는 4분의 선생님이 보고 계십니다. (참여자 15)

- 여자 중고등부 하나, 남자 중고등부 하나, 그리고 남자가 인원이 여자들보다는 비례해서 적어가지고 초등부 남자부부터 유치부까지 해서 초등부 6학년까지 해서 한 방. 그리고 여자방은 인원이 조금 그보다 많아서 여자들은 이제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두 방으로 나눠서 이렇게 있거든요. (참여자 17) 기본 9명에서 10명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고요. 방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데, 중고생 남자방이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12명 있거든요. 그런데 또 초등부 남자방도 아기들까지 포함해서 9명이 생활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자 아이들 방은 초등방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6명씩 있어요. (참여자 18)
- 전 이제 보육사니까, 아동 양육하는 거나 아동에 관한 상담일지나 보육을 진행하는, 거의 그런 위주로 아동에 관한 걸 하고요. 또 남자다 보니까 차량업무 그런 것도 좀 하고. 그 외적으로 조금씩 개인적으로 맡고 있는 건 있는데, 아이들 준비물을 담당한다든지. (보호자와) 연락이나 그런 것도 거의 저희가 많이 하죠, 왜냐면 저희가 아동하고 밀접하니까. (참여자 17)
- 자립전담요원 선생님은 아이들 자립 관련된 프로그램 다 진행하고 계시고, 거기에 아무래도 생활지도원들이 아이들이랑 밀접 접촉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담당할 때 항상 생활지도원도 같이 투입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일지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시는 것은 계획하신 선생님들이 하시고, 저희는 중간중간 사진 같은 것 같이 찍어서 전달 드리고, 그때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같은 것은 보육일지 같은 것에 남겨 놓아요. (참여자 18)

② 생활복지사

- 저같은 경우는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에 관련된 지원, 자원연계,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다른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은 후원관련 개발, 이렇게 하시고, 그니까 저희 사무국 같은 경우는 아홉 분의 선생님들이 간호사, 영양사, 안전관리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보육팀은 보육사 선생님들로. 그런 세분화되어 있어서 좋기는 한데, 다 공유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보육사 선생님들도 3교대 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소통에. (참여자 2)
-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보육사들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사 선생님들하고는 저하고는 아무래도 약간 상하관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주로 보고를 받는 편이고 (...중략...) 보육 업무 총괄하고, 후원자 개발이나 후원자 관리, 그리고 기타

이름 붙여지지 않은 여러가지 일들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다른 분들은 영양사, 간호사, 자립, 이런 이름들이 있고, 사무는 또 사무 관련한 회계업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그 외의 것들은 거의 다 제가 맡아서 해야 하는 식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는 상담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것도 저한테 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게 어려울 때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참여자 6)

③ 임상심리상담원

- 일단 상담사라서 원내에서 아동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내 내부적으로 사례관리. 이 아동에게 특별하게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아동들 선정을 해서 사례관리 회의 진행하는 것 제가 하고 있고요. 또 입소하고 난 뒤 초기 적응기간 동안 아동이 변화하는 적응 추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아동 1명 당 회의를 7개월 동안 세 번을 해요. 그런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 시간에 나누면서 이후 개입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퇴소 관련 업무도. (...중략...) 원가정 지원, 원가정 연구자 상담 과정 관련도 제 업무라서 원가정과 계속 소통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원가정의 필요한 어떤 것들을 제공해야 될 때 주로 이제 소통하고 있고요, 외부 심리치료를 또 보내기도 해요. (...중략...) 경찰서 관련된 일도 제가 하고 있고요, 정신과 병원도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보육사 선생님들은 아동을 봐야 하니까, 주로 커버해야 될 것들은 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참여자 3)

④ 간호사(간호조무사)

- 전 아이들 병원 진료 위주로 하고, 아이들 건강 관련해서 진료 파악하고요. 다들 검업,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신건강 아이들 같이 진료 많이 다니고, 상담 연계하고. (...중략...) 이제 방역도 같이 하다 보니까, 소독대장 같은 거 관리해야 하고, 방뿐만 아니라 시설 전체 관리해야 하고. 위생원이 계시니까 하루 한 번씩, 이런 손잡이 다 알코올로 소독하시고 차량도 하시고. (참여자 16)
- 지금 상담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 공백을 생활복지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외부로 인솔할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인솔해주시거든요. 부득이하게 그 선생님들이 없을 때는 저희가 가기도 하는데. (참여자 17)

(3) 업무 관련 교육 및 상담

〈교육 현황 및 경험〉

아동의 사실상 보호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종사자의 경우,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특별히 중요하다. 종사자의 업무 수행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관점이 아동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동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투자, 인식증진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는 국제사회가 반복하여 강조한 원칙이다(UNGA, 2019; UNGA, 2010).⁴⁸⁾ 「아동복지법」도 지자체장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제55조), 보건복지부 지침은 지자체가 교육비와 여비 등을 사업예산으로 확보하여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을 안내한다. 시설은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반드시 아동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학대 예방, 아동권리교육, ADHD 약물 오남용 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조사 결과, 대부분 시설은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수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외에 지자체가 기획·실시하는 교육 경험은 거의 없었으며, 코로나19 이후 교육기회가 상당히 축소된 실태도 알 수 있었다.

- 일단은 지자체나 나라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없고, 개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해주죠, 교육비나 그런 것들. (참여자 1)
- 생활복지사 직무교육도 있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도 있고, 그런데 이것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잖아요. 그 효과도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 교육은 업무에 도움이 그렇게 딱히... 애들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커리큘럼이 좀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받는 교육은, 그런 정해진 교육(4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참여자 4)
- 필요한 교육같은 게 있으면 지원을 해주거든요. 시설 자체에서 뭐든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못 받으신 2년. 그니까 지금 의무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만 간간히 듣고. (참여자 9)
-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은 거의 없고, 그리고 2년 전부터 이제 전무한 상황이고. 대면

48) A/74/136, para. 104; A/RES/64/142, para. 129.

이 안 되니까 주로 중앙의 그룹홈협의회, 저희 부산에는 그룹홈협회 그다음에 유일하게 서울하고 부산만 그룹홈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지원센터에서 지금 아이들 인권 교육을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참여자 14)

참여자들은 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정환경을 벗어나 시설에 보호조치된 아동의 상황을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 일단은 직원들이 학대 아동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없고, 저희가 이제 근무형태도 바뀌고 하면서 신입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선생님들도 경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받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몰라서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참여자 6)
- 사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애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아동심리 이쪽으로 교육을 듣잖아요. 그런 쪽으로 들었을 때는 이제 도움이 조금 되죠. 이 상황에서 “아, 애들이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하고 애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지식을 쌓는 그런 교육이라기보다는 애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9)
- 경계선 같은 경우나 지적장애 판정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지도사”라는 교육이 있어요. 그거를 전 직원이 필수로 듣고 있습니다. (참여자 15)

〈교육 참여의 어려움〉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시설 내 경향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사실상 교육이 업무부담이 되고, 필수 의무교육 중심으로 시간을 채우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시설의 특성과 종사자의 직무에 따른 전문화된 교육을 적극적으로 찾아 수강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육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휴가나 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거나, 사실상 상담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관련 교육을 듣고자 하였으나 참여자의 역량에 적합한 단계별 교육이 다양하게 제공되지 않았던 경험도 보고되었다.

- 교육은 아무래도 저희가 의무 교육하는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해마다 해야 하는 직원교육,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지고요. 그리고 그 외 교육들은 선생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7월 이전에는 2교대, 그 이후에는 3교대 일하다 보니까, 교육 시간들에 대체 복무가 없다 보니 쉬는 날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참여자 6)
- 인권교육이나 외부교육을 받으려 할 때 근무자가 보시다시피 세 명이다 보니까, 시설장 제외하고는 두 분이 교대근무를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아이들을 봐야 되고, 한 분이 교육을 받아야 되죠. 두 분이 같이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달 교육을 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달 교육도 할 시간도 없고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두가 이렇게 한꺼번에, 시설장, 보육사 두 명, 그 교육에 참가한다는 것은 자체가 힘들고 불가능한 그런 일이 되겠죠. (참여자 11)
- 업무와 관련된 법정 의무교육이 10개에서 12개 정도 돼요. 저희같은 경우는 10개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반 정도는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아동학대 교육이나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48시간 근무하시고 48시간 퇴근을 하시려고 하다보니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참여자 15)
- 충남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하는, 임상선생님들한테 하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교육이 임상 선생님들 위주의, 전문적인 교육이에요. 저는 이전에 처음 생겼을 때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끼기 어렵더라고요. 가면 좀, 너무 뭔가, 그니까 저의 업무는 아닌데 거기에 끼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확실히 내가 뭔가 소외되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참여자 16)

〈직원의 고충처리와 상담〉

권리의 선순환은 누군가의 권리 박탈이나 침해를 당연히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삶의 질 보장에 필요한 사회구조와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시설 종사자의 권리 보장은 곧 시설보호아동의 권리보장으로 이어진다. 이에 직원복지의 관점에서 고충처리 절차와 업무소진과 관련된 상담이 가능한지 질의하였고, 참여자 대부분 업무 환경과 관련된 소통은 원활히 되는 편이며 관련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서 안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쉽게는 상담사 선생님을 통해서 국장님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원장님하고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2)

- 개인시설에서 회의 구조라든지 이런 게 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세 사람이 앉 아 갖고 회의가 제대로 되겠냐. 또 이게 시설장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주는 게 되지, 소통과 회의가 정상적으로 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나(시설장) 는 들어요. (참여자 8)
- 종사자 고충 처리를 따로 운영하고 있구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문자로 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써서 주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 편리한 방법으로 하고 있구요. 고 충 처리건에 대해서 소통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피드백을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건의한 것 중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내부 회의를 거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5)

2) 아동의 원가정 보호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과 발달과 웰빙을 위한 본질적인 환경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본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전문).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원가정이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는 아동의 권 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대안양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⁴⁹⁾ 시설양육은 아동 최상 의 이익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⁵⁰⁾ 고려되어야 한다(UNGA, 2010;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따라서 모든 대안양육은 일시대리보호로서 아동의 원가정 보호와 회 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노혜련·김미원·조소연, 2015). 이하에서는 아동의 원가정 보호와 관련된 시설의 역할과 한계, 어려움을 파악하여, 시설 종사자에게 필요한 인 권교육의 주요 내용을 도출하며, 아동권리기반 접근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1) 출생등록 및 부모를 알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 현황〉

태어난 즉시 출생이 등록되고, 가능한 한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아동의 권리는

49) A/RES/64/142, para. 5.

50) A/RES/64/142, paras. 21-23.

아동의 원가정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설명한다(아동권리협약 제7조). 정체성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이며,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보장받아야 한다.⁵¹⁾

그러나 참여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여 계속하여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남아있는 아이도 있었고,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혼외자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을 가능성을 말한 참여자도 있었다.

- 부모가 아예 안 계시면 저희 원장님 밑으로 할 수 있는데, 부모님 계시면 저희가 함부로 못하니까. 혼인관계에서 다른 자식이 한 명 있는데 그 분이랑 이혼절차를 밟고 계셨고, 그 도중에 사실혼 관계의 남자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엄마 형편상 애를 둘이나 자기 밑으로 넣어서 키울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빠는 연락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출생신고가 제일 기본인데, 그런 것보다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애를 자기 밑으로 넣었다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도저히 못한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방법을 찾아낸 게 검사님이 직권으로 하실 수 있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한테 아동학대로 소송 걸고, 그런 걸로 기간도 제법 좀 길었어요. (참여자 10)
- 지금 현재에도 한 명,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지원을 받는 아이가 있어요. 처음에 어머니하고 연락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출생신고에 자기가 동참을 하겠다고 하시고 사라지셨죠. 이제 경기도의 어디에 있는 것이 나중에 경찰서랑 다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확인이 돼서 연락을 했더니 내려와서 호적 정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러다가 어머니가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시고, 연락도 안 되고 계속 이런 형태가 돼버렸어요. 이 아이가 내년엔 어린이집 갈 연령인데 최소한 어린이집 가기 전에는 호적정리가 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죠, 유전자 검사랑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진행을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인제 호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많이 밀려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구요. (...중략...) 좀 복잡한 케이스인데요,

51)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1항), 부모가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때 그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 우연히 출생미신고 아동이 발견된 경우, 검사 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일선 행정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동법 제46조 제4항).

어머니가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이혼했을 때부터 360일인가 며칠 내에 태어나면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남편은 이분이 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지 모르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런 사정들이 밝혀지니까 어머니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참여자 12)

-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친부가 아닌데 하셔서. 그때 한 번 저희 원으로 어떤 아이의 고모가 찾아오셨는데, 이 아이가 자기 남동생의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그 법적 아버님이랑 부모님이랑 검사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3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엄마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하려니까 자기랑 이혼이 안 돼 있고, 그런데 그 남자랑 헤어졌으니까, 자기랑 아직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자기 밑으로 했다고. 그거를 이제 정정을 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랑 이렇게 검사관이 오셔서 (검사)하고 가셨거든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미취학이다 보니까, 아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저희가 땄 수가 없거든요. 어머니랑 연락이 또 안 되니까. (참여자 16)

〈기아 출생등록과 지자체의 역할〉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사유 등으로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기아인 경우 시·읍·면의 장이 성·본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가족관계등록법 제52조). 참여자 12는 최초로 아동을 인지한 지자체가 성·본창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까지 완료한 사례를 보고하였는데 참고할 만하다. 한편, 참여자 15는 아동이 기아로 입소·의뢰된 경우에도 실종신고 등으로 부모를 찾고자 노력한다고 말하였는데, 보호대상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시설의 역할과 더불어 아동보호체계의 궁극적 책임자로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의무이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2015년도에 베이비박스에서 왔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출생한 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그래서 네 명의 아이들이 군포에 있는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저희 원에 왔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포시에 우리 아동 담당 주사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도 카톡을 주고받고 하는데 저희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호적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영암에 가서 호적 진입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쭙보셔서 저희가 그쪽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들을 호적 정리를 군포시에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그런 부분도 조금 수월하게. (…중략…) 이제 사실은 저희한테 입소가 결정됐으니까 출생신고도 저희가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다 이어서. 이게 어쨌든 군포시에서 발생한 아이들이니까 우리들의 업무로 보고 마무리해서 시설에 도움을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해주신거죠. (참여자 12)

- 기아 발생으로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이 5명 정도 돼요. 베이비박스도 아닌데요, 아이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영아원에서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구요. 저희가 이 아이들의 부모님을 찾고자 유전자검사 의뢰해냈고, 실종신고 등록해냈고, 뭔가 일치되는 게 있으면 찾으려고는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자 15)

〈가족관계등록 체계와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한편, 아동복지시설은 공공을 대리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주체로서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고 그에 대처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종사자의 역할에 어려움이 없도록 증개와 지원을 해야 한다. 출생등록 이슈는 아동의 신상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출생미등록 상황은 물론 공부상의 변동은 지자체를 통해 시설에 전달되고 빠르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변동사항이 시설에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던 경우 등 아동복지시설은 가족관계등록 절차와 관련한 소통과 정보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서 발급을 받으려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죠. 중학교 입학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다 보니 그때 저희도 처음으로 인지를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서 주민센터에 알아보았더니 주민센터에서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처음에 등록을 했던 등록기준지에다가 전화를 하고 했는데… 뭐라고 하지? 법원에서 강제로 취소를 시켰나. 몇 년이 훨씬 지나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구청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등록기준지 (법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중략…) 법원에서 이제 판결문이 나왔던 거를 법원 쪽에서 찾고 어떻게 하면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됐다고 저희에게는 통보가 와서, 저희는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됐다는 것만 확인을 한 거고, 그런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참여자 5)
-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대다수는 등록기준지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은 자기네가 누락이 된 거기 때문에 등록 거의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앞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뤄진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복잡했던 거

조. 또는 주민등록만 창설이 돼서 주민등록등본까지만 나오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안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참여자 5)

-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이 친구의 입소 배경이 입양을 갔다가 파양이 돼서 온 아이였는데, 파양 절차 중에 양부모님이 “내 친자가 아니다”해서 법원에다가 친자부존재 소송인가를 하셔가지고. (시설에) 놀러오셨다가, 아이한테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아가셔서 검사해서 친자가 아님을 확인해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이 아이한테 통보가 온 게 아니라 어느 날 애가 병원을 갔더니 주민번호가 사라진 거예요. 저희가 이 상황을 파악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후에 기존에 쓰던 주민번호를 살려놓고, 새로운 가족관계창설? 성분창설?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략…) 4살 때 여기 왔는데, 서류상 정리를 안 하고 계시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서류 정리를 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참여자 15)

(2) 원가정 보호에 대한 시설의 역할과 어려움

〈원가정에 대한 인식〉

202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의 대안양육을 주제로 개최한 일반토론의 날 (Day of General Discussion: DGD)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은 “개인 기록 (personal records)에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자들에게 자신의 배경에 관한 진실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Butler, K., Currie, V., Reid, K., & Wright, L., 2021).⁵²⁾ “모든 아동은 원가족 교류를 원한다”는 참여자의 발언은 아동과 원가정의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회복을 조력하도록 대안양육이 운영될 필요를 내포한다. 실제로 아동이 가정과 단절된 상황에서 혼란과 상실감이 커진 경우에도,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위안이 되는 사례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다만, 유기 등의 사유로 원가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들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시설의 역할은 종사자들의 어려움 중 하나였다.

52) 2021년 제출된 아동참여 보고서(Report of children's consultations “Make our Voices”)는 전 세계의 5-25세 아동·청소년 1,188명이 참여한 국제조사 결과로서, 대안양육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한 문서이다. (출처: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Discussions/2020/DGD_Report_EN.pdf)

- 애가 이제 나는 왜 없나 이게 근원이잖아요, 뿌리찾기가. 찾아가는 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가지구 그 베이비시터⁵³⁾ 하는 분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하니까 안 바뀌었더라고. 이름은 남겨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SNS를 뒤졌조, 막 뒤지면서 일 일이 보고. 근데 알겠더라. 본 적은 없는데 이 사람이 맞겠더라고. 그랬는데 딱 잡아떼요. 그래서 아니시라면 제가 경찰에 아버지를 찾는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랬더니만 그다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고,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다, 나는 왜 엄마아빠가 없나 그걸로 지금 심각하다, 그렇게 오게 만들어 가지고 두 번 만났어요. (...중략...) 얼마 전에 한 번 통화는 했거든요. 이제 딱 애들은 부모 만나러 가고 이러니까 심술을 내길래 애 있는 데서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은 거야, 아빠가. 그래서 내가 상황을 좀 얘기를 하면서 "지금 000가 심술이 나 있으니까 아빠 통화 한번 하세요" 하고 지원을 하니까 얼떨결에 통화를 했어요. (참여자 8)
- 한 아이는 중3때 만취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들여다보면 속마음을 두드리니까, 갑자기 이제 울더니만 엄마 이름도 모르고 어릴 때 엄마랑 살았던 그 동네를 헤매고 이랬는가 봐요. 아빠가 연락이 끊기고 이러면서 이제 부모들도 연락 끊고 단절될 때가 중간중간에 많거든요. "엄마는 도대체 왜 나를 낳았을까" 이런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우리 엄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그때도 애 엄마를 찾았거든요. 전화번호를 안 바꾸고 계시더라. 아빠가 못 만나게 했고 엄마는 재혼을 해서 애가 둘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엄마는 또 보니까 이 큰 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애가 너무 흐트러져 있으니 걱정이 되서 애를 좀 쪼아 붙이고 이러니까 또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또 이거를 그 엄마 상담도 해야 되고. (참여자 8)
-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원가정 복귀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원가정 복귀하는 걸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자 11)
- 원가족 교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원해요, 부모님이 있건 없건. (참여자 15)
- 원가정과 활발한 교류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나도 엄마도 있고 아빠 있는데, 약간 동경. 실제로 전화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안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연락이 좀 안 되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리움.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셨어요. "데리러 올게, 언제 집에 가자, 6학년 때 집에 가자, 중학교 되기 전에 집에 데려갈게", 아이들은 항상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모님들은 연락이 안 되고. (참여자 16)

53) 대상 아동이 참여자 8이 운영하는 시설에 보호조치 되기 전, 부가 잠적하기 전까지 부의 의뢰로 아동을 돌보던 사람이었다.

- 연락이 됐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애초부터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이 있어도, 보편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아이들이 여기 남아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자체로도 연락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은 “너는 그래도 네 엄마니까 연락을 해라. 그거는 엄마가 새로운 가정을 꾸린 거지, 너는 그래도 엄마니까 네가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해라”고 했는데, 근데 개입장에서는 거기도 아이가 두 명 있으니까 저기할 것 같아서 연락 안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여자 17)

참여자 대부분 원가정의 중요성을 말하였으나,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보호자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아동보호와 양육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설명에 비추어, 원가정 보호가 반드시 원가정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동의 주거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앞서, 원가정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동과 가족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긍정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 시설보다, 저는 원가정이 회복되어야지, 아이들이 돌아가야지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설을 더 지원한다고 할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게끔 더 지원하니까, 원가 순서가 바뀐. 그냥 원가정이 회복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다음에 아이를 복귀시켜야 될 그런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여기에서 더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나. (...중략...) 원가족 지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그 가정이 잘 이루어져야지 아이들도 그 안에서 커야죠. 여기에서 아무리 잘 양육을 해도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는 없거든요. (참여자 2)
- 원가정 복귀가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아이가 가장 위안을 얻는 것은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것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가정 복귀가 좋은데, 한편으로는 원가정을 지키지 못할 거면 아예 그냥 분리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왔다갔다 하면서 아이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세요. “이때 되면 데리고 갈게”, 그게 아이들이 심적으로 버려졌다는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문제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 상담이라든지 약물치료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참여자 18)

참여자들이 강조한 부모교육이나 상담의 필요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부모는 아동권리 보장의 일차적 의무이행자이며, 보호자의 의무이행을 지탱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책무이다(아동권리협약 제19조). 유엔총회가 채택한 대안양육 지침은 “가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는 부모교육과 강좌,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와 갈등해결 기술에 대한 홍보, 취업 및 소득창출 기회제공, 필요한 경우 사회지원과 같은 ‘가족간화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UNGA, 2010),⁵⁴⁾ 자녀를 중심에 둔 부모의 변화를 도모하는 공적인 개입과 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 저희는 보호자 상담을 연결해주고 싶어요. 저희 자원을 다 지불해서라도,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마련을 하고 싶어요. 거의 대부분 학대로 온다든지,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분들도 많고. 하루 이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업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생기고… 참여율 자체가 저조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운영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참여자 5)
-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부모님이 안 데리고 갔으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원가정 복귀가 최종 그거긴 한데, 저희는 계속 여기서 잘 있다가 사회에 자립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뭐 시설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니까 애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 미칠 부모님들이 더 많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 이렇게 상대하고 봤을 때, 아이가 과연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참여자 10)
- 부모님들이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연락하기도 힘들고, 연락해서 진행하기에도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협조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자체에서 맡긴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좀 해서 나중에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실 거면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공문 같은 것도 보내주고 해서 저희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11)
- 저희는 사실 언젠가는 아이들이 시설에서 영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정복귀가 목표로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알코올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정들 같은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하고 또다시 원가정으로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54) A/RES/64/142, para. 34.

사실상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참여자 12)

- 이렇게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원가정에 복귀해야 하고 사회에도 나가야 하면 어떻게든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 부모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강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히 좋아질 일은 없거든요. (참여자 13)
- 지자체가 시설에 개입을 좀 하셔서 아이들 상황을 먼저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연고자들 상대를 지자체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이라든지, 가정환경 조사라든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들에 개입을 해주시면 저희 시설에서도 협조가 가능하거든요. (참여자 15)
- 이런데 들어오면 억지로라도 부모님들도 조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계속 상담을 받게 하고, 그래야지 조금 변화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해도 너무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상담 이런 것도 받고. 제가 알기로는 강제성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상담 받고 하는 게. (...중략...) 어쩔 때는 연락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려도 안 바뀌어요. 부모님들이 안 바뀌세요. 그 친구는 만약에 그렇게 들으면 “나 언제 간대. 나 엄마아빠가 뭐 해준대” 이것들 다른 애들한테 말하게 되고, 그 영향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미치고. 부모가 있지만 연락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안 되는 애들은 그것으로 인해 또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참여자 18)

〈원가정 보호에 대한 교육〉

2020년에는 아동보호체계가 전면개편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와 원가정 복귀지원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관계부처 합동, 2019). 이에 따라 지침과 매뉴얼(연도별 아동분야 사업안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등)이 발간·배포되고 관련 교육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아동과 그 가족, 시설과 지자체로 연계되는 각 이해관계자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짐작된다. 원가정 보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자신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종사자의 욕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원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히 최고의, 그 이상적인 거죠. 최고 이상적인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갖고 있는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상황에서 그 아픈 상처를 자꾸만 덧나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략...) 원가족에 어떤 문제

가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가족과의 어떤 교류를 자꾸만 하라고 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마음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립심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됐고, 아이가 가고 싶을 때, '제가 이제 부모님 만나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 이렇게 표현했을 때 가는 거는 괜찮은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는 자꾸 원가족 복귀, 원가족 교류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상처에 대한 부분은. 이 아이가 상처를 어디까지 갖고 있고 어디까지 치유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좀 인식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상담이 있는 후에 원가족으로 어떤 교류나 또 연락이나 어떤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족 복귀가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이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 교육이나, 혹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되고 더 심도 있게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여자 4)

- 아무래도 원가정 복귀 관련해서는 말고 계신, 퇴소하고 이런 거 말고 계시는 선생님이 그 업무 같은 거 보고 매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책자 나오잖아요. 그 안에 새로 변경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안내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담당 선생님이 거의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해요. (참여자 10)
- 원가정 복귀에 관련된 정보는 자립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고 그룹홈협의회 매뉴얼에 원가정 복귀 관련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얻어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업무 분담하는 것 중에서도 원가정에 관한 부분만 업무가 포함돼있어요. (참여자 11)
-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16)

〈원가정 보호와 관련된 시설의 역할〉

대부분 시설에서 아동의 원가정에 최소한 1~2차례 정기적인 연락을 취하고, 명절이나 방학, 생일 등에 가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아동에 관한 변화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수시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시설 내부규정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동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종사자가 아동에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호자와 소통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아동의 외출과 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며 아동의 가족 교류는 더욱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아동의 원가정 보호는 물론 아동의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면접조사 전 과정에서 알 수 있다. 모든 아동이 그 권리 보장에 차별이 없도록, 아동보호체계가 어떻게 역할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 아이는 본인이 그 싫어해서, 부모님이 몇 번 찾아오고, 명절 때마다 오셔서 데리고 가고 그랬었는데, 본인이 워낙 그 원가정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안 가고, 또 졸업식이나 그럴 때 부모님이 오셨었는데도 부모님하고 밥 먹으려도 안 가고 본체만체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또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연락을 서로가 두절하고 살다시피. 제가 연락을 해도 그 아빠가 인제 잘 받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상황이 됐거든요. 아이가 워낙 가정에서 상처를 가지고 입소를 하다 보니까, 그 상처적인 부분이 좀 치유가 안 됐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서 자기는 안 보고 살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힘들고. 나머지 아이들은 집에 가기도 하고, 명절이나 아니면 어떨 때는 주말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여자 4)
-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다 가족들에게 왕래하고 교류를 하는데 이 친구는 한 번도 안 와서 위축되거나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독려를 해요. “아버님 이래이래해서 한번 꼭 잠깐이라도 면회라도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연락을 드리는데 사실상 “시간을 내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하시지만 그런 분들은 좀 오지 않으세요. (...중략...) 누가 꼭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나 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담당 보육사 선생님들은 그 본인들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보호자들과 수시로 통화를 하시면서 하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중계 교류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수시로 핸드폰으로 전화하셔요. 아이들 계속 궁금해하고 하시면 저희는 이제 또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계속 보내드리는 편이고요. (참여자 12)
- 저희 OOOOO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시설에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최종 목적이어서 원가정 교류는 저희도 신경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우선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설, 추석 그리고 여름방학·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집에 가서 2박 3일씩, 그리고 부모님이 여건이 가능하다면 그 이상도 집에 가지내다 올 수 있게 하고 있었구요. 아이들 생일, 가족행사 이런 거 있을 때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었어요, 당일 외출 개념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가지고 운영되고 있구요. 올해 기준으로는 5월달부터 계속 4단계였어서 아이들과 부모님하고 영상통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정의 달 때는 아이들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거나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할아버지, 이모님, 고모님, 이렇게 연고자가 있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자 15)
- 주기적으로 이제는 1년에 한두 번씩. 저희가 또 아동 불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그 외에는 이제 특별한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연락하고. (참여자 17)

- 저희가 주기적으로 연 2회 정도는 꼭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안내하고 있고요. 상담일지에도 꼭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침이라 모든 시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연 1회는 꼭 부모님과 연락을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소통해라” 했는데 연 1회만 하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 시설은 연 2회로 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 아이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애가 혹시라도 어디가 아프다든가, 이런 특이사항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그런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잘못했을 때 전화하는 게 조금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참여자 18)

한편, 아동학대로 시설에 보호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원가정에 연락한다고 밝힌 참여자가 있었는데,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가 지자체 아동보호팀으로 개편된 지금에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모든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보호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부모와 분리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모두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동조 제3항)는 원칙에 따라, 원가정 교류는 아동의 의견청취와 함께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판단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 대부분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기보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연락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연을 달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저희 쪽에 입소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랑 만난 적은 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아이만 받은 거죠. 그렇게 한 경우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것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연락하게끔 요청을 하죠. (참여자 1)
- 학대 아이들의 그 트라우마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우울할 겁니다. 그 부모들은 원하지만, 아이들이 연락 자체를 오는 것도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아이는 잘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고등학교 진학을 했고, 대학 수시접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교류를 하고

있죠. (참여자 14)

- 아동학대로 들어온 케이스들 중에서도 방임으로 분류된 케이스는 조금 나은 편인데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수위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은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법적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는 교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5)

국제인권규범이 거듭 강조하듯, 아동의 원가정 보호에 대한 궁극적 의무이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시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공을 조력하여 아동의 권리보장을 도모하며, 시설이 최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공유와 원가정 지원을 포함해 아동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전달체계 등 제반 환경을 마련해야 할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아동보호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한다면, 부득이하게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아동과 가족의 끈이 놓여지지 않도록 개별지원 계획과 촘촘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즉, 지자체의 역할은 아동보호를 명목으로 한 ‘분리’와 ‘시설배치’가 아니라, 아동이 기존의 일상을 최대한 유지하며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보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형태로 발현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제한적인 역할과 지역격차 등 참여자들이 밝힌 아쉬움은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 확보와 더불어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 (군청에) 자립지원팀이 하나 생겨서 지원을 하는데, 원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상담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건 없죠. 그냥 원가족에 대한 어떤 부분은 다 원에서, 이렇게 시설에서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제가 인제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면 가끔가다 푸념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뭐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듣기만 하죠. (참여자 4)
- 부모님하고 교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입소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님하고 아이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괴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부모님들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것들은 인제 선생님들에게 전해주게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중략...) 아무래도 저희가 인제 부모님 사정이나 이런 것도 알고,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서 도와드리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냥 전달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들도 좀 꺼려하시기도 하고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본인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100% 다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

거든요. 원가정도 원가정대로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아이들이 돌아갔을 때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참여자 6)

- 저희가 주로 군청에 아이들 관련 정보를 요청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 지역이 좀 좁다 보니까요, 최근에 긴급으로 들어왔던 아이가, 입소해서 봤더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같은 학교에 같은 반 친구가 대상이어서, 상당히 빨리 파악했던. 사실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거는 굉장히 좀 길잡아요. 근데 저희들은 학교하고 연계가 좀 잘 되어 있어서 학교 상담선생님이라든지 학생부장 선생님 통해서, 학교에서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게 되고, 또 학교하고 연계해서 아이들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참여자 12)
- 지자체는 없습니다. 지자체는 지원이 없고,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는 있어요. 어린이재단, 그리고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한국아동복지협회. 그래서 원가죽 교류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예산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공모 사업들이. (…중략…) 그 전에 서울에 근무했을 때는 지원체계가 좀 많더라고요. (참여자 15)

〈원가정 복귀에 대한 시설의 역할〉

시설 종사자는 아동을 직접 대면하며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고, 이들의 원가정에 대한 감정과 어려움도 민감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에 「아동복지법」은 친권자 등이 지자체장에게 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만 18세 연령 초과 전 보호종료로 원가정에 복귀한 경우)가 보호대상 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복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16조 제3항, 제2항).⁵⁵⁾ 실제로 참여자들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아동의 가정복귀와 관련된 나름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며, 다만 그 의견이 충분한 비중을 두고 고려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동학대행위자(부모)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복귀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아 아동에게 추가적인 상처가 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아동은 물론 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55) 아동의 보호조치 종결 여부는 관련 기관과의 사례회의, 종결심사서, 가정복귀점검표, 아동 가정복귀 의견서(학대아동의 경우 가정복귀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보건복지부, 2021d). 다만, 보호자의 성품·행실이 불량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우려,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또는 감염병 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복귀를 시키지 않으며, 이는 양육상황점검표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여부를 확인한다(보건복지부, 2021a).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여, 최대한 원가정 복귀가 실현 가능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개시될 필요를 제안한 참여자도 있었다.

- (지자체는) 의견으로 쓰면 그냥 참고하겠다고만 하긴 했어요, 결정은 심의위에서 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원가정 복귀에) 반대를 하면 분명히 그것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그쪽에서 지신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실대로 그냥 적었죠. 이거를 소극적, 적극적이라 하기는 애매하긴 한데, 저희 참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이후에 어떻게 이 아이 인생에 영향을 미칠지. 그래도 원가정 복귀시키고 싶었거든요. 엄마랑 할머니가 너무 사랑해주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약간의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거 같아요. (참여자 3)
- 아동의 의견은 거의 백 프로 반영이 된다고 보고요. 저희한테는 의견을 구하시기는 하는데 가정복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에 의견을 물어보시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했던 적은 있었어요. (...중략...) 근데 이게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이전에 저희의 의견을 청취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게, 가정복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이도 부모도 이미 가정을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귀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회의를 봤을 때 “이런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정복귀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게 더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의견이 진행되면 기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못 가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아이와 부모는 그런 거에서 오는 실망감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한테 의견을 더 물어봐 주시고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참여자 6)
- 작년에 8월에 한 아동이 복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의견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또 구청의 담당자 의견이 반영되고, 서류상으로는 시설장의 의견도 반영됩니다. 이런 서류를 구비해서 반영을 해나가는데 이 부모는 그 아이의 양육을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가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설장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는, 아이가 원하지 않고 부모도 힘들어하는데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도 저희들 의견은 배제됐어요. 그리고 바로 복귀가 되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어머니가 데려갔는데, 다시 기관으로 재입소를 한 번 의뢰를 했었어요. (참여자 11)
- 아이들 의견 중에 가장 많은 의견은 “엄마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예요, 한쪽으로 가고싶다가 아니라. 네, 그런 의견이 가장 많은데, 사실 상황상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은 편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구요. 아이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얘기하고, 심의위원회할 때 저희가 의견서라는 걸 내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기재해서 아이들 의견을 대변하고는 있는데 그것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여자 15)

- 저는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호자 의견이 거의 주였어요. (참여자 16)

〈원가정 복귀 이후 시설의 역할〉

2020년 12월 19일 개정되고,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자체장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 복귀 후 1주일 이내에 유선 연락과 가정방문, 1개월 이내 2회 이상 모니터링(1회 가정방문 필수), 6개월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해 1년간 4회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이때,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의 보호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후관리를 이행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d).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 초과로 보호종료되어 자립지원 대상이 된 경우 외에 지자체와 시설이 협의하여 아동의 가정복귀 이후 사후관리를 지원한 경험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아동과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도 시설 또는 종사자의 선의나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때에도 보호자가 시설과 연락을 원치 않으면 더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시되었다.

- 저희는 정기적으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있고. 카톡이나 뭐든 연락을 통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 몇 년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아이의 상태도 보고 싶지만, 약속을 잡아놨다가 일방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캔슬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여자 11)
- 지자체장이 결정을 해서 원가정 복귀 승인이 나면 저희는 보내고 난 뒤에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곤 하는데, 그 부모들이 원가정 복귀하고 난 뒤에 저희가 계속 아이들하고 통화하는 걸 원치 않아요. (참여자 14)
-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으로 분류되는데요. 원가정 복귀한 친구들은 중간퇴소, 만기퇴소, 연장퇴소가 있는데, 원가정 복귀한 아이들은

중간퇴소로 분류가 돼서 보육원에서 따로 사후관리는 하고 있진 않아요. 만기퇴소나 연장퇴소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쪽 원에서 하고 있는데, 원가정으로 간 이후에는 저희가 도의적으로는 3개월 정도, 아이들 잘 지내고 있는지 월 1회 정도는 연락드려서 모니터링은 하는데 그 외에는 특별하게는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참여자 15)

- 그렇진 않아요. 복귀하고 나서 그냥 따로 뭐 저희가 뭐 관여하는 건. (참여자 17)
- 중도퇴소한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그런 건 없고, 만기퇴소한 애들은 5년간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애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하고, 퇴소자 애들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런 거 연계해주고. 자립전담요원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하시고, 이제 오래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자기가 케어하던 아동이 나가면 그냥 간간히 안부연락 하고. (참여자 18)

관련하여, 참여자 12는 지자체와 효과적으로 협력했던 사례를 보고하였다. 특히 시설 종사자는 아동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전달하는 등 사회적 지지자가 되었는데, 생활시설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맺은 아동과의 관계가 의미있게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 최근에 퇴소했던 작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연로하셔요. 그리고 광주에서 부산까지 야간에 큰 트럭의 화물 트럭을 운전하시는 이런 분이셔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아이에 대한 애정도 있고, 양육하고 싶은 의지도 강하고, 자기 혈육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강하신 분이었는데 아이가 6살 때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는 본인이 직업상 양육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시설에다가 오히려 본인이 맡기시고 부탁하고 왕래를 주도하시고 이려셨는데,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를 광주로 진학을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냈다고. 아파트도 몇 평짜리 아이 방도 다 준비해놓고 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서 구청에 가서 그쪽에 관리하실 분들을 좀 연계를 해달라고 가정조사하고 하고, 이분의 직업적인 부분들도 다 조사를 해서. (...중략...)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고, 퇴소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립 담당 선생님이 다 안내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또 만나도 살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여자 12)

〈시설보호 결정과 형제·자매, 남매의 배치〉

국내에서는 지침에 따라 남매가 시설에 배치되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양육시설의 같은 숙소 또는 같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한 건물 내에서 방을 달리 두는 형태이며, 공동생활가정은 2020년부터 남녀분리형으로만 운영되지만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같은 공동생활가정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별이 같은 형제·자매의 시설보호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없다(보건복지부, 2021a; 보건복지부, 2019).

조사 결과, 아동양육시설에 배치된 남매의 경우 5세 전까지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게 하는 시설도 있었으며, 형제·자매는 가능한 한 방에 배정하려고 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아동의 연령대와 인원수, 아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할 때도 있다고 답했다. 공동생활가정은 성별을 기준으로 시설 자체가 나뉘어 있어 대부분 분리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참여자 모두 형제·자매와 남매가 서로 다른 시설에 배치되거나 다른 방에서 생활하는 때에도 최대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시설의 외부인 출입이나 타시설 방문이 현저히 어려운 문제, 거리가 먼 시설일 경우 종사자가 동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어려움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아동양육시설은 인원수 대비 종사자 수를 확보해야 하고, 그룹홈은 8인 미만의 시설로 운영되는 결과, 아동이 시차를 두고 입소하였을 때 같은 시설에 수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으며, 보호자의 요청으로 다른 시설에 배치되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 저희가 보통 남매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서로 의지도 되고, 또 자기네끼리 알게 모르게 서로가 지켜주는, 그럼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니까. 형제간에 어떤 우애 같은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가끔가다 (다른 시설에 있는 남매를) 만나게 해주긴 하지만, 그렇게 보는 거야 만나면 서먹서먹하죠, 오랜만에 보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남매를 나누게 하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고 안타까운 현상 같아요. (참여자 4)
- 남매같은 경우는 나뉘어서 생활하고 있어요. (성별이 같은 경우는) 아이 특성도 있지만, 나이차이라는 것도 좀 있기는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남매가 둘이 들어왔다, 근데 이미 한 집은 일곱 명이 생활하고 한 집은 여섯 명이 생활하고 아니면 둘 다 일곱이 생활한다고 하면은, 한 집에 분명히 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집에만 너무 많은 아이들이 치중이 되고, 그러면 선생님도 소진도 빨리

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도 나누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은 중학생이고 한 명은 초등학생 저학년이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집이 분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나이대가 비슷하다면은 가능한 다 한집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은 하고는 있어요. (참여자 5)

- 이게 (학대피해로) 한 명이 처음에 입소했을 때 저희 인원이 다 차거나 하면은 그다음에 입소를 해야 되는 형제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들은 거의 같이 오는데, 이렇게 따로 시차를 두고 들어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중략...) 부모의 요청으로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집에 가까운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아이는 여기 있고 저 아이는 다른 데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참여자 6)
- 5세 미만의 연령일 때 남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이들이 적응하고 그래야 돼서 남자아이여도 여자 홈에서 같이 양육을 해요. 그땐 그냥 성별하고 관계없이 남매를 한 홈에서 양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아이가 적응도 되고, (...중략...) 보통 한 4세 정도 됐을 때 남자 방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니까 그때 분리를 하고. 대부분은 자매나 형제는 한 홈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근데 본인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같이 안 쓰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저희는 처음에 그래도 권유를 하죠, “그래도 같은 형제인데 또는 자매인데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하고, 이제 본인들 의사가 강할 때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같은 홈을 쓰도록 해요. (참여자 12)
- 남매들도 있습니다. 남매들의 경우에는 성별이 좀 달라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은 어렵구요. 집이 나눠져있기는 한데, 뭐 식당에서 만난다든지 자유롭게 밖에서 놀 때는 어울려서 놀고 있습니다. (...중략...) 1건은, 저희는 4세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4세가 넘은 아이는 저희 OOOOO에 왔는데, 4세 미만인 아이는 지금 영아원에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참여자 15)
- 최근에 작년 12월에 들어왔던 아이는 여자아이가 먼저 왔고요.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원장님이 형제가 같이 입소한다고 떨어져 살면 안 된다고 해서, (시청에) 자리 조금 기다려달라고 해서 그 아이가 2월에 저희 시설에 입소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붙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참여자 16)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대안양육으로 인해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분리가 필요한 때에도 아동의 뜻에 반하지 않는 이상 모든

상황에서 형제자매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대관계가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한다(CRC, 2013; UNGA, 2010).⁵⁶⁾ 대안양육에 관한 DGD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도 “대안양육이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라도, 이들이 형제자매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Butler, K., Currie, V., Reid, K., & Wright, L., 2021). 원가정을 벗어나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동의 안정과 일상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 일부는 혈연관계에 있는 형제·자매의 역동이 오히려 아동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분리 배정한다고 밝혀, 아동권리에 기반한 양육을 실천하기 위한 명확한 지식과 가치가 내재화되지 않은 아쉬움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을 중심에 둔 돌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시설의 종사자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드러낸다.

- “형제자매끼리 상처받고 해서 서로 위로해서 같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랬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생이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더 쉽게 생각을 하고. 또는 두 아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다른 애들을 안 좋게 한다던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형제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배치)하는 경우는 드물더라구요. (참여자 7)
- (형제자매는) 의지가 되어서 좋은데, 시설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들하고 전혀 교류가 없고 자기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도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니까 아이들 방을 나누거나 해서 떨어져 있지만, 여기 그룹홈은 5-7 명인데 2명이서 힘이 되어버리니까 나머지 아이들하고 같이 교류가 없더라구요. (참여자 14)

〈코로나19와 시설보호아동의 권리 침해〉

앞서 성별 분리와 인원수 규정은 다수의 아동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사항이겠지만, 근본적으로 대안양육에 있어 시설형 보호가 갖는 한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시설보호의 한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가족과 교류할 아동의 권리이다. 아동의 성별이 다르거나 시설 여건상 타시설에 분리 배정된 경우, 만남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

56) CRC/C/GC/14, para. 65; A/RES/64/142, para. 17.

다. 부모의 시설 내 출입도 방역지침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원가족 교류는 현저히 어려워졌다. 반강제적인 코호트 격리와 다름없는 생활 속에(경향신문, 2021.07.21.),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아이들이 나갈 수 있게끔 허락해주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면 그 이상 바랄 것 없다”고 밝힌 참여자 5의 발언은 시설보호 자체로 차별에 노출되고 차별이 가중되는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보여준다.

가정환경 상실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설계·운영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이들 아동의 보호주체는 공공이라는 원칙을 상기할 때,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명목으로 일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아동복지시설 대상 정책은 명백히 인권에 반한다. 시설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아동이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고, 종사자들도 노동에 대한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제반 환경의 변화는 “모든 아동, 가장 취약한 아동의 삶의 질 보장”에 적합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를 찾아볼 수 있다.

- 코로나19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지금 3단계만 되면 외출·외박이 전면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없거나와 이게 다른 기관에 있다 보면은 저희가 그 기관으로 데려가는 것도 그 기관에 좀 민폐가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류를 이렇게 열어두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부모님이 다른 기관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희 기관에 찾아와서 만났다 하면은 그거는 저희는 항상 오픈이 되어있지만, 저희가 다른 기관으로 아이를 만나러 가게끔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좀 많아요. (참여자 5)
- 거의 대부분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니까 2단계가 되면 부모가 와서 면회는 가능하거든요. 지금 3단계에서는 와서 면회를 하려면 부모님이 24시간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으로 나왔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오셔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의 원가정하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지금 2년 가까이 원가정 부모님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참여자 5)
- 경제적인 지원은 사실 그렇게 크게 바라지는 않아요.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아이들이) 나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 이상 바랄 건 없죠. 아이들도 요구하는 그거고. 저희도 이제 지자체에서 안 된다는 걸 “그래, 우리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참여자 5)

(3) 아동의 법정대리인 문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민법」 제5조 제1항),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때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제909조 제1항, 제928조, 제938조). 그런데 앞서 학대로 분리된 아동이 과반수에 달하며, 유기·미아·부모사망을 이유로 보호조치된 아동 비율은 상당히 낮은 현실에서 유추할 수 있듯, 현재 시설보호아동의 상당수는 친생부모인 친권자가 존재하는 아동이다. 즉,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친 부모이며, 아동에 관한 각종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는 시설보호 중에도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아동의 휴대전화 개통, 통장 개설, 병원 진료와 각종 행정서류 발급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자 접근제한 명령 등이 있는 경우는 참여자들이 고민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 일상을 제약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사회적 보호아동의 보호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시설은 공공을 대리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조력자라는 체계를 상기할 때, 친권자에 대한 개입과 소통, 필요한 경우 권한대행을 통해 원가정 보호를 포함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공공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태를 알 수 있다.

① 휴대전화 개통

- 핸드폰이 좀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호자긴 하지만 부모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개통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초등학생들은 핸드폰 개통 어렵죠.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핸드폰 개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공기계를 쓰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요. 부모님들이랑 연락이 돼서, 추석 때 명절 때 왔다갔다 하는 친구들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친구들은 개통하기가 어려운 거죠. (...중략...) 연고자가 없는 친구들은 시설장이 후견인을 해서 시설장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해주지마는, 연고자는 있는데 연락은 안 닿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핸드폰 개통이 어렵죠. (...중략...) 이게 비단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많아요. 은행 가서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안 해주고. (참여자 1)

- 휴대폰은 요즘에 아동복지시설에서 개통해줄 수 있게, 희망고리⁵⁷⁾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한 명 했어요. (참여자 10)

② 통장 개설

- 병원보다 더 불편한 것은 금융 관련한 검증할 때 전혀 안 돼요. 그래서 통장 개설이나 비밀번호 변경이나 도장 변경하는 거, 이런 거는 전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부모님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동학대로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란 연락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것도 알려도 안 되니까 아보전을 통하다 보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참여자 6)
- 제일 큰 문제가 통장. 애네들한테 지금 필요한 통장이 수급자 통장. 용돈을 이제 내가 거기다가 넣어주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가서 찾아쓰는데, 그쪽 엄마가 안 해줘 버리면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애먹었고, 지금도 엄마가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후원금으로 용돈을 이월시켰다가 거기서 내가 용돈을 주고 있고. (참여자 7)
- (부모와 연락이) 단절된 경우는 되게 힘들죠. 은행 업무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아이 이름으로는 안 되니까 그냥 시설 이름으로 통장 하나 개설해서 애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참여자 9)

③ 병원 진료와 의료기록 발급, 코로나19 백신접종

- 인제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미성년자 본인이 할 수가 없고, 대리인은 부모밖에 안 돼서, 저희가 증명서 발급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진단서·진료기록, 뭐 이런 거를 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냥 가벼운 질병 같은, 감기나 내과나 정형외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래도 꾸준히 한 군데로 20년 가까이 다닌 곳들이기 때문에 그냥 발급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대형병원의 상급병원 같은 데 갔을 때는 좀 제한적이어서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여자 6)
- 보통 입소를 하게 되면 입소 때 병원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위탁의뢰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럼 병원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대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자 11)
- 보호자들한테 급하게 연락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 응급실 가서 진료받아야 할 때,

57) ㈜ 희망고리는 2010년 주식회사형 사회적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특히 법정대리인 문제로 휴대폰 가입이 어려운 사정을 전국의 그룹홈, 가정위탁, 장애인, 청소년 쉼터,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무상 휴대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웹사이트 주소: <http://www.hopeu.kr/content/read.asp?Tcode=Content5&LargeMenu=2&MenuNum=1>)

그러면 이제 상황을 설명한다고 해도, 당연히 이제 당황하신 거였지만 화 엄청 내시고 아이 바꿔주시라고. 그니까 저희가 거짓말 치는 것처럼.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에 보호자 동의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리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종합심리검사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집에 있을 땐 이런 아이 아니었는데, 그 시설 가더니 그렇게 됐다고. (참여자 16)

-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아이들까지 확대가 되고 아이들 의사에 따라서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로 연락을 할 수 없는 부모님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고3이나 이런 친구들은 다 그냥 학교에서 맞으니까 그냥 맞았는데, 그 이하의 친구들, 이번 달부터 이제 예약해야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중략...) 연락이 제한되어 있는 분들은 아보전에서 소통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원본은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서 그것도 좀 어렵고. 아이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이나 핸드폰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또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구청에 문의했을 때 이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한테 딱히 안내해 주실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6)

④ 행정서류 발급

- 저희 그냥 입소의뢰서만 들고 공문만 들고 가면, 근데 동사무소 직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전입신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아버지(세대주)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대요. 그 아버지가 학대로 해서, 여기에 있는 걸 모르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화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이) 법정대리인은 아니잖아요. (참여자 2)
- 주민센터같은 곳에서 서류 발급이 안 돼요. 옛날에는 시설 이런 데는 좀 해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부모님이 오셔야 된다고 해서. 최근에 저희 후원사업 같은 거 신청하고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었거든요. 장학금 같은 거 신청할 때도 간혹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서류를 제출을 못 해서. (...중략...) 김천에는 아동시설이 두 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쪽 주민센터는 떼주냐고 물어보니, 그쪽도 안 된다고. 그러면 다 안 되는구나, 이려고 있었거든요. (참여자 10)

법정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친권의 남용 문제가 지적되었다. 친권자가 아동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요금을 미납한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으며, 부모가 건강보험을 체납하여 연대납부 의무자인 미성년자가 채

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⁵⁸⁾

-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이 연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아이 이름으로 해서 체납료가 날라오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고 직장에 전화하고 해서 저희가 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몇백만 원을,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신용불량자로, (...중략...) 또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해서 미납을 시켜놔서 이제 핸드폰 요금이 계속 기관으로 날라오기도 하고. (참여자 5)
- 저희 반에 한 명은 핸드폰이 없어요. 그 이유가 부모님이 아이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시고 요금을 미납하시고 그걸 내지 않아서. 원해서 만들어주고 싶어도 저희가 만들어 줄 수 없어요. 그것도 저희가 원장님 책임 하에 그렇게 희망고리 연결을 해서 아동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여기 있어요. (...중략...) 원래는 엄마가 핸드폰을 그래서 못 만드니까, 그것을 미납요금을 해결해 주시면 저희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해결도 안 해주시고, 한 번 선불제 핸드폰? 이것을 해서 만들어서 주셨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랑 연락한다는 이유로 핸드폰 가져간 거예요. (참여자 18)

〈후견인〉

한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라 시설보호아동의 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후견인 지정·허가, 이후 후견인 취소 등의 번거로움과 아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각종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많다(김희진 외, 2021; 박명숙·제철웅, 2018; 제철웅 외, 2017).⁵⁹⁾ 실제로 면접조사 참여자가 종사하는 시설이 후견인 지정·허가를 받은 사례는 많지 않았으며, 후견업무에 대한 부

58)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29일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폐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미성년자 지역가입자의 97%가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며, 모든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면제는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2019.09.26.).

59) 관련하여,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후견인 지정은 친권의 부재를 전제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 「민법」상 미성년후견에 관한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며(김희진 외, 2021; 정현수, 2017), 후견인으로 지정된 시설장이 과도한 감독자책임을 질 수 있으며,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과 달리 법원 감독이 개시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김희진 외, 2021; 제철웅, 2016).

답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후견인 부분도 절차가 참 복잡해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와 연락이 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후견인 지정이 오히려 어려워요. 부모가 아예 연락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는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지만, 연락이 된 경우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요. (참여자 11)
-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 4명을 제가 후견인으로 했거든요. 딱 5개월 걸렸어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복잡해요. 저희들이 구에 가서 서류하면은, 구에서 와서 이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들을 찾아서 이 사람한테 후견인을 줘도 되는지, 그걸 몇 개월 신문예다 공고를 해야 되고. (...중략...) 또 문제는 뭐냐면 후견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게 너무 많아요. 1년에 두 번씩 아이들 통장 다 이렇게 해갖고 가정법원에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뭔가도 조사를 해야 하고. 그래서 후견인은 대부분 안 하려고 하죠. (참여자 14)
- 민원성이 강한 부모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 OOOOO에서는 아동복지법,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나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쓰는 지침사항의 어떤 법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저희는 법원에다가 저희 원장님으로 후견인 신청 전 원 다 마쳤습니다. (참여자 15)
- 후견인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저희는 한 명도 후견인으로 되어 있진 않고요. (참여자 16)

3) 아동의 자유권과 참여

신체의 자유는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중요한 인권의 하나로(UNGA, 2019),⁶⁰⁾ 인권의 역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표현되는 자유권 인정과 확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의 불가침을 전제하는 자유권 실현을 목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의 의무도 필연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확장되었다. 아동 또한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인간이 갖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 이들의 자라나는 속도에 적합한 최대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제반 환경 조성은 국가의 책무이다. 출생등록과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사생활권)는 아동의 생활 전반에

60) A/74/136, para. 17.

보장되어야 한다(CRC, 2015). 이때, 아동권리협약 제12조가 명시한 아동의 참여와 견해존중에 대한 권리는 성인과 동등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권리의 주체자로 현존하는 아동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설명한다.⁶¹⁾ 모든 아동은 삶의 당사자로서, 다양한 수단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이들이 자신의 발달 수준에 맞는 형태로 정보를 습득하고 견해를 형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CRC, 2009).⁶²⁾ 즉, 아동의 자유권은 의견청취권 보장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시설보호아동 또한 마땅히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가정보다 규칙과 규율에 따른 제약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집단생활의 특성상, 아동의 자율성 존중과 선택의 자유가 어떻게 고려되고 지켜질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시설 종사자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집단생활의 자율성 보장

〈종교의 자유〉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대부분 민간에서 신고·설치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 시설이 종교에 기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면접조사 참여자들도 대부분 종교단체가 설립한 시설에 근무하고 있거나, 시설장이 종교에 기반한 사명감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를 갖거나 갖지 않을 자유는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이다(아동권리협약 제14조, 「헌법」 제20조 제1항). 아동은 시설 배치와 관계없이 자신의 종교를 존중받아야 하고, 종교적 의식이나 교육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아동이 종교나 신념을 바꾸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UNGA, 2010).⁶³⁾

조사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아동에게 종교를 권하기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답하였다. 코로나19 이후 현장예배가 제한되면서, 자연스럽게 종교활동의 영향이 줄어든 경향도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예배에 참여하기 싫다고 말한 아동은

61) CRC/C/GC/12, para. 1.

62) CRC/C/GC/12, para. 21.

63) A/RES/64/142, para. 88.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있었는데, 집단생활의 특성상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 종교기반 시설이지만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전혀 없고, 또 아이들 의견에 맞춰서 참석하도록 하고요. 코로나 전에는 큰 아이들은 외부교회, 본인들이 원하는 친구 따라서 많이들 외부로 나갔었구요. (참여자 2)
- 의무적으로 강조하지는 않고, 이제 예배시간에 예배드려라 하면, 자느라고 안 오는 녀석도 있고, 그 시간에 알바한다고 나가는 녀석도 있고. (참여자 4)
- 저희도 이제 설립자분께서 전도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설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 기관도 종교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종략...) 일단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니네가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라고 아이들에게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참여자 5)
- 처음에 설립된 건 기독교 기반으로 하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약해졌죠. 예배를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옆이 교회인데, 안 가는 애들이 많죠. 만약 교회가 다른 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 있어요. (참여자 10)
- 저희들 설립 취지는 기독교 정신이랑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지만, 요즘은 종교의 자유, 인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교회 가고 안 가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있어요. (참여자 12)
- 저희는 교회를 매주 일요일마다 가고 있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있기는 한데, 아이들에게 “여기는 아무래도 종교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곳이어서, 너희들이 힘들겠지만 일요일 하루만큼은 시간을 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설득해서 가고 있고, 간혹 한 번씩 사춘기가 와서 너무 싫어하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친구와 충분히 이야기를 한 후에 “교회를 가는 친구들도 있으니 네가 안 가는데 놀기만 하면 저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모두가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데 너만 빠질 수는 없다. 해서 정말 교회 가기 싫으면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그러니까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지 않도록” 다른 시간을 주고 다른 애들은 교회를 다녀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여자 18)

〈프로그램 참여의 자유〉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국가정책의 한 형태로, 아동보호라는 목적에 적합한 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평가지표를 충족해야 하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의 참여도는 평가요소 중 하나이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a; 보

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b). 이에 모든 시설이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시행하고 있지만, 아동의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동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아동의 관심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세부내용과 활동방법을 기획하는 등 아동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답변하였다.

-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교육들을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앉아서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진짜 싫어하고 힘들어해서. (…중략…) 예전에는 캠핑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식단 짜고 장보고 요리해 먹고 텐트 치고 그러고 놀다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립 프로그램들을 모두 다 녹여 넣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재밌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해서 1년 동안 했어요. 그 외에도 아이들하고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청소년 자발적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외부로 프로젝트를 내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어떤 걸로 하면 좋겠냐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제주도를 가서 자전거 여행을 하고 오고, 거기서 놀고 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참여자 5)
-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정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진행이 되는데, 아이들이 일정이 있거나 본인이 참여를 하고 싶지 않다고 굳이 이야기할 경우에는 빠지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시작하기도 전에도 요구조사도 하고 하니까. (참여자 11)
- 완강히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아이들에게 발달하고 이런 데 다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참여자 13)
- 2년간은 자율성을 보장해 줬다가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선생님.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하니 그냥 되도록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합시다.” 했고. 예를 들어, 15~17세 자립프로그램, 꼭 필수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아이들한테 “이건 필수야 애들아” 하고, 그것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은 “하고 싶은 친구들 있니?” 해서 동의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참여자 18)

이때,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려고 하지만, 시설 평가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아동에 대한 5대 의무교육(「아동복지법」 제31조)과 인권교육, 자립준비프로그램(「아동복지법」 제

3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필수 프로그램은 반드시 참여하도록 안내한다고 하였다. 다만, 5대 의무교육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같은 교육을 반복하여 듣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강제성을 떨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3년마다 시설 평가를 받다 보니까 시설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아이들의 의견을 따라주고 싶지만, 이걸 안 하게 되면은, 평가 점수가 낮아지면 또 이것도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참여자 5)
- 진학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참석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의무교육은 꼭 저희 원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어쩔 수 없이 베스트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꼭 하도록 했었고. (참여자 6)
- 5대 의무교육하고 인권교육, 사실 6대 의무교육이지. 네, 이거는 의무교육이라 강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피학대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동의서를 애들한테 받는데. 피학대 쉼터는 일시보호시설이니까 애들이 전부 있다 가잖아요. 할 때마다 안 한다, 해서 힘들다는 시설장들이 이야기가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60% 이상 참여해야지 인정을 하는 거라, 평가에 반영을 하고. (참여자 8)
- 저희 의무교육은 필수로 참여하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의무교육은 교육 위주고요, 아이들도 지금 받아야 하는 교육이 6가지 정도 돼요, 1년에. 근데 그게 학교에서도 받고, 어린이집에서도 받고, 유치원에서도 받고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원에서도 하다보면 반발심이 좀 많더라구요. (참여자 15)

(2) 아동의 사생활 보호

〈CCTV 활용〉

집단생활시설의 특성상 보안과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CCTV 설치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아동의 일상을 감시하여 통제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우려를 최소화해야 하며, 자유와 안전에 대한 원칙과 예외는 시설에서도 엄격히 존중

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참여자 모두 CCTV는 출입문 근처나 공개된 장소에만 설치하고 있으며, 아동의 일상이 노출될 수 있는 방과 같은 공간에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CCTV 관리도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단은 저희는 CCTV가 없어요, 저희 시설에는. 근데 저희 법인 내에서는 어떤 가정에 CCTV가 있는데, CCTV를 설치할 때 아동들이랑 의논하고, 하기로 결과가 도출돼서 설치를 하고, 그걸 열람을 할 때는 모든 친구들이 원하면은 그걸 보여준대요. 이제 그거를 보는 거는 시설장 권한이고, 그런 절차는 마련이 되어 있죠. 왜냐면 이게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CCTV도 그룹홈 내에 설치를 하느냐도 약간 조금 부적절하기도 한 거예요.(참여자 1)
- 없어요. 안 그래도 보안 문제 때문에 현관에만 설치하자고. 안에는 강제 사항 되기 전까지는 못해요. 선생님들 불편해서 안해요. 아, 그 피학대쉼터는 설치한대요, 공용 공간에, 거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베란다라든지, 방은 설치 안 하고. (참여자 8)
- 복도나 출입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만 CCTV 있어요. 관리는 국장님이 하시고, 필요시에는 담당 생활선생님이 국장님 승인 하에 같이 보는 식으로. (참여자 10)
- 저희가 CCTV는 이제 아이들 각 방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씻고 나서 바로 속옷만 입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복도식이라서 현관이 있으면 방이 네 개 있는데,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면 보일 텐데. 그래서 프로그램실이나 사무실이나 현관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곳에 설치해놓고 있거든요. (...중략...) 국장님이 필요에 의해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따로 되어 있고요. (참여자 17)

(3) 외부 모니터링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운영〉

국가는 시설에 대한 독립인권기구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고,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의 의견청취, 시설 방문과 개선 권고 등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UNGA, 2010).⁶⁴⁾ 아동복지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은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64) A/RES/64/142, para. 130.

31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보호를 최초로 시작할 때에 인권침해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하고, 관련된 안내서를 시설보호아동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참여자의 응답에 비추어, 오늘날 대부분 시설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은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방법도 안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 진정서 투입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7인 이하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은 진정서 제출에 따른 비밀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제시되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자필로 진정서를 작성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래문화가 중요한 아동기의 발달 특성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적 변화를 수용하여, 보다 실효적인 외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진정함을 달아 놓으라서 진정함을 달아놨는데, 투명 케이스를 해서 달아놓으니, 누가 거기에 (진정서를) 넣겠어요. 뭐 하나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보이고. (참여자 4)
- 지금은 시대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정함을 설치하고 건의함을 설치하고 이 자체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금 스마트폰 시대고, 아이들도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갖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빼고. 그런 상황에서 진정함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아이들이 자필로 써넣고 이런 거 요즘 세대에게는 맞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자기네가 정보 더 잘 알아요. 굳이 지금 같은 시대에 아날로그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참여자 5)
- 편지로 써서 건의하고 했던 방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고, 요즘 시대에 남의 눈에 보이는데 누가 하지 않죠. 거기다 넣으면 또 시설 직원이 확인해서 인권위에 보내줘야 되는데, 어느 누가 그걸 사용할까 싶고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죠. 아보전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인권위나 국민의 소리 이런 곳도 있고, 뭐 너무나 열린 공간이 많다 보니까. (참여자 13)
- 실제로는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곳곳에 CCTV가 있다 보니까, 가면 내가 간 게 찍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것 같아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참여자 18)

진정함의 의미와 필요성은 참여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참여자 5는 진정

제도가 아동에게 이익이 되며, 시설 입장에서도 아동의 시각을 이해하여 그에 적합한 돌봄을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고 응답하였고, 참여자 11은 다수의 아동과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사안이나 불편한 점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진정함이 의미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 필요하다고 봐요. (...중략...) 아보전에서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와서 아동들만 따로 놓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봤을 땐 진정제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신원보장도 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따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참여자 1)
-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여지고요. (...중략...) 실제로 그 좀 뭐 이거를 활용하자는 아이들도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기관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진정 제도는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더 유익하고 기관 입장에서도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하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진정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참여자 5)
- 있으면 좋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하고 오랫동안 애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 친밀도도 그렇고, 불만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자기 담당 선생님한테 말 못 하겠으면 다른 선생님한테라도, 서로 얘기 하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웬만해서는 불만적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해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애들도 굳이 다른 기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신고할 만큼의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10)
- 제도 자체는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내부 안에서 아이들이나 종사자들에게 자기 의견이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좋은 의도로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11)
-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선생님이 어려워서 말을 못 하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들도 종사자들도 이걸 조금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심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필요한 것은 생각을 해요. (참여자 1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외에 자체적으로 ‘건의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시설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시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의

함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에 진정함을 설치하도록 한 취지는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결과, 개별 아동의 권리가 소홀히 되고 침해될 우려를 예방하며, 이들의 권리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인권기구의 모니터링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자가점검을 도모하며 이들의 역량 강화와 긍정적 양육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취지를 이해하고, 따라서 양자가 병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될 필요를 찾아볼 수 있다.

-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희가 진정함을 설치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안내는 하고 있어요. 1년에 2번을 안내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진정함과 별도로 건의함과 칭찬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권위 진정함 말고 건의함이나 칭찬함에 넣으면 해결된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략…) 진정사건이 한 케이스 있었는데, 그 한 케이스로 저희가 너무 많은 혼란을 겪었어가지고. 아이들 간에 “형이 나를 괴롭히고 이제 시설에서 선생님한테 그걸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 봉투를 봉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조사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참여자 15)
- 건의함은 시설에 건의하는 거고, 진정함은 인권 관련 그런 거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기 힘든 얘기 같은 건 저쪽에 가서도 넣으면 돼”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6)
- 그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정함 설치해가지고. 저희는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썼을 경우에 선생님께 감정,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이렇게 보고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국장님이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거나 선생님도 따로 불러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식당 앞에 입구 쪽에 있어서 아이들은 그냥 자율적으로 넣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17)

4) 시설보호아동의 특별한 욕구

아동의 발달할 권리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유기·학대 등으로 가정에서 분리된 경우에 더욱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데, 낮은 질의 시설 양육은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적·심리적 발달을 촉진하지 못하며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안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형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CRC, 2005).⁶⁵⁾ 대규모의 장기 생활시설에서 지내는 청소년의 발달과 자립이 긍정적이지 않으며, 위탁가정이나 공동생활가정 같은 대안적 돌봄을 받는 청소년도 그 정도가 약할 뿐 다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있다(CRC, 2016).⁶⁶⁾ 국가는 대안양육을 받는 청소년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기회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들이 시설을 떠날 때 직면하는 특정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대처하여 취업, 주거, 심리지원 및 사후서비스 접근권 등에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시설보호아동의 특별한 욕구에 주목하고 적절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할 책무를 말한다(CRC, 2016).⁶⁷⁾

무엇보다 정서적 돌봄은 아동의 기본적 욕구로서, 부모를 대신하여 사실상 보호자로 아동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는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CRC, 2013).⁶⁸⁾ 가정환경이 박탈된 상황은 아동의 가장 기본적 권리가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양육, 주거환경, 건강관리 서비스, 정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UN, 2010).⁶⁹⁾

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다 민감하게 아동인권을 이해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이행을 지지하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이에 시설보호아동의 발달 특성에 필요한 보호체계와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는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인지 질의하여, 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인권이슈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상담 전문인력 현황과 필요성

〈시설 내부의 상담인력〉

앞서 시설 종사자의 업무환경과 관련한 인력 부족 문제에서 제시되었듯, 참여자가 종사하는 상당수 시설이 종사자 법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임상심리상담원이 부재

65) CRC/C/GC/7, para. 36(b).

66) CRC/C/GC/20, para. 52.

67) CRC/C/GC/20, paras. 53-54.

68) CRC/C/GC/14, para. 72.

69) A/RES/64/142, paras. 82, 104.

한 상황이었다. 공동생활가정 또한 시설보호아동의 특성이 다르지 않으며, 시설장 포함 3명의 종사자가 아동 각각의 특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민감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임상심리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는 법률상 기준은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모두 시설 내부의 상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실제로 상담인력이 있는 시설은 아동의 일상지원과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심리 상담부터 시작해서 뭐 치료 상담, 무슨 상담, 상담은 굉장히 많이 거쳐서 아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미 너무나도 빠삭해요, (...중략...) 내가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 지까지도 아이들이 이미 다 습득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 4)
- 전문적인 상담을 배우시는 분들이 좀 상담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죠. (...중략...) 이게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상담을 했을 때 가장 좀 진솔된 얘기라든가 아이들한테 가장 피드백이 갈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부딪치면서,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상담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자 4)
- (도움이) 많이 많이 되죠. 외부 상담도 가지만, (...중략...) 정말 아이들한테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상담사)이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도 저희한테 못했던 이야기들은 상담샘한테 간혹 가다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상담 선생님이 “지금 상담해”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아이를 상담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밥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툭툭 던져서 이야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원만하게 좀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4)

다만, 7명의 아동과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은 공간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담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단지 상담인력이 상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는 것 또한 고민될 필요를 알 수 있다.

- 찾아가는 상담사를 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그분들이 아이들 시간 맞춰서 한들, 이런 그룹홈에는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각자 아이들 방

있고 상담실이라고 만들어 놓긴 했지만, 아이들이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기 때 문에. 이런 점은 저희도 시스템도 안 맞죠. (참여자 14)

〈외부의 상담서비스 이용 경험〉

시설은 서로 다른 배경과 특성을 가진 다수 아동이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불편함과 함께 구성원이 자주 달라지는 불편함도 있다. 아동 대부분이 가정해체와 학 대 등으로 가정에서 분리된 부정적 경험이 있으며, 아동과 양육자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달을 저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설에 배치되는 순간부터 원가정 복귀나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이 민감하게 모니터링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시설 내부에 상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 상담인력이 없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뿐만 아니라, 임상심리 상담원이 상주하는 시설에서도 필요에 따라 대부분 외부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다만, 보건복지부나 아동권리보장원이 이용 가능한 기관목록을 안내하거나 지자체를 통해 연계한 경우는 없었고, 모두 각 시설이 자체적으로 관련 기관을 찾고,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부 상담은) 제가 트라이하고, 아이한테 맞는 치료랑 치료제도 주는, 좀 주로 가는 치료기관이 있어요. (...중략...)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오랜 기간이 지나야 아이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파악하는 시간을 줄이고, 정말 본론으로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참여자 3)
- (상담기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단양에 상담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 원장님하고 주로 하는데. (참여자 4)
- 물론 비용도 지불을 해주면 좋겠지만, 어느 병원에 어떻게 가서 치료를 받을지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중략...) 약물 치료는 이제 병원에 가고요, 그 다음에 헬로스마일센터라고, 여기를 제가 서치해서 찾아가지고. 멀어요, 여기서 되게 먼데 제대로 가야 되거든. 바우처로 하는 그 수준 가지고는 우리 애들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 애들이 그 내성만 생겨가지고 어떻게 연기해야 되는지 알고, 오히려 집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그래,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참여자 8)

- 저희가 치료재활지원사업이라고, 이게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저희가 사전검사 해가지고 해당되는 아동들 최대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따로 알아봐서 그 기관에서 해도 되고 그쪽에서 추천해준 리스트, 기관들이 몇 군데 있긴 하거든요? 하면은 이제 저희가 선정해서 해도 되고, 그렇게 전문인력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상담받는 걸로. (참여자 10)
- 아동복지협회에서 진행하는 아동치료재활사업 아시죠, 그거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놀이치료를,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을 지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열 명 중에 네 명은 베이비박스 1~2개월에 들어왔고, 그 외에도 원에 와서 돌잔치를 한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도태성, 자아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서 있어서. 어린이집 갈 때도 저희가 굉장히 좀 염려스러웠던 게 여기서는 ‘삼촌, 이모’ 이런 호칭들을 주로 많이 하다가, 한 어린이집을 갔더니 ‘엄마, 아빠’, 그리고 특히 월요일 같은 데 가면 저희가 어린이집에 양해를 구했는데도 ‘주말에 부모님하고 뭘 했어요’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이들이 겪으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어린이집 갔더니 자기 감정 표현을 이렇게, 문을 발로 찼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어떤 폭력적인 것보다는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 과잉행동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학교를 입학할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더 큰 사회로 나가기 전에 조금 더 정서적으로 먼저주고 부모 부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내면에 스스로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고 저희 자체에서 의논이 돼서 거의 유치부 아이들은 전체가 놀이치료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참여자 12)
- 일단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 한 군데가 있구요. 이제 또 지역사회 내에만 맡겨놓기에는 미술치료라든지 놀이치료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조금 멀리 수원까지 나가고 있어요. 수원같은 경우엔 조금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폭력성이 질거나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엔 그쪽에 아예 사례를 맡겨서 저희가 지금 전담으로 주 1회 정도 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는 공모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에 이용하는 치료기관인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시설 위치가 굉장히 외진 데 있다보니까 그 기관에서 저희 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들 상담하시고 뭐 검사하시고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참여자 15)
- 저희(종사자)가 상담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는 여기서 아이들의 보육을 하니깐요. 제가 대부분 가는데 항상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아이 문제행동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ADHD도 그렇고, 아이의 우울성향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얘기를 하면은 ‘뭔가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또 계속 좋아지지 않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상담)선생님한테 아이에 대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했던 그 상담들 대신 전달해드리거나 하면은 뭔가 계속 저만 죄인이 되는. ‘왜 계속 우리 애들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계속 안 좋아지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참여자 16)

다만, 지역의 경우 근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기관이나 전문가가 현저히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는 곧 아동의 원거리 이동을 동행해야 하는 종사자의 업무 부담과 동행하는 담당자가 부재하는 동안 시설 내 인력부족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상담의 효과나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아동발달과 시설보호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없거나, 특정 인력이 아동과의 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 바우처 통해서 심리상담센터를 꾸준히 많이 이용하고 있구요.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경기도 꿈드림, 이런데 많이 이용하고 있고, 외부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주 1회, 월 1회, 그게 사실 크게 효력이 있을까요? (참여자 1)
- 내가 그곳에 가서 그분하고 일대일 관계를 개별적으로 맺고 오는 그 자체. 일단은 그걸로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거.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즐거움을 갖는다는 거. 그 정도는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확 좋아지는 어떤 것들은 없다 보니까, 진행자로서 마음이 안 좋긴 해요. (참여자 3)
- 아무래도 이제 지역 내에서 임상심리상담원을 연계하기가 어려워져서, 뭐 가까울 때는 목포에서 오시고, 3분이 목포에서 오시네요. 그리고 한 분은 광주에서 오세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한번 오시면 이 선생님이 3명, 이렇게 2명 이상, 이렇게 한 분, 쪽하고 가야 해서 날짜 맞추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희는. (참여자 12)
- 그런데 여기가 시골이어서 상담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두 곳 연계하고, 그 이외에 그냥 복지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총 네 곳 연계해서 상담받고 있어요. (...중략...) 종합심리검사를 받으려면 타지역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여기는 없어서 천안으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참여자 16)
- 저희가 상담도 지금 굉장히 많은 아동이 받고 있지만, 그것도 추려서 받는 친구들이에요. 바우처 문제도 있고 사업신청 이런 것도 있고, 후원금이 조금 있는 아이라면 개인 후원금을 써서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보령에 그렇게 상담을 전문적으로, 상담센터는 있지만 아이들에게 극적인 변화나 이런 것을 줄 만한

그런 것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보령에서 뿐만이 아니라 ADHD나 이런 게 심한 친구들은 지금 외부, 타지역으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공주로도 다니고 있고, 아산 쪽으로도 다니고 있고. (참여자 18)

외부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제시되었다.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등에 대한 바우처가 제공되기는 하나,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특수한 발달 지원에 필요한 국가나 지자체 예산은 달리 없으며, 참여자가 종사하는 시설 모두 공모사업 지원이나 후원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었다.

-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섯 명 전부가 학대 아동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상처를 갖고 있다고 봐 되겠죠. 우리 애들이 사실은 시에서도 처음에는 그 건강보험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가요 거기서 한 몇 개월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한 육 개월, 개입을 요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지나니까 심리 치료가 없어요. 애들은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룹홈연합회 쪽이나 초록우산 이런 쪽에 요번에 시행했던 그런 사업들을 제가 막 찾으려 다녀야 돼요. (...중략...) 병원에서 계속 원하고 제가 볼 때도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끝까지, 필요할 때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7)
- 외부 상담인력이 저희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없고, 저희가 외부로 센터 치료를,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는 구청 도움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또 이제 꼭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저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크거든요. 상담 치료 비용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 상담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 세 명의 종사자가 한꺼번에 아동들 여러 명 외출을 나올 경우에는 일정 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이 큼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많이 크구요. (참여자 11)
- 심치리료 관련된 비용들이 사실 만만치 않은데, 그게 바우처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구요. 근데 사실 그 1년 안에 좋아지길 기대하긴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말 수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연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5)
- 학대아동은 상담 연계하는 게 일순위인데, 따로 상담 비용이 책정되어 있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우선은 뭐

수급자 신청을 해놓고, 어떤 아이들은 막 3개월 기다리거나, 빠르면 1달에서 2달인데. 아니면 후원금을 사용한다거나 하는데 그럴 때는 좀 빠르게 주변에 있는 공기관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상담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여기 시설에 입소된 것만으로 상담 지원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참여자 16)

(2) 장애아동 보호와 지원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장애아동의 권리〉

면접조사에서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의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고, 참여자 대부분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아동의 돌봄과 보호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관련하여,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동을 위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설 종사자가 장애아동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육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참여자가 있었고, 재정적 자원 확보 및 시설에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아동의 일상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를 제시한 참여자도 있었다.

- 어떻게 보면 특수아동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한 명만 돌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른 아동들과 같이 있을 경우에 일이 생긴다든지 하면 정말 어려워하시고. 또 지적장애나 경계선 아동들의 반응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다 보면 그 소진이 너무 큰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또 약소하잖아요. 교육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시설 종사자들은 위한다면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교육도 필요한 거고. (참여자 2)
- 좀 심한 장애가 있고, 우리 애는 둘 다 3급인데 자기표현을 잘 못 해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표현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장애 정도가) 굉장히 좀 심하거나 하면 아예 그냥 장애인 센터로 이렇게 보낸다거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그룹별 형태를, 이 시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7)
- 저희가 이제 장애아동들도 같이 생활하거든요. 지금은 심한 장애로 등급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냥 옛날로 따지면 지적 3급 정도, 그런 애들이 저희가 제법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심하다해서 관리가 어렵거나 장애시설로 가는 게 전문

적으로 받고 이렇기에 애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전 원조치를 한 건 몇 번 있어요. 티오가 있는 데가 잘 없어서 막 전국 다 찾아보고 전화하고. (참여자 10)

- 저희 같은 경우는 언어치료가 필요한 아이, 그러니까 특수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언어치료를 기본적으로 수업 받아요. 그렇지만 그거 한 주에 2회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학교 다녀와서는 장애종합사회복지관에 추가로 언어치료를 가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보육하다가 아이들 데려다주고, 끝나면 데리고 와야 되고. 또 그 주양육자가 가야지, 치료 끝나고 나서 상담 선생님이 나눠서 주 양육자가 어떻게 해주어야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겠는지 이런 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양육자가 동행을 하기 위해서 숙소를 비우면 우리 생활 선생님이 숙소에 가서 대신 남아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참여자 12)
- 일단 재정적 지원, 연간 1,000만 원 정도 경계선 아동들한테 프로그램 지원이 되니까. (참여자 14)
- 이제 일반시설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장애인 시설로 답사를 가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확연히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운영에 대한 차이라던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자체 매뉴얼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장애아동전문 시설에 보낸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가서 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그 아이가 경계선이고 인지능력도 낮고 하다보니까, 이 아이가 표현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싸움만 나고 무시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거기 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들은 장애인시설로 좀 선별해서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중략…) 이번에 전국의 장애인시설 300곳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아동만 갈 수 있는 장애아동시설이 300개 중에 7개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게 되면, 그곳으로 계속 문을 두드려 볼 생각입니다. (참여자 15)
- 지금 여기 아이들이랑 생활하면서 그 장애아동들도 솔직히 생활하기 힘들고, 시설 내에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항상 아이들한테 “우리가 같은 공동체니까 도와줘야 돼, 좀 도와줘” 하지만 그 도와줘야 하는 대상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왜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항상 뒤처지니까 그게 너무 안쓰럽고,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방에서 생활하고 해야 하니까 “좀 도와줘, 도와줘” 이렇게 하게 되고, 아이들도 반복적으로 학습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번씩 쳐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생각처럼 안 따라오면 그 아이는 약간 짜증을 내고요. “왜 안 해? 뭐해?” 이렇게 되는 거

같고, 또 그 당사자 아이는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면 또 그러고.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거기서 좀 혼란이 오는 거 같아요. “나는 왜 다르지?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거 조금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계속 설명해 줘도 아이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면에서 같은 학년이라도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멀어지고. 그런 경우도 지금 멀어져서 아예 말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중략…) 장애아동이 만약에 같이 이렇게 보육을 할 경우에는 차라리 특수 전담으로, 특수교사 선생님 같은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좀 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참여자 16)

〈경계선 지능 아동〉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발달과업에 맞는 사회적응과 배움이 느린 아동을 칭한다. 2016년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아동의 약 15.6%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관계부처 합동, 2021.07.13.), 경상남도 시설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도 상당수 아동(약 33.6%)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나타났다(경남도민일보, 2021.09.13.). 학업 위주의 성취평가와 경쟁이 증시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은 사실상 ‘장애아동’과 다름없이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제2조)과 아동 최상의 이익(제3조)에 반한다. 아동의 발달하는 능력(evolutionary capacity)은 일관된 모습과 수치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 과정을 조력하는 보호자와 사회구성원이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지도와 안내를 제공할 의무로 지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아동권리협약 제5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목표와 더불어 모든 아동이 서로 다르게 자라는 속도를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 및 발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참여자의 답변에서도 그 욕구를 확인할 수 있듯,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적합한 양육기술과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대안양육이 가정을 갈음하는 최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기초학습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시설보호아동의 상당수가 충분한 정서안정과 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운 문제

를 인식할 때, 이들의 발달적 특성은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시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 일단은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다 보니깐, 그런 친구들은 심리 상담센터에 보내서 주1회씩 상담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뭔가 케어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저희는 아동·청소년이지 장애인시설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경계선은 사실 장애로 취급 안 하잖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경계선 친구들도 따로 케어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기거나, 무슨 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극단적으로 봐서 특수하냐 아니냐, 거기 아닌 중간에 놓여있는 친구들은 어떡하냐?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참여자 1)
- 장애인시설에 보내야 된다, 아니다 그 진짜 경계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이가 장애인시설에서 행복할까 여기서 행복할까. 어떻게 키워야지, 그 고민은 그냥 인간적인 고민으로 평생 갖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참여자 2)
- 정부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설이나 그룹 홈이나 이런 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양육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조 역할을 하면서 주로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걸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로 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전문가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선생님 한 명이 그 아이 한 명하고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면 나머지 아이들이 다 그냥 방치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 6)
- 저희가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사업이라고, 관련 사업이 있어서 담당 선생님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나마 그 교육으로 인해서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 행동에 대해서 좀 알고.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이왕이면 좀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게 그나마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자 9)
- 저희는 지금 일곱 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경계선 아동이에요. (...중략...) 나라에서는 경계선 아동들한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봤는데 지원하는 숫자가 좀 적었어요. 왜냐면은 이 선생님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지원할 때 서류 자체도 어마무시한데. 그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 아이들 5명을 지원했는데, 지원자가 많이 없으니까 혹시 일반 아동도 더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고 해서, 7명 다 같이 경계선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죠. (참여자 14)

(3) 자립 지원

〈자립의 개념〉

‘자립’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고, 시민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깨닫는 전 과정이다(CRC, 2006).⁷⁰⁾ 정부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성인 구성원으로서 자기 충족적이고 상호 협력적으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라고 자립의 정의를 제시하여(아동권리보장원, 2020b), 권리주체자이자 의무이행자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상태로서 자립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자립 준비는 자신의 일상과 삶을 소중히 여기는 시각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고 주체적인 결정을 지지받는 경험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외에도 시설 내 종사자가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더불어 아동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삶의 모든 시간을 염려하는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시각도 이를 뒷받침한다. 아동의 의견을 듣고, 시설 내 주양육자(보육사)와 상의하여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자립의 주체는 아동이라는 관점을 실천하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 소통망 들어가서 자립 지원 이렇게 쓰는 것이 있긴 한데. (자립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계획은 계속해서 바뀌죠, 수립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해요.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내가 뭐가 될게요”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 것이고. (참여자 4)
- 당장 나가서 지가 밥 해먹고 빨래하고 뭐하고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자립이죠, 자립 방안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외부기관에. (참여자 7)
-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본인 빨래는 본인이 개야 되고, 본인 팬티는 본인이 애벌빨래를 해갖고 통에 담아야 되고, 옷은 빨래 바구니에 넣어야 되고, 손가락·젓가락 본인이 놓아야 되고, 분리수거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하고 있어요. 본인 방 청소도 해야 되고 책상 정리도 해야 되고 본인 옷은 옷걸이에 걸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 하는 것도 자립하는 거고. (...중략...) 저는 이게 교육이고

70) CRC/C/GC/9, para. 64.

훈련이라고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일상생활 있는 것들을 자립훈련을 시키고 있고, 은행업무랑 주민센터 서류 때는 것들은 주로 방학에 이뤄지고. (참여자 14)

- 자립 팀장님이 “본인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알지 못하니 차라리 선생님들이 큰 틀을 짜 주세요, 제가 세부적인 것을 할게요”, 그런 업무적인 얘기를 해서 “매달 어떤 프로그램을 애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저희 생활지도원들도 짜요. 그렇게 해서 넘겨주면 자립팀장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자립활동 하고, 이제 아이들 소감이랑 이런 걸 받아서 저희 평가까지 내려서 다시 전달하고 그 마지막 관리를 팀장님이 하세요. (…중략…) 크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 단체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처음에 일차적으로는 팀장님이라 15~17세 해당하는 생활지도원 선생님이 모여서 일차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애네들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불러 놓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너희들 하고 싶은 게 있느냐” 의견 물어봐서 조율해서 프로그램 계획해서 수행하고 있어요. (참여자 18)

〈자립지원계획 및 프로그램 현황〉

자립준비프로그램은 시설입소 단계부터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미취학, 초·중·고·대학)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자체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a). 이를 위해 만 15세부터 자립지원계획⁷¹⁾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아동복지법」 제 3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보호종료시 자립정착금과 이후 정기적인 자립수당을 통해 아동의 경제적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해 보호종료 직후 5년간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사후관리를 지속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참여자들의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준비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도 엿볼 수 있다.

- 고2, 고3이 되면 수시로 자립캠프를 가기도 하고, 또 교육을 포함해서 자립 관련해

71) 아동의 적성과 욕구파악, 사회성 발달정도 및 자립능력과 수준 등 아동의 상태평가,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등(아동권리보장원, 2020b).

서 교육을 많이 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교육도 많이 하고. 자립관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살아보면서 체험하게, 혼자 다 자기 생활비를 가지고 의식주 생활하게끔 하는 자립관도 있어요. (참여자 2)

- 지금 자립 프로그램이라고, 아동 학습비가 나오거든요. 그룹홈연합회 쪽에서 한 곳을 정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중략…)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보면 강사 섭외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모아서 하면 자금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자립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공문들은 많이 내려와요. 교육이랄지 심리치료 사업과 아울러서 자원은 자립지원사업 같은 거는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참여자 7)

그러나 정부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아동의 진정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지침이 제시하는 자립지원계획서 서식은 진학과 취업을 택일하여 자격증 준비, 학원지원, 직업훈련 등의 정보만 담도록 되어 있어 시설표호라는 상황적 맥락과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계획이 설계되기 어렵다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립지원정착금도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건 지금 최대 500만 원이라고 저희 대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자립수당이라는 것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생겨서 매월 30만 원씩 3개월인가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을 못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유지가 되면서 기초생활수급비 70만 원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100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를 도전하지도 않는 아이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참여자 5)
- 자립수당도 모두 다 일괄적으로 아이에게 직접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립지원 전담요원한테 사례관리를 하라고 하면, 아무리 전화해서 “너 그렇게 쓰면 안 돼, 너 잠깐 원에 와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해” 해도 아이들은 오지도 않고 전화하면 또 잔소리한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자립이 이뤄질 수 있는 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자체가 이뤄질 수가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 돼 있는 거죠. (참여자 5)
- 우선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자립지원 수립 계획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이들 현실성에 너무 맞지 않아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저희 자

체적으로 맞춰서 하고 있구요. 일단 15세부터 저희는 자립지원 수립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15부터 17세까지는 아이들에게 정보를 안내해줘야 되는 것, 알려줘야 되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약속을 다짐받는 것, 이런 쪽으로 계획을 좀 잡고 있구요. 18세 이후, 이제 연장아동인 경우에는 실전이잖아요. (...중략...) 그래서 이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자립계획을 수립할 건지, 그런 자산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상 5만 원, 10만 원을 만지다가 1,000만 원대의 돈을 만지게 되면 분명 실수를 하거나 사고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립지원 계획서를 수립할 때 동의서를 하나 받아놨요. “네가 퇴소한 이후에도 1년동안은 이 돈에 대한 관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네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받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막고는 있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고자 부분. 퇴소했을 때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돌아가지 않더라도 연고자와 계속 교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저희는 하고 있구요. 세 번째로는 이 아이가 취업을 할 건지, 대학을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들을 방향을 잡아서 세워나가고 있구요. (참여자 15)

특히 참여자 5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업무를 했을 당시 아동의 능동적 참여와 지속적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밝혀, 아동권리에 기반하여 자립전담인력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의 중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자립지원청년(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해, 취업 등으로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보고도 있었다. 인적 관계가 있는 종사자를 통해 아동의 지지체계를 보강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취지라 할 것이나, 상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단위의 자립지원체계가 우선적으로 기능할 필요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나, 공동생활가정은 그렇지 않다. 시설 내 상주인력은 어렵더라도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시·군·구 단위의 지원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 자립을 했을 때에는 오로지 저희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에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사후관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잘 안 돼요. 연락을 거부하거나 잘 안 받거나, 안 받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들끼리 있기 싫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잘 지내면 다행인

데. 어,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 중에서 대부분 잘 안 지내요. (…중략…) 그런 친구들 위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자립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면접하고 지원해주는, 뭔가 그런 따로 전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1)

-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얘기하라고 하면,⁷²⁾ 아이들의 참여예요. (…중략…)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언제든지 자원을 연계해주고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요. 준비는 돼 있는데 아이들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다른 거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너 그때 그거 해줬을 때 포기하지 않았냐, 근데 또 잘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친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같은 자원이면은 다른 친구에게 순서가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거 같아요. (참여자 5)
- 거의 다 타지로 아예 갔어요. 일자리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취업을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애들이 다 큰 곳으로 가고 싶은가 봐요. (참여자 10)
- 저희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방청소한다든지, 식사할 때 수저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그 계획은 저희들이 수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자립을 해야 하잖아요. 집도 떠나야 되고, 그 외에 사회적인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교육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는 전담 요원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잘 제대로 설득하고 계획을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없다 보니까 어느 의견 하나 제시한다면 적어도 구마다, 구마다 그룹홈에 지원하는 요원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11)

(4) 양육환경과 양육 방법

아동기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 따라서 아동의 시설보호는 배치되는 순간부터 보호종료시까지 종사자들의 적절한 양육기술과 방법이 요구된다. 시설 종사자들은 공공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성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입소 과정에 아동의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질의하였는데, 부득이한 경우(학대로 긴급한 분리가 필요한 경우 등)가 아니라면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을 둘러보고 선택하도록 한다거나, 시설 내 아동과 함께 입소 예정 아동을 맞이하며

72) 참여자 5는 사무국장이 되기 전에, 10년 이상 자립지원전담요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낮선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은 삶의 주인인 아동의 참여와 의견청취 권을 실천하는 의미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 저희는 의뢰가 들어오면은 일단 아이를 와서 한번 보기를 해요. 2~3일이라도 아이가 와서 이 집이 본인도 그래도 살 집인지 안 살 집인지, 본인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와서 한번 보게 하고, 저하고 언제 한번 면담을 하고, 이제 아이가 본인도 여기가 내가 올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해야 되고. 제가 또 처음에 봤을 때 한 50% 정도는 이 아이 성향이 어떻겠다, 이 아이 태도가 어떻겠다, 조금은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여태까지 거절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도 일단은 아이들이 한번 와서 지가 살 집을 보고 가게끔 지금 하고는 있어요. (참여자 14)
- 저희는 아이들이 입소할 때 초기 점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입소한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많이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티오가 있어서 만약에 입주를 받게 되면,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러 가구요. 갈 때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입소할 아동 연령에 따라서 저희 원에 있는 비슷한 연령의 아동들을 같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OOOOOO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그 키즈카페나 아이들이 좀 어울려서 놀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찾아서 아이들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같이 어울려서요. 저희 원에 원래 있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입소한 아이들한테 OOOOOO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게 하구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들어오는 형태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입소할 아동을 담당할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키즈카페에서 아동을 관찰하고 아동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구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저녁에는 전체 아이들과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의 불편감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소해주려고 하고 있구요. 그 과정에서 어렵거나 힘든 점은 저희 아이들이나 종사자들한테는 들어보지는 못했던 거 같아요. 오히려 이제 보육원에만 있던 아이들도 나가서 노니까 좋다고 했었구요. 보통 아이들이 입소하고 한 일주일 간은 좀 어린 아이들은 울거나 밤에 보채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적응이 되더라구요. (참여자 15)

<양육방법과 양육에 대한 상이한 이해>

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이 삭제와 함께 국내에서는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금지가 법제화되었다. 단어에 깃든 인식의 변화를 위해 교육상 체벌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던 ‘훈육(discipline)’을 ‘긍정 양육’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안

내하는 캠페인도 계속되고 있다.⁷³⁾ 참여자들의 답변을 통해서도 시설 내 종사자들의 양육방법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의 양육지침을 통해 양육자가 일관된 내용의 지도와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종사자 회의나 아동과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다고 설명하였다.

- 어떻게 케어하고 컨트롤할 거냐는, 교사들이 얼마만큼 아이들이랑 관계를 잘 맺어서 아이들이 그런 일을 안 하도록 만드는, 사전에 막거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없죠, 그냥 말하는 거밖에 없죠, 앉혀놓고, 너 왜 그랬어,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자고 다독이고 얘기하고. (참여자 1)
- 저희 기관에서는 훈육 관련해서 지침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잘못을 하게 되면은 벌점형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되는 그런 훈육지침도 있고, 직원에 대한 매뉴얼도 있고. (참여자 5)
- 저희들 내부적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잘못을 했거나 그럴 때는 글을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아이한테 말할 때 나 전달법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옆에가 바로 전대거든요, 전대를 산책하면서 아이하고 불만 사항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1)
- 1달에 한 번씩 사례회의를 하거든요. 생활지도원이나 사무실에서 원장님 다 해가지고, 문제점이나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하다 보면, 혼자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도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해결에 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해도. 그럴 때는 정말 그냥 조금 더 지켜보거나 꾸준하게 아이들을 또 만나고 그러는 수밖에 없죠.(…중략…) 매일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니깐요. 그때 그런 얘기는 같이 하지만, 이제 좀 더 중요한 사안이나 그런 건 1달에 한 번씩 크게 얘기하고. (참여자 17)
- 일단 아동이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아동에게 어떤 잘못을 했고 이로 인해 네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적어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동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벌을 받는다면 나는 이런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써 오면, 그것을 가지고 아동과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얘가 터무니없는 것을 적어오거나 했을 때는 서로 간에 조율해서 얘가 어떤 벌칙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조금 규정하는 편이고요. 조금 사소한 문제들은 그렇게 하고 있

73) 아이마음 아이다움 캠페인, <https://www.imaum-idaum.com/Intro>, 접속일 2021년 12월 11일.

고, 아이가 조금 심한 것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사례관리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상담이 필요한 건지, 애가 문제를 일으킨 게 정신적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 건지, 아니면 그냥 뭐가 있는지 상담을 하든지 이런 걸 연결해 봐야 하는지 그런 걸 해서. (참여자 18)

그러나 아동학대로 오인받지 않고자 하는 우려가 크고 물리적 충돌이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우선시되어 아동의 문제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가 있었으며, 참여자 대부분 체벌이 금지된 이후 아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이 어려워졌다고 답변하여, 양육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양육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지하는 과정으로 아동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지도와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아동권리협약 제5조), 그것이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아동 양육에 곤란을 겪는 참여자들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충분한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원가정에 대한 지지가 중요한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의 주양육자로 일상을 같이 하는 종사자 또한 아동의 바로 곁에서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옹호가이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법과 제도에서 명확히 표명되었을 때, 이들도 학대의심신고나 사회적 시선을 염려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다. 아동의 부당한 행위에 단호하게 맞서고, 타인에 대한 폭력을 막아내며, 알고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의 의미를 설명하고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을 위협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양육자의 권위와 책무를 지지하는 사회적 역할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설 종사자는 진정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 아이가 실제로 문제행동을 하거나 잘못했을 때, 기본적인 훈육지침이 매뉴얼로 딱 정해져 있긴 한데, 중재회의라고 회의를 하기도 해요. 그 매뉴얼을 기본 삼아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중략…) 초중·중등까지는 이런 회의를 하고, 아이를 포함한 양육 회의를 통해서 어떤 뭔가를 하는데, 정말 큰 아이들은 저희가 할 방법이 없는 상황도 좀 있어요. 지금 사례회의도 하고 외부 자문도 받고 해도, 아이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되게 어렵네요. (…중략…) 아이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주로 하는 게 컴퓨터 게임이고, 그걸 차단하여 그 부정적인 표출이 다

른 아동이나 가출로 나오니까, 차라리 이 안(컴퓨터실)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참여자 3)

- 훈육 위주죠. 뭐 그냥 이제 얘기하고, 혼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육지침이라고 하면, 저희는 특별하게 훈육지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요, 얘기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힘든 부분이죠. 인제 뭐 계속 말로다가 하면 이 아이들이 그냥 말로 끝나는구나. (참여자 4)
- 예전에는 이게(벌점) 좀 쌓이고 쌓이면은 외부에 나가서 다른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벌점이 쌓여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지금 외출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벌칙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이들이 더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아이들은 거의 뭐 여기 임계점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훈육)지침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고, 그냥 단순하게 벌점이 작은 걸로 쌓이는 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어떻게 물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참여자 5)
- 아이들에게 사실 “다음에는 그러지 마, ‘다음에 또 이러면 선생님 화낼 거야’ 이 정도의 이야기 정도지, 사실 아이들한테 벌을 줄 수가 없고, 뭐랄까요? 그럴 수가 없는 현실에서 아이들 지도가 더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어떤 일정한 벌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그런 거 자체도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되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악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좀 많이 선생님들의 의욕이 좀 소진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해요. (참여자 12)
-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이 싸우고 있어서 제지하려고 뒤에서 꺼안거나 팔목을 잡았는데도 “선생님이 때렸다” 이제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통의 지침은 ‘아이들 몸에 손대지 말 것.’ 그리고 아이들 감정이 좀 잦아들 때까지 무조건 분리! 싸운 아이들끼리 분리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선생님도 가끔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 제외. 다른 선생님 투입해서 일단은 분리. 이게 공통의 지침입니다. (참여자 15)
- 훈육지침은 없는 것 같고,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아이들이랑 뭔가 대치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자리를 우선 피하고, 그리고 다른 방 선생님한테 잠깐만 그 방을 맡게 부탁드리라고. 문제되는 아이랑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립되지 않기 위해서. (참여자 16)

〈통고제도와 소년재판〉

「소년법」에 따른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제4조 제3항). 실제로 이용한 적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수단으로 통고제도 이용 가능성을 고지하는 경우도 언급되었다. 이러한 통고제도는 실제로 범죄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가출, 술·담배를 하는 등 유해환경에 접하여 ‘앞으로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범죄소년과 똑같은 소년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반한다.(CRC, 2019; UNGA, 1985).⁷⁴⁾

즉,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배제하고 분리하는 관점에 비추어, 시설보호 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특성을 이해하면서 이들의 시각에서 옳이 아동을 지지하는 종사자의 인식과 태도를 실천하게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성인과 아동 사이에, 또는 아동간 차별적 처우는 허용될 수 없다는 비차별의 원칙이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실천되어야 한다.

- 그 외에는 자주 가출하고 술을 먹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 있죠. 저희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불러서 이제 통고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니네가 다른 보호치료시설로 갈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아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육일지에 썼던 거를 따로 출력해 와서 아이들하고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니가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주면서 네가 직접 가서 통고제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주면 찾아보고 나서 달라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직접 시행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겁주는 정도로 이렇게 통고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5)
-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심한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썬터 같은 데는 그런 애들이 많을 걸로 아는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그룹홈에다가 밀어만 놓고 그냥 “그룹홈에서 책임져라” 하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딱 나버리면 그룹홈에 책임만 넘기고 행정처분 때리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아이들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따로 전문그룹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7)

74) CRC/C/GC/24, para. 24; A/RES/40/33, Rule 3(a).

- 통고제를 통해서 그걸 거쳐서 원가정 복귀를 한 친구도 있습니다. 시설에서 통고를 했고, 통고를 하면서 연고자 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신청을 해서. 이제 아이가 조금 폭력성이 짙은 친구였어서 한 3개월 정도 아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케이스입니다. 이 사례가 처음이었는데요, 앞으로 한 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통고를 할 때 대부분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폭력성이 좀 두드러지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보호하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더라구요, 저희가 지도를 하기에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통고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5)

5) 인권교육 실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시설 내 인권상황은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한계이며, 실태에 대한 이해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방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반복되는 인권교육이 보다 의미있게 종사자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어떠한 내용과 형식, 혹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 알고자 하였다.

(1) 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 수강 빈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교육이 늘어나 좋다고 언급한 참여자도 있었지만, 앞서 〈업무 관련 교육 및 상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참여자 대부분 법정 의무교육과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침에 따른 필수교육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있었다.

- 딱 그냥 준수해야 되는 것만 준수해요. 1년에 두 시간이나 세 시간, 그것만 하는 거죠. (참여자 1)
-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여기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방문교육도 이동하고 종사자와 같이 하기도 하고. (참여자 11)

〈인권교육의 내용〉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대부분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만 있어 아쉬움을 토로한 참여자가 있었고,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한 참여자도 있었다. 시설 종사자가 본인이 맡은 업무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 아동의 보호자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지원을 제공하는 인권교육에 참여자 대부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설 종사자라는 업무 특성상 어떠한 교육이든 아동과 관련된 사항이면 도움이 된다고 밝힌 참여자도 있었지만, 여타 교육과 구별되는 보편적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는 응답은 없었다.

- 올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만족도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90%가 넘었어요, 좋았다고. 강사 선생님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잘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용 면에 있어서는 아동인권이 우선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참여자 2)
- 법정 의무교육 차원에서 인권교육이라고 인정해주지는 않는데요. 아동학대예방교육이나 가정폭력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인권하고 연결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참여자 5)
-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쪽에 같은 교육이라도 5대 의무교육 중에서 아무래도 아동권리 부분이 그쪽에 신경이 많이 가죠. 그게 상당히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고. (참여자 7)
- 인권교육, 사실 이거 의무교육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내용이 항상 반복이긴 하잖아요. 그니까 솔직히 너무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한쪽으로 듣고 흘리시는 분들도 왠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참여자 10)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종사자 인권은 바닥이다, 아동인권은 하늘이고 종사자 인권은 땅이다, 아이들 인권만 있고 종사자 인권은 없다, 종사자 인권은 하나도 챙겨주지 않는다” 등으로 나타난 것처럼, 참여자 대부분 아동권리교육이 대두되면서 종사자 인권교육이 간과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편성과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으로 설명되는 인권의 원칙은 누군가의 인권침해를 수용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의무이행은 권리의 침해나 박탈이 아니다. 즉, 성인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부모와 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구성원 공동의 책무이며, 시설 종사자가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종사자의 노동에 대한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행이다. 아동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동에게 최선의 선택을 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과도한 업무에 치여 아동보호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여건과 환경을 갖추라는 요구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린 적은 있어요, 강사님한테. 직원의 인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그때 강사님이 소수의 인권을 우선시 한다, 약자나 소수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더 반문은 못 하고, 그렇게만 받아들였지. (참여자 2)
-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 인권은 다 무너지고 아동인권만 너무 또 대두가 되니까. (...중략...) 선생님들이 욕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애들은 선생님들한테 막 욕하고, 그냥 저희는 듣고, 그걸로 같이 욕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 인권은 사실 바닥인 거죠. (참여자 9)
- 아동인권 하늘이고, 종사자 인권은 땅이에요. (...중략...) 종사자 인권이 어느 서류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지마”가 아니라 “당신네(종사자) 인권은 이렇습니다” 하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종사자도 이런 인권으로 너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게 기록에 나와 있어서. 모든 게 아동인권에 너무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나의 인권도 좀 교차화되고 명료화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참여자 14)
- 보육사 선생님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아이들 인권만 있고 종사자 인권은 없다,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난감하구요. 어, 난감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직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활시설이라 집 같은 느낌은 나지만 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된다” 그런 선은 두고 있어요. 근데 정말 종사자 인권이 없어요. (참여자 15)
- 아이 아동의 인권은 항상 존중하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항상 종사자의 인권은 하나도 챙겨주지 않으셨어요. 아동학대 교육에서, 너무 겁을 줘서. 교육을 가해자의 시각으로 하시니까. (참여자 16)
- 솔직히 저는 말하면 저는 인권 교육 관련해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과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종사자의 인권 하면, 관장님께서 몇 년 전에 교육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아동은 인권이 있지만 종사자는 인권이 없어요, 선생님은 인권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라는 말을 해서 그때

모든 교육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되게 뼈저리게 느껴요. ‘아, 나는 인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들 그러실 텐데, 예전 아이들처럼 지금 아이들처럼도 너무 달라요. (참여자 18)

〈인권교육의 영향〉

인권교육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특별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인권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는 응답은 주목할 만하다. 아동기를 지나왔지만 이제는 아동이 아닌 성인의 시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은 지속적인 노력과 성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동을 대할 때 조심할 행동을 상기하게 된다는 참여자 1의 응답도 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주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시설 종사자가 아동보호와 돌봄이라는 업무에 충실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 목적을 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일단은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다시 한 번 상기가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지? 반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하지? (참여자 1)
- 인권교육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이걸 듣고나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아, 이래서 내가 안 되겠구나” 스스로 자아반성 정도? “아, 내가 이런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참여자 9)
-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인식개선에는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그룹홈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 부분들, 교육 상담 같은 것은 있어요. (참여자 11)

(2) 종사자의 인권교육 욕구

〈인권교육 제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침은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외부강사 기준으로 “①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국가인권위원회 이외의 기관에서 진행한 양성과

정도 인정) 수료자로 한정, ②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인권교육기관⁷⁵⁾에서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권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재활학 또는 보건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⁷⁶⁾을 제시한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a).⁷⁶⁾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한 것은 일응 장점이기도 하지만, 참여자 6은 각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따라 인권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를 언급하며 일관된 체계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생간건대, 특정 기관에서 시선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제공된다면, 인권강사의 질을 담보하고, 일관된 방향성과 교수법을 갖춘 인권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강사양성과 모니터링, 슈퍼바이저를 통해 양질의 인권교육을 유지하고, 나아가 단계별 인권교육과 정기적인 인권교육 개편까지 아우르는 체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지금은 이제 인권교육이라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인권 강사를 섭외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용도 다 다른,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지는데 그걸 이제 일원화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 같구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교육을 수급하는 데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 6)

<인권교육의 내용>

아동과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고 싶다는 참여자들의 발언은 자존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

75) 이때의 인권교육기관이란 “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a).

76)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침도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은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하지만, 대학교수의 경우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b: 46).

시설보호아동은 가정에서 분리된 상황 자체로 상당한 트라우마에 노출된 것이며, 다수 아동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 특성상 규칙과 규율에 맞춰 생활해야 하고 사생활이 온전히 지켜지기 어려운 불편함도 함께 있다. 시설 종사자는 이들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황을 이해하고,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개별적 접근을 통해 긍정적 발달을 조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발달이 다소 늦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지도와 안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종사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개념은 결코 아니지만, 다만 아동의 권리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일련의 과정이 쉽지 않은 것도 맞다. 따라서 시설 종사자에게 필요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더불어,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와 신념을 내재화하고, 그에 따른 기술과 태도를 모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현실의 벽을 넘어, 아동과 종사자의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행위자로 성장하는 것에 인권교육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 당신들이 여기서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에 안주하지 말고 본인들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항상 인지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희망적인 (내용이 있으면). (참여자 1)
- 이제 아동시설이다 보니까 아동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동인권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종사자의 인권을 지켜주고 종사자가 업무 소진이 되잖아요. 이런 특별한 상황일 경우에 특히 보육사 선생님들은 아동 양육을 실제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소진되는데 대처방법이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참여자 2)
- 교권침해란 얘기가 나오듯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도 인권교육으로 좀 매뉴얼화 되어서 교육이 이뤄지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와 직장 직원 동료들 간에 일어나는 그런 인권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인권교육을 하더라도. (참여자 5)
- 종사자 인권,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뉴스 같은데 보면 시설 선생님이 싫어서 약간 고의적으로 신고하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조사에 들어가고 우선은 학대 행위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참여자 16)

-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욕설이나 그런 걸 해도 저희도 이제 받고만 있고, 저희도 뭘 할 수 없을 거 같고. 만약에 그에 대한 저희도 뭐가 있으면 “선생님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아이들이 욕을 하건 때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보호받지 못하죠.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이런 생활하는 시설이나 그런 데서 조금 많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하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아이들 인권이라고 해서 점검 나오잖아요. 매년이나 2년에 한 번 나오는데, 정작 저희 선생님들의 인권은 아이들을 열심히 케어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인권 조사나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뭔가를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진짜 괜히 마음이 좀 불안하고 뭐 하는 건가, 죄를 지었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참여자 17)
- 저는 시설 내에서 아동들로 인해서 종사자들이 인권을 침해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종사자 인권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합법적으로 애네를 제지하고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교육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8)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내 사례를 활용하여 종사자들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각 지역의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사례를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은, 종사자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며,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업무 현장에 대비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실질적인 사례 같은 게 제일 재밌긴 하죠.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사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면, 진짜 옛날 학대사건 이런 거 교육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에 또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것 좀 사례로 들어서 하면 그나마 좀 덜 지루하게 듣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 자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은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참여자 9)
- 생활시설에 맞는 그 어떤 인권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활시설에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인권교육을 해주는 데는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하는 인권교육도 받아봤는데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생활시설과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전국에 아동복지시설이 한 200개 정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수집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현장 사례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은 너네가

인권적으로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권 감수성이 시설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교육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15)

- 아이들이 싸웠을 때 “왜 재 얘기는 들어주면서 내 얘기는 안 들어줘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희 똑같이 듣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준 같은 거. 음, 원가정이 아이들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가지 않길 원하는 경우에도 그런 소통을 할 때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아이와 소통의 중간 역할을 너희가 잘 해.’라는 식으로 시정명령 했는지, 저희가 소통을 안 하고 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없지만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인권과 관련된. 근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폭력성 같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때렸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신고를 못하고 아이는 신고를 해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렵구요. (참여자 15)

〈인권교육 운영에 대한 제안〉

아동복지시설의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이 큰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밝힌 참여자의 응답은 특별히 중요하다. 즉, 종사자들이 교육을 통한 사고방식 변화와 관점의 전환, 자신의 업무가치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답변이다. 인권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격차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각지의 시설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인권교육을 마련하거나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종사자와 직종별 참여자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편성하는 등 효과적인 인권교육 운영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좀 반강제성이 띄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교육이다, 그래서 안 하면 평가 때 문제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듣는 정도로만 하는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아예 그냥 귀에 확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하면 제대로 됩니까. 시에서 자꾸 이렇게 모임을 갖고 모여서 중

사자 역량 강화 교육할 때 중점적으로. (참여자 7)

- 사실 아동시설은 장점이, 오전에만 교육을 진행해주시면 아이들이 등교하고 없는 시간에. 보통 좀 일찍 오는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한 2시, 1시 40분에서 2시 사이에 귀가를 해요. 그래서 오전 중에 9시 반이나 10시에 시작해서 12시 정도에 끝나면 충분히 저희가 영암에서 목포나 나주, 이런 쪽은 1시간 이내에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할 수는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대부분 또 교육들이 오후에 많이 진행되어서 저희가 좀 아쉬움을 항상 협회에다가, “아이들 등교하고 없을 때 진행해서, 실제로 주 양육하는 우리 보육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는 많이 건의를 하는 편이었고.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거리 멀리 가서 듣지 않고, 또 좋은 강사님들의 교육을 이렇게 다수가 들을 수 있어서 장점들을 저희는 좀 많이 발견을 했어요. (참여자 12)

5. 소결

1) 설문조사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욕구 및 실태와 더불어 시설 내 인권보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종사자 총 490명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으나, 업무 만족도에 있어 보상, 노동강도,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그런 편이다)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상황 중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상황에서 후견인이 없는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가 112명(38.1%)으로 나타나 시설보호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와 관련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정제도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진정제도의 활용은 평균 3.0(그런 편이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진정제도 활용 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29명(6.0%) 있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참여자 중 장애아동을 담당한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301명(61.8%)으로 과반수였으나, 이들 중 99명(33.4%)은 장애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70명(24.7%)은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시설 종사자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시설보호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과 관련하여 인력부족, 차량부족, 기타의 이유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태(132명)를 고려하였을 때, 인력 충원 등 시설보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과 경험을 알아보았는데, 공공기관(377명, 50.1%), 복지시설(179명, 23.8%)에서 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동영상 강의(295명, 33.8%), 강의식 비대면 강의(280명, 32.1%), 강의식 대면 강의(230명, 26.3%)형태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접근 가능한 범주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권교육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교육 시간대,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력 부족 문제와 연계되었다.

전반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된 보호대상아동의 인권상황은 종사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와 추후에 진행된 면접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의미 있는 인권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면접조사

면접조사의 전반적인 질문은 설문조사와 틀을 같이 하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업무환경에 요구되는 아동보호와 양육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환경인지 알아보고 권리보장적 관점에서 시설보호아동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돌봄이 제공되는지, 그 과정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청취하였다. 또한,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욕구를 확인하였다. 한편, 면접조사에 제시된 참여자들의 답변은 본 연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현장감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우선, 종사자의 업무환경을 질의한 결과,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가 다르게 지급되는 문제, 과도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아동생활시설의 특성상 휴게시간 확보의 어려움, 주 40시간(최대 52시간) 근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력 여건, 나아가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외부의 대체인력을 활용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업무를 명확히 분담할 수 없으며, 이는 각자의 전문화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시설은 대체로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자들도 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필수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이외의 교육 경험은 거의 없었다. 모든 어려움은 사실상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맞닿아 있었으며, 이는 시설보호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돌봄과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한 대안양육 체계의 시설 운영과 종사자의 역

할과 경험을 알아보았다. 출생등록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 등이 보고되어 시설배치에 있어 아동의 출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니터링 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 모두 원가정의 존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는 이해하고 있었으나 원가정 복귀를 넘어 원가정과 교류하고 그 관계를 유지·개선하는 과정 자체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남매가 다른 시설에 배치되거나 같은 시설에서도 다른 방에 분리배치되고, 같은 성별인 경우에도 연령과 아동 특성이나 시설 인원수에 따라 분리되는 실태도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원가정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알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기존 방식의 가족교류가 제한된 현재, 시설보호아동의 권리 보장에 차별이 없도록 아동보호체계가 어떻게 역할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과 법원 판단으로 시설이 직접 아동양육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권이 없어 아동의 휴대전화 개통, 통장 개설,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보호아동의 보호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문제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의 자유권과 참여를 중심으로 시설 종사자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도 질의하였다. 조사 결과, 시설의 설립주체와 운영자의 종교와 관계없이 대부분 시설에서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의무교육이 아닌 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도 가급적 존중한다고 하였다. CCTV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리주체를 정하여 활용되고 있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설치되고,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외에 자체적으로 건의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있었는데, 시설 내부의 자체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독립인권기구에 접근할 수 있는 진정한 설치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진정제도의 의미가 종사자들에게 적절히 안내될 필요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의 특별한 욕구를 이해하여 이들의 발달 특성에 필요한 보호체계와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는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인지 질의하여 시설 종사

자가 현장에서 겪는 인권이슈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상담인력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라는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 할 것인데, 법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거나 인력채용이 어려워 임상심리상담원이 없는 양육 시설이 있었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상담인력 배치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상담이 가능한 일정한 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내부 상담인력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시설이 시설보호아동에게 필요한 외부 상담을 연계하고 있으며, 이는 각 시설이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재원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관련하여 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육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참여자가 있었고,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적합한 양육기술과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참여자도 있었다. 나아가 아동의 진정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역할을 고민하는 참여자들의 응답도 제시되었다.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준비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정부 정책이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설보호라는 상황적 맥락과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설계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었다. 아동에게 의미 있는 자립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립전담인력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보호종료아동의 타지역 취업 등으로 상시적인 교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역사회 단위의 자립지원체계를 통해 실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필요도 찾을 수 있었다. 양육환경과 양육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체벌금지가 법제화되는 변화는 시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통의 양육지침을 통해 지도와 안내를 제공하며 종사자 회의나 아동과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방법이 종사자와 아동 간 갈등을 회피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여자 대부분 체벌이 금지된 이후 아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이 어려워졌다고 밝혀 양육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하는 통고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다만, 아동 양육에 곤란을 겪는 참여자들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충분한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 양육자의 권위와 책무를 지지하는 사회적 역할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설 종사자는 진정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반복되는 인권교육이 보다 의미 있게 종사자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어떠한 내용과 형식, 혹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 알고자 하였다. 참여자 대부분 1년에 4시간으로 제시된 지침에 맞춰 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만 있어 아쉬웠다거나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종사자 인권은 바닥이다, 아동인권은 하늘이고 종사자 인권은 땅이다, 아이들 인권만 있고 종사자 인권은 없다, 종사자 인권은 하나도 챙겨주지 않는다.” 등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 참여자 대부분 아동권리교육이 대두되면서 종사자 인권교육이 간과된다고 인식하였다. 지금까지의 인권교육이 종사자를 지지하고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는 형태로 제공되지 못한 현실을 방증한다. 다만, 인권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는 참여자의 응답에 주목할 때, 인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 목적을 둔 인권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나의 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방안을 제안한 참여자가 있었고, 종사자가 자존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구성하고, 특히 시설 내 사례를 활용하여 종사자들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전국 각지의 시설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인권교육을 마련하거나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종사자와 직종별 참여자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편성하는 것도 효과적인 인권교육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5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필요성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요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동지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필요성

1)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아동과 아동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아동권리협약은 제28조와 제29조, 일반논평 제1번을 통해서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촉진하고 지지하며 보호하는 등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여, 인권교육은 교육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42조는 성인과 아동에게 아동인권을 알릴 각국의 의무를 명시한다. 또한, 유엔 차원의 인권교육 가이드라인인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제1차 단계의 핵심 목표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을 설정하고 아동과 교사·행정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단위 교육 방침 수립과 이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아동과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에 대한 필수교육 제공을 강조하고 있는데, ‘필수교육’도 아동의 인권 실현에 목적을 둔 교육으로서 인권교육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아동의 성장 환경 및 인권 존중·침해 경험의 차이에 따른 인권교육 효과 차이 발생

아동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인권 존중·침해 경험과 인권교육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동이 경험하는 존중감과 인권 침해 정도는 아동의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즉,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일수록 인권 존중의 경험이 낮고 인권 침해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았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효능감도 낮게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돌봄과 양육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더욱이 중요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3) 아동복지시설 상황에 맞는 교육 콘텐츠 부족

그 동안 아동과 관련한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콘텐츠 개발은 정규교육과정인 유·초·중등 교육과정과 영유아 보육시설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및 양육을 제공하는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은 미진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거주를 기반으로 한 생활 시설로서, 아동의 일차적 보호자로 기능하는 종사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아동의 일상과 집단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교육 콘텐츠가 요청된다. 생활시설의 상황에 맞는 지식과 정보, 나아가 종사자의 인권역량과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현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진행한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여의치 않은 근무 여건 속에서 인권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이론을 중심으로 한 유사한 교육이 반복되는 것은 현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인권과 아동인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현장의 이슈와 연결된 사례를 통한 접근은 인권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동인권의 틀 안에서 아이들의 삶과 현장을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게 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간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통한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같은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각각의 시설 및 종사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상이하다. 따라서 활동을 통한 참여형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 간의 다양한 경험과 강점들을 나누고 그 안에서 종사자들 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요

1) 교육의 목적

- 본 인권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옹호가로서의 역량 개발, 나아가 아동보호체계의 의무이행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와 더불어 아동의 연령과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한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며, 둘째, 시설에 대한 점검과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이슈들에 대한 발전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들을 제시하였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에 참여해야 하나, 24시간 업무가 지속되는 생활시설의 특성과 제한된 인력 등 교육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근무 환경이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의 가치’에 관해 생각하도록 유도하여 교육 참여의 내적 동기 형성에 중점을 두며, 동시에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하였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영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아동 범주에 속하는 전 연령의 아동들과 생활하고 의사소통하는 성인이다. 이들이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의 시각에 적합한 의사소통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과 더불어 그 아동의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성장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 연령과 개별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는 종사자가 아동에 관한 자신의 시각을 성찰하고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들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가정으로서, 다수의 아동·청소년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특성상 모든 연령대의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인권 이슈들이 집합된 공간이다. 아동의 돌봄과 양육, 발달을 지원해야 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상황과 어려움을 이해

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아동의 일상과 관련된 다양한 인권 이슈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종사자들이 각기 다른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고안되었다.

-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인권의 개념과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함으로써, 아동과 종사자 모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생활 속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을 알고,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며, 권리기반 접근을 통해 모두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교육 대상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3) 교육 목표 및 기대효과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업적 역할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성찰하고 자기 역할을 강화한다.
- 발달 연령의 특성과 아동 개개인이 경험한 삶에 기반하여 아동을 인식하고, 아동의 주체성과 능동성, 진화하는 능력(Evolving Capacity)을 이해한다.
- 인권의 맥락에서 아동인권을 이해한다.
-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와 현장 적용 능력을 촉진하여 업무 현장의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한다.
- 인권옹호 역량 강화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 및 실행 방안을 설계하는 등 인권에 기반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극적 옹호자로 활동한다.

4) 프로그램 특징

- 본 프로그램은 앞서 진행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주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생활환경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 대상 양적·질적 실태조사는 시설 종사자들의 특성과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므로, 교육에 앞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권장한다.
-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이슈는 성인과 아동이 함께 하는 삶 자체와 맞닿아 있기에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연령별 아동의 이해,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아동기 전반의 주요 인권 이슈,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및 폭력 상황, 훈육, 자립, 원가정 복귀 등 아동복지시설 내 다양한 인권 이슈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점검한 후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또한 교육 중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들에 있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은 참여형 워크숍을 지향한다. 진행자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종사자들 간의 다양한 자원과 경험, 강점들을 나누고 그 안에서 종사자들 간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정원 20명 이하, 한 모둠 당 4-5명 구성을 기준으로 각 활동의 시간을 제안한다. 다만, 교육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과 모둠 당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 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5) 프로그램 구성

- 본 프로그램은 5개의 활동으로 구성된 기본 프로그램과 3개의 심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시간은 기본 활동은 총 4시간, 심화 활동은 활동 당 2시간으로 총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표51〉 참조).

- 시설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1년에 4시간 필수적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⁷⁷⁾ 이에 기반하여 본 프로그램은 한 해 최소 4시간의 인권교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교육 구성 및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활동과 시간을 구성하였다.
- 기본 프로그램은 첫 해 인권교육 시 반드시 진행되기를 원하는 4시간 프로그램이다. 기본 프로그램에서는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를 돌아보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아동을 이해하는 과정을 안내한다. 또한 인권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점검하고, 특별히 아동인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내재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심화 활동들은 인권에 기반한 시설 점검 및 시설 내의 다양한 인권 이슈를 분석하며, 구체적인 문제해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끈다. 더불어 종사자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촉진한다(〈표 52〉 참조).
- 심화 활동의 경우, 4시간 기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시각 설정이 형성된 것을 전제로 진행하기를 권한다. 심화 활동 각각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진행해도 교육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비교적 독립적인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모든 심화 활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경우, 가장 이상적이고 짜임새 있는 하나의 교육이 완성된다. 따라서 교육 시간과 여건이 가능하다면, 기본 프로그램과 심화 활동 모두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를 권한다.
- 1년차 교육의 경우, 기본 프로그램 4시간 진행을 제안한다. 2년차 교육부터는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를 점검하고 인권옹호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단계 나아가는 과정으로 기본 프로그램의 [활동3. 나는야, 아동인권 전문가?], [활동5. 아동인권 이해하기]를 복습 개념으로 진행하고, 심화 활동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4시간 교육을 구성할 수 있다.
- 인권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종사자에게 체화되고 시설 운영에 바탕이 되는 과정 또한 함께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3가지 심화 활동은 인권교육에

7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본 보고서 p.24 내용 참고) 아동복지시설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해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 외에 대상, 기간, 내용, 방법, 절차에 관한 것은 규율하고 있지 않다(본 보고서 25p). 다만, 아동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에 해당하여 법령의 근거와 관계없이 실제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지침에 근거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평가지표에 따라 직원필수교육은 아동 대상 인권교육과 별개로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점수가 부여된다. 아동공동생활의 평가지표도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목적을 둔 활동으로 개발한 것이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시설 내 업무의 일환으로 실제적 활용이 가능하다.

- ☑ [심화 활동1.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의 경우,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 혹은 한 해를 막 시작하는 시점에 인권에 기반하여 시설의 아동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갈 목표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워크숍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심화 활동2. 5+1]의 경우, 상반기/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가장 이슈가 되거나 대처나 대안 마련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주제를 택하여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 및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 [심화 활동3.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의 경우, 논의와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는 양육 상황이나 아동들의 사례회의를 진행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표 51〉 프로그램 세부 활동 및 소요 시간

프로그램	세부 활동	
	활동명	시간
〈기본〉 나와 아동, 그리고 아동인권	(1) 지금, 여기, 나.	40분
	(2) 다시 만나보는 그 아이	80분
	(3) 나는야, 인권전문가?!	40분
	(4) 아동최상의 이익과 종사자의 노동권	40분
	(5) 아동인권 이해하기	40분
〈심화 활동〉 인권 옹호가로서의 발돋움	(1)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120분
	(2) Six Questions	120분
	(3)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	120분

〈표 52〉 세부 활동별 목표

구분	활동명	목 표
기본 프로그램	지금, 여기, 나.	1) 라포(rapport)를 형성한다. 2)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긴다. 3) 시설 종사자이자 의무이행자로서 인권교육 참여에 대한 동기를 형성한다.
	다시 만나보는 그 아이	1) 아동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아동을 인식한다. 2) 아동에 대한 나의 인식을 성찰하고 재정립한다. 3) 아동의 주체성과 능동성, evolving capacity에 관하여 이해한다. 4) 아동의 생태체계를 이해하고 균형적으로 인식한다.
	나는야, 인권 전문가?!	1) 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점검한다. 2) 아동인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성을 안다.
	아동최상의 이익과 종사자의 노동권	1) 아동 최상의 이익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아동인권과 종사자 인권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이해한다.
	아동인권 이해하기	1) 보편적인 인권의 맥락에서 아동인권을 이해한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과 의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심화 활동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1) 유엔아동권리협약 4가지 일반원칙에 준거하여 지금의 우리 시설을 점검한다. 2) 점검 후, 유엔아동권리협약 4가지 일반원칙에 기반하여 문제해결 및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3)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의 구체적인 역할을 점검하고 재설정한다.
	Six Questions	1) 시설 내의 다양한 인권 이슈를 논하고 분석한다. 2) 종사자들 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다. 3)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를 성찰하고, 시설 종사자이자 의무이행자, 아동인권 옹호가로서 수행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모색한다.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	1)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우리 시설의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 2) 양육에 있어 주양육자들 간의 협력과 합의된 약속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 일관된 양육 체계를 세우고 실현하는데 종사자들 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

1) [기본 프로그램] 나와 아동, 그리고 아동인권

▣ 프로그램 목표

- 라포(rapport)를 형성한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행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본다.
- 아동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성찰한다.
- 인권과 아동인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명확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

▣ 소요시간

- 총 4시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참여 동기를 형성한다.
- 아동에 관한 개인의 관점을 점검하고 아동에 관한 시각을 재설정한다.
- 인권에 대한 지식수준을 점검하고 아동인권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의무이행자이자 아동인권옹호가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세부 활동

연번	활동명	활동 목표	소요 시간
1	지금, 여기, 나.	1) 라포(rapport)를 형성한다. 2)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긴다. 3) 시설 종사자이자 의무이행자로서 인권교육 참여에 대한 동기를 형성한다.	40분
2	다시 만나보는 그 아이	1) 아동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아동을 이해한다. 2) 아동에 대한 나의 인식을 성찰하고 재정립한다. 3) 아동의 주체성과 능동성, evolving capacity에 관하여 이해한다. 4) 아동의 생태체계를 이해하고 균형적으로 인식한다.	80분
3	나는야 인권전문가?	1) 인권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점검한다. 2) 아동인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명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40분
4	아동최상의 이익과 종사자의 노동권	1) 아동 최상의 이익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아동인권과 종사자 인권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이해한다.	40분
5	아동인권 이해하기	1) 보편적인 인권의 맥락에서 아동인권을 이해한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과 의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40분

[기본 활동1] 지금, 여기, 나.

▣ 활동목표

- 라포(rapport)를 형성한다.
-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긴다.
- 시설 종사자이자 의무이행자로서 인권교육 참여에 대한 동기를 형성한다.

▣ 소요시간

- 4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시설 종사자이자 의무이행자로서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다.

▣ 준비물

- PPT 1
- 활동지[‘지금, 여기, 나’ (인원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장의 활동지[지금, 여기, 나]를 나누어준다.
- 질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직업을 최초로 선택했던 이유와 직업의 의미에 관하여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적어보도록 한다.
- 모둠 구성원들과 각자 활동지에 적은 내용들을 이야기 나누고, 나눈 이야기

기들을 정리하여 모듬별 발표를 하도록 한다.

- [PPT 1]과 함께 참여자 모두 여의치 않은 근무 여건 속에서 본 교육에 참여한 것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고, 본 교육에 참여가 시설 종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임을 이야기 나눈다. 이를 통해 교육 참여의 동기를 촉진한다.

■ Tips

- 본 연구에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 및 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교육 참여의 방해요인으로 교육 시간대,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가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본 보고서 p.86의 인권교육 참여의 방해요인 설문 결과 참조). 이는 현 근무 여건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 진행자는 이러한 현장의 특성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참고하여 본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내가 선택한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김으로써 교육 참여에 대한 의미와 동기가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향후 진행될 교육 내용의 흐름을 간략히 설명함으로써 종사자 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임을 전달할 수 있다.
- 참여자들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면접조사 내용 발췌

이제 약 먹고 치료받는 애들 이런 경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머슴아들, 아주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밤에 늦게 들어오는데 연락을 썩까거든. (...중략...) 그런데 어떤 삶의 태도가 가치 지향적인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왔을 때는 이 조건과 상관없이 있어요. 이미 아이들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남아요.

[기본 활동2] 다시 만나보는 그 아이

▣ 활동목표

- 아동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아동을 이해한다.
- 아동에 대한 나의 인식을 성찰하고 재정립한다.
- 아동의 주체성과 능동성, evolving capacity에 관하여 이해한다.
- 아동의 생태체계를 이해하고 균형적으로 인식한다.

▣ 소요시간

- 8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아동의 존재론적 성찰을 통해 아동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자 끊임 없이 발달하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다.
- 아동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아동을 살펴봄으로써 ‘지금의 아동’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아동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내적 자원을 인지함으로써 아동 또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주체적 존재임을 성찰하고, 아동 당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 방법을 모색한다.

▣ 준비물

- PPT 1
- 활동지[내가 만난 그 아이] (인원수만큼)
- 활동지[다시 만나보는 그 아이] (인원수만큼)
- 활동지[아이가 사는 세상] (모둠수만큼)

- 전지 (모둠수만큼)
- 매직set (모둠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장의 활동지[내가 만난 그 아이]를 나누어 준다.
- 이제까지 시설 종사자로 일하면서 만났던 아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동 한 명을 떠올리도록 한다.
- 활동지[내가 만난 그 아이]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동 한 명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 모둠 구성원들과 자신이 만난 가장 기억에 남는 아동에 관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하며, 20분가량의 모둠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활동 예시〉

어느 한 종사자의 이야기

엄청 말썽을 많이 부리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나가서 그렇게 말썽을 부렸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중3때 만취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거예요.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하나.. 마음은 까마득한데 일단 아이를 데려 오기는 해야 하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왜그랬냐고 물어보면 말을 해줄는지... 근데 막상 가서 애를 보니까 아이 눈이 너무 슬픈거예요. 어떻게 중학교 3학년 아이 눈이 저렇게 서글플 수가 있나 싶어서 아무 말 않고 데리고 왔어요. 아침에 따로 불러다가 꿀물 한 잔 먹이면서 속은 괜찮냐, 너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무슨 그런 슬픈 눈을 하고 있냐, 니가 어리긴 해도 너가 속이 상해서 술을 마셨구나 생각했지 나쁜 짓하려고 마신 거라고는 생각을 안했다.. 하고 말했더니 물끄러미 쳐다보니 그제서야 영영 울더라구요. 아주 어릴 때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 이름도 모르고 엄마랑 살았던 그 동네는 알아서 술 먹고 그 동네를 헤매고 그랬나 보더라구요. 뭐 그 이후로도 이런 저런 말썽을 많이 부려서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아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이러지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말하다가도, “아, 그래, 나는 이 상황에 안 살아봤지”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나는 그래도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이렇게 컸지만 내가 진짜 부모님이란 떨어져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활을 했더라면 나도 어찌면 이럴 수 있겠다. 내가 애를 이해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겠구나..

- 모둠 별 이야기 나누기를 정리하고, 1인당 1장의 활동지[다시 만나보는 그 아이]을 나누어 준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여 적도록 안내하며, 10-15분가량의 개인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아동의 강점과 약점에 관하여 정리하는 동안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 모둠별로 활동 피드백을 나누도록 한다.
- 1모둠 당 1장의 활동지[아이가 사는 세상]을 나누어 준다.
- 모둠 별로 [내가 만난 그 아이]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정하도록 한다.
- 선정된 하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모둠 구성원들과 논의를 통해 가정, 지역 사회, 국가, 세계, 시간 체계별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정리하도록 한다.
- 전지에 발표용으로 정리하여 모둠별 발표를 하도록 한다.

▣ Tips

-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때때로 지금 아동이 보이는 행동이 환경적 요소와 상황적 맥락 모두의 영향을 받아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아동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아동을 대할 때가 있다. 활동지[내가 만난 그 아이]는 아동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한 아동이 살아온 삶의 맥락에서 현재 아동이 보이는 다양한 모습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동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동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배경과 상황적 맥락 모두를 고려하여 아동을 인식하는 것은 아동을 대하는 태도와 감정, 문제해결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행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이 스스로 함께하는 아동에 관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고 재정립 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
- 우리는 때때로 강점이나 긍정성은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레 넘어가고, 관계

나 생활에 갈등 혹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단점이나 약점 등에는 초점을 맞추기 쉽다. 활동지 [다시 만나보는 그 아이]는 아동의 장/단점, 긍정성과 부정성 모두를 균형적으로 분석해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동 당사자 또한 자신이 주체적이고 역량 있는 존재임을 알고, 스스로를 위한 보호체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만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에 긍정적인 방향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아동에게 이러한 역량을 발달시키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아동의 존재에 관하여 위와 같은 통찰을 하고 알맞은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진행자는 시설 종사자인 참여자들이 아동을 주체적이고 역량 있는 존재로 아동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아동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종사자의 역할 설정에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 아동이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활동지 [아이가 사는 세상]은 아동이 살아가고 성장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각 요인과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론적으로는 생태학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으며,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과 문제해결에 있어서 주변 환경을 차분히 살펴볼 줄 아는 시각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아동에게 보호요인이 되는 체계들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동시에,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을 둘러싼 환경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각 체계의 역할을 알맞게 설정하여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각 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참여자들이 [심화 활동2. 5+1]에 참여하는데 바탕이 되는 지식이자 시각을 형성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진행자는 이상의 사항을 숙지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기본 활동3] 나는야, 인권전문가?

▣ 활동목표

- 인권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점검한다.
- 아동인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명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소요시간

- 4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인권과 아동인권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정보의 수준을 확인한다.
- 아동인권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과 태도를 성찰한다.
-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낀다.

▣ 준비물

- PPT 1
- 활동지[아동인권 5줄로 정의하기] (인원수만큼)
- 전지 (모둠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매직set (모둠수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장의 활동지[아동인권 5줄로 정의하기]를 나누어 준다.
- 아동인권을 5줄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지 각자 생각을 적도록 한다.

- 모둠 구성원들과 내가 정의한 아동인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둠에서 정의하는 아동인권 5줄을 정리하도록 한다.
- 모둠별로 정의한 아동인권 5줄을 발표하도록 한다.

■ Tips

- 본 활동은 참여자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아동인권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확인하고 아동인권에 대한 정보와 지식수준을 살펴보는 활동으로 진행자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참여자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려 노력해야 한다.
- 본 활동에서 이해되고 파악된 참여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점과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 및 정보 수준은 다음에 이어질 [기본활동4]의 강의식 교육에 협약 중 어떤 조항에 좀 더 강조점을 두어 전달 할 것인지, 참여자들의 어떠한 관점에 변화를 유도할 것인지 등으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다.
- 참여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면접조사 내용 발췌

올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만족도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90%가 넘었어요, 좋았다고. 강사 선생님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잘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용 면에 있어서는 아동인권이 우선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략...)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린 적은 있어요, 강사님한테. 직원의 인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그때 강사님이 소수의 인권을 우선시 한다, 약자나 소수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더 반문은 못 하고, 그렇게만 받아들였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 인권은 다 무너지고 아동인권만 너무 또 대두가 되니까. (...중략...) 선생님들이 욕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애들은 선생님들한테 막 욕하고, 그냥 저희는 듣고, 그걸로 같이 욕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 인권은 사실 바닥인 거죠.

아동인권 하늘이고, 종사자 인권은 땅이에요. (...중략...) 종사자 인권이 어느 서류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지마”가 아니라 “당신네(종사자) 인권은 이렇습니다” 하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종사자도 이런 인권으로 너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게 기

룩에 나와 있어서. 모든 게 아동인권에 너무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나의 인권도 좀 교재화되고 명료화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보육사 선생님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아이들 인권만 있고 종사자 인권은 없다,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난감하구요. 어, 난감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직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활시설이라 집같은 느낌은 나지만 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된다” 그런 선은 두고 있어요. 근데 정말 종사자 인권이 없어요.

아이 아동의 인권은 항상 존중하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항상 종사자의 인권은 하나도 챙겨주지 않으셨어요. 아동학대 교육에서, 너무 겁을 줘서. 교육을 가해자의 시각으로 하시니까.

솔직히 저는 말하면 저는 인권교육 관련해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과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종사자의 인권 하면, 관장님께서 몇 년 전에 교육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아동은 인권이 있지만 종사자는 인권이 없어요, 선생님은 인권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라는 말을 해서 그때 모든 교육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되게 뼈저리게 느껴요. ‘아, 나는 인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들 그러실 텐데, 예전 아이들이랑 지금 아이들이랑도 너무 달라요.

[기본 활동4] 아동최상의 이익과 종사자의 노동권

▣ 활동목표

- 아동 최상의 이익의 개념을 이해한다.
- 아동인권과 종사자 인권 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한다.

▣ 소요시간

- 4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인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인권과 종사자 인권의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 종사자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아동인권의 이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준비물

- PPT 1
- 활동지[아동 최상의 이익이란?] (인원수만큼)
- 전지 (모둠수만큼)
- 매직set (모둠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장의 활동지[아동 최상의 이익이란?]을 나누어 준다.
- ‘아동 최상의 이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개별적으로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하며 5분가량의 시간을 제공한다.

- 모둠 구성원들과 구성원 각각이 정리한 내용들을 이야기 나누며 모둠별 발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15분가량의 모둠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모둠별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 Tips

- 모둠 발표 시에 전지에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주어진 활동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전지에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이 더 긴 시간을 소요할 것이므로 활동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지에 발표 내용을 정리 작성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 본 활동은 앞선 활동에서 도출될 수 있는 아동인권과 종사자 인권의 대립, 딜레마 등에 대한 알맞은 정보와 현명한 시각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이다. 진행자는 먼저 진행된 활동에서 나타난 종사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면접조사 발췌 내용을 반드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활동에서 참여자들이 아동인권과 종사자 인권에 관해 어떠한 생각과 고민, 감정을 보이는지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에 대한 내용이 본 활동에서 적절히 다뤄질 수 있도록 진행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3조 아동 최상의 이익>은 국제인권규범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에만 존재하는 내용으로서 인권에 있어 아동의 발달적 특성이 반영된 특별한 조항이다.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주장하거나 보장하는데 연령에 따른 발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인이 일정 부분 먼저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실현주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성인은 아동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가장 주요한 아동에 대한 이해, 아동의 이익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장치의 수단으로 기술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성인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내포한다. 아동최상의 이익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진행자는 아동최상의 이익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

고 참여자들에게 알맞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 종사자인 참여자들 입장에서 노동권의 이슈는 매우 중요하고도 오랜 시간 증진되지 않는 권리 영역에 속한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은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자 입장에서는 다루기 다소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다. 또한 교육에서 발언하더라도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참여자들의 무기력과 부정적인 정서들을 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시설 종사자이자 권리의 주체자로서 노동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당사자들 스스로 노동권의 증진을 위한 연대와 행동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최상의 이익>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먼저 헤아리고 실현시키는 성인들의 권리 인식 정도와 수준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다. 쉽게 말해, 안전하지 못한 시설은 아이들을 최적으로 보호할 수 없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지친 종사자들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최상의 이익>에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지역사회 각 시설에 대한 지원과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명시하며 이에 대한 책무성은 시설의 장, 지역사회의 장, 국가에게 있음을 기술한다. <제3조 아동최상의 이익> 외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 아동 돌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에서는 아동에 대한 양육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동 돌봄을 위한 기관, 시설 및 서비스 개발 보장을 논한다. 또한 <제25조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를 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은 상호유기적인 특성이 있는 만큼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과 함께하는 성인 종사자들의 권리수준 또한 높아져야 하며, 아동인권은 성인 종사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근거이자 힘이 될 수 있음을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뤄져야 한다.

-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카드가 있는 경우, 양육시설 종사자들의 권리를 포괄하고 있는 권리 조항 찾기 활동을 추가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18조와 25조를 찾을 수 있도록 참여를 극대화하고 역동성을 이끄는 교육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
- 본 보고서 p.92-104의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의 면접조사 결과 참조

[기본 활동5] 아동인권 이해하기

▣ 활동목표

- 보편적인 인권의 맥락에서 아동인권을 이해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과 의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소요시간

- 40분

▣ 교육방법

- 대집단 강의

▣ 기대효과

- 아동

▣ 준비물

- PPT 1

▣ 진행방법

- [PPT 1] 화면과 함께 아동과 아동인권을 주제로 강의식 교육을 진행한다.

< 강의 주요 내용 >

- 인권이란?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범
- 아동인권의 특수성
-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 Tips

- 본 활동은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자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활동인 만큼 진행자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습득하고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동인권의 주요개념들을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참여자들이 시설 내에서 아동들과 직접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과 함께 설명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2.면접조사 결과]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주요 아동인권 개념과 연결 지어 보는 것은 교육 내용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심화 활동] 아동인권 옹호가로서의 발돋움

▣ 프로그램 목표

- 인권에 기반하여 양육시설을 점검한다.
- 양육시설 내의 다양한 인권 이슈를 분석한다.
- 문제해결 방법과 발전 방안, 구체적인 나의 역할을 탐구한다.

▣ 소요시간

- 총 6시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인권에 기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하고 시설 내의 다양한 인권 이슈를 심층적으로 논하며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한다.
-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나의 역할을 설정한다.
- 종사자들 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강화한다.

▣ 세부 활동

연번	활동명	활동 목표	소요 시간
1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1) 유엔아동권리협약 4가지 일반원칙에 준거하여 지금의 우리 시설을 점검한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 4가지 일반원칙에 기반하여 양육시설을 점검하고 문제해결 및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3)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의 구체적인 역할을 점검하고 재설정한다.	120분

연 번	활동명	활동 목표	소요 시간
2	Six Questions	1) 인권에 기반하여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 내의 다양한 인권 이슈를 논하고 분석한다. 2) 종사자들 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찾는다. 3)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를 성찰하고, 시설 종사자이자 의무 이행자, 아동인권 옹호가로서 수행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모색한다.	120분
3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	1)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우리 시설의 양육을 점검한다. 2) 양육에 있어 주양육자들 간의 협력과 합의된 약속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 일관된 양육 체계를 세우고 실현하는데 종사자들 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120분

[선택 활동1] 아동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 활동목표

- 유엔아동권리협약 4가지 일반원칙에 준거하여 지금의 우리 시설을 점검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4가지 일반원칙에 기반하여 양육시설을 점검하고 문제해결 및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의 구체적인 역할을 점검하고 재설정한다.

▣ 소요시간

- 12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인권의 시각으로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
- 시설 종사자이자 아동인권의 의무이행자로서 자신들의 역할 수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
- 의무이행자이자 아동인권 옹호가로서 시설 내 아동인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한다.

▣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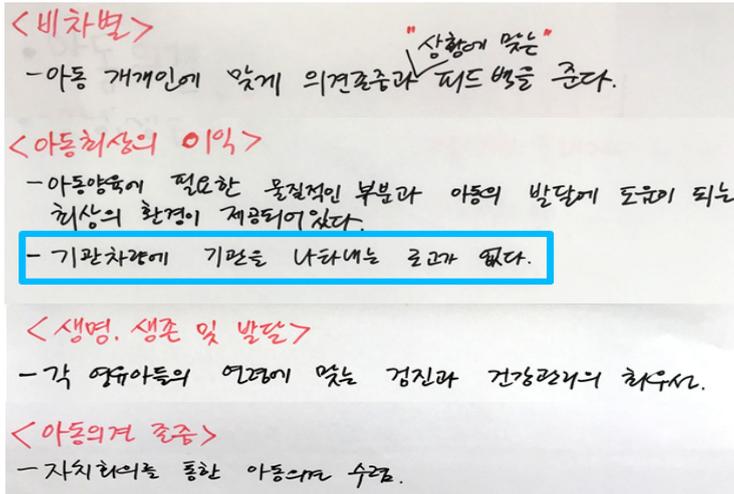
- PPT 2
- 활동지[인권의 시각으로 칭찬하기] (인원수만큼)
- 활동지[인권의 시각으로 집어보기] (인원수만큼)
- 전지 (모둠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매직set (모듬수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장의 활동지[인권의 시각으로 칭찬하기]를 나누어 준다.
- 4가지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우리 시설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아동인권의 모습들을 개별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리하도록 안내하며 15-20분가량의 시간을 제공한다.
- 1인당 1장의 활동지[인권의 시각으로 집어보기]를 나누어 준다.
- 4가지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우리시설에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인권의 모습들을 개별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리하도록 안내하며 15-20분가량의 시간을 제공한다.
- 모듬 구성원들과 구성원 각각이 정리한 내용들을 이야기 나누며 모듬별 발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30-40분가량의 모듬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모듬별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활동 예시〉



<활동 예시>

"참 잘했어요"

1. 아동 참여권 확대 & 존중권

- 자치회의 시행 - 견사항 수용, 안티는 것은 아예 전달
- 수요명, 프로그램실명 공모전 & 채택 후 시상
- 간사 선드 조사·저용
- 프로그램 진행 전 의견조사 - 처음대리 감독, 기록여행등

2. 생명, 생존, 발달

- 해! 만! 흡사 & 간사 & 이유성
- 여러개리 체험 프로그램
 - 사사 준비 (권 Ni)
 - 멘토 데이
 - 영·유아 오감 발달 pro
 - 신체 발달 pro
- 저서, 저기의 치료 서비스

<활동 예시>

"노력하세요!!"

- 인원 동원 용(?) 프로그램 참여
- 프로그램 결과비용 사진촬영 & 감상문
- 연계 투명을 위한 카드제작 가능 점포 사용
&) 피자마차, 노점 매복이 양대면 ..

▣ Tips

- 본 활동은 참여자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일반원칙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한 활동이다. 기본교육에 이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4가지 일반원칙에 대한 간단한 리뷰 또는 참여자들의 4가지 일반원칙에 대한 이해 정도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활동지[인권의 시각으로 칭찬하기]는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열심히 노력하였던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아동인권의 의무이행자로서 시설 내 인권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한 번 더 인식하고 종사자 역할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가치에 대해 되새기며 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이다. 진행자는 이에 관해 이해하고 활동에 대한 마무리 피드백에서 관련 사항을 참여자들에게 전달 할 수 있다.
- 활동지[인권의 시각으로 집어보기]에서 등장한 시설 내 보완/발전시키면 좋을 아동인권 사항들은 [선택활동2] Six Questions의 주요 주제로 삼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선택 활동2] Six Questions

▣ 활동목표

- 인권에 기반하여 양육시설 내의 다양한 인권 이슈를 논하고 분석한다.
- 종사자들 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다.
- 시설 종사자로서의 '나'를 성찰하고, 시설종사자이자 의무이행자, 아동인권 옹호가로서 수행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모색한다.

▣ 소요시간

- 12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인권의 시각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
- 아동인권의 현실 적용 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계한다.
-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나의 역할을 설정한다.

▣ 준비물

- PPT 3
- 활동지 [Six Questions] (인원수만큼)
- 전지 (모둠수 × 2)
- 매직set (모둠수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진행방법

- 1인당 1장의 활동지[Six Questions]를 나누어 준다.
- 현재 국내 양육시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며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고민을 시작하도록 안내한다.
- 활동지에 제시되어 있는 6개의 질문에 따라 개별 활동을 수행하도록 20-25분가량의 시간을 제공한다.
- 활동지[Six Questions]의 개별 활동 결과물을 모둠 내에서 공유하며, 모둠 구성원들 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모둠별 내 의견을 정리하도록 한다. 50-60분가량의 모둠 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모둠 활동 결과물을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 전체 참여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 Tips

- 문제의식과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참여자들 간의 시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충분한 논의 시간을 제공하여 참여자들 간의 시각 차이를 좁히고 국내 아동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진행자는 6가지 질문들 중 [Q3.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Q5. 누가 해결 할 수 있을까요?]는 특정한 인물이나 체계, 구조에 국한하여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자 던지는 질문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동인권의 이슈는 생태학적 관점에 따라 아동을 중심에 두고 아동을 둘러싼 가정, 지역사회, 국가, 세계, 시간 체계 각각에 문제의 책임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있다. 안내자는 기본 프로그램의 [활동2. 다시 만나보는 그 아이]에서 다루었던 아동의 생태체계에 대한 이해를 참여자들에게 언급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이 두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아동을 둘러싼 각 체계(layer)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생태학적 관점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며 더 나은 이해와 사고를 안내할 수 있다.

- 교육 시간에 따라 6가지의 질문들 중, [Q1. 무엇이 문제일까?]에 관한 부분까지만 개별 활동으로 진행하고, 모둠별 토의를 통해 모둠에서 가장 문제시 되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선정,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기술하고 나머지 4가지 질문은 모둠 활동으로 수행하도록 진행할 수 있다. 단, 마지막 질문인 [Q6.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는 참여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마지막 질문 [Q6.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서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촉진한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수행하는 것이 제도 변화만큼이나 중요함을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 진행자는 본 연구보고서에서 도출된 하단의 주요 주제들을 [Q1.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한 활동 주제로 제공함으로써 관련 주제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조화 할 수 있다. 진행자는 제공하는 주제들 각각에 있어 정확한 지식과 정보,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엿볼 수 있는 현장의 실제 등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 관련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으므로 각 주제별 주요 내용들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전문성과 현장의 실제적 도움이 되는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권한다.

- 출생등록 p.62-63 / p.112-115
- 원가정 보호 p.63-67 / p.116-132
- 〈아동에 대한 이해〉
-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p.73-74
- 장애아동 p.74-76
- 시설보호아동의 특성 p.101-103
- 시설보호아동의 특별한 욕구(상담, 장애아동 지원 관련) p.145-155
- 〈 양 육 〉
- 공동의 양육지침 p.78-80
- 양육환경과 양육 방법 p.160-164
- 통고제도와 소년재판 p.165-166

[선택 활동3] 아동인권에 기반한 양육

▣ 활동목표

-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우리 시설의 양육을 점검한다.
- 양육에 있어 주양육자들 간의 협력과 합의된 약속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일관된 양육 체계를 세우고 실현하는데 종사자들 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 소요시간

- 60분

▣ 교육방법

- 개인&모둠 활동형

▣ 기대효과

- 아동인권의 시각으로 시설 내 양육을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
- 현장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나의 양육 태도와 기술을 성찰한다.
- 종사자들 간의 각기 다른 양육 태도와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 아동 양육에 있어서 종사자들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설계한다.

▣ 준비물

- PPT 4
- 활동지[훈육이란?] (인원수만큼)
- 활동지[현명한 안내가 되기] (인원수만큼)

- 전지 (모둠수 × 2만큼)
- 필기구 (인원수만큼)
- 매직set (모둠수만큼)

▣ 진행방법

〈Part1_훈육이란? (50분)〉

- 1인당 1장의 활동지[훈육이란?]을 나누어준다.
- 훈육에 관하여 개별적인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도록 안내하며 10분가량의 시간을 제공한다.
- 모둠 구성원들과 구성원 각각이 정리한 내용들을 이야기 나누며 모둠별 발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20-25분가량의 모둠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모둠별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Part2_현명한 안내자 되기 (70분)〉

- 1인당 1장의 활동지[현명한 안내자 되기]를 나누어준다.
- 활동지에 제공되어 있는 사례를 읽고 각 문항에 개별적으로 답을 작성하도록 안내하며 15-20분가량의 시간을 제공한다.
- 모둠 구성원들과 구성원 각각이 정리한 내용들을 이야기 나누며 모둠별 발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30-40분가량의 모둠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 모둠별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 Tips

- 언어는 한 개인의 태도와 사고의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궁극적으로 훈육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지양하나 〈Part1_훈육이란?〉에서는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일상의 다양한 지도와 안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인

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나 문제 상황들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들여다보고자 일시적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진행자는 활동 마무리에서 ‘훈육’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궁극적으로 어떠한 용어의 사용으로의 변화가 필요한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전달할 수 있다.

▶ **훈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훈육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른다는 의미이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 단체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시키거나 규율위반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교정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출처: 교육학용어사전, 2011)
- 한편 훈육의 뜻은 영어 단어 discipline의 어원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훈육의 어원을 라틴어 ‘disciple(추종자, 복종, 가르치다)’에서 찾는다면 훈육은 권위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며 규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삼는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강제적인 통제나 조작적 자극 등이 동원되는 전통적·권위적 훈육과 연결된다. 반면 훈육의 어원을 라틴어 ‘disco(나는 배운다)’라는 뜻에서 찾는다면 훈육의 개념은 훈육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훈육풍토가 일치하는 학습 원리에 충실함을 의미한다. (출처: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 **훈육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훈육을 위해서는 흔히 의도적으로 상과 벌을 사용하지만, 생활습관의 형성은 사회화의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과 벌에 의한 훈육보다는 대화나 상담을 통한 심리적 교육의 절차나 원리를 적용하려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교육학용어사전, 2011). 아이를 엄격하게 다루어 더 나은 행동을 하게 하려는 권위주의적인 훈육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아이가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반면 최근의 경향인 긍정적인 훈육은 부모와 자녀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 사이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며, 벌주기가 아닌 가르침과 배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오늘도 화를 내고 후회하는 부모들을 위한) 긍정훈육, 사라 오크웰, 2018)

▶ **민법 징계권 조항 폐지와 ‘긍정 양육 129 원칙’**

2021년 1월에는 민법 915조에 있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이 63년 만에 폐지되었다. 이 조항에는 ‘친권자가 아이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동안 가정 내에서 ‘체벌을 허용해도 된다’라고 오용될 수도 있었기에 조항 폐지는 아동 체벌 금지를 제도적으로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21년 11월,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기념하며 징계권 폐지

를 알리고 긍정적인 양육 방법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아동 관련 시민 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권리 관점이 강조된 '긍정 양육 129 원칙'을 선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참고).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이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접근을 넘어 아동에게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 문화를 돌아볼 때다. 아동이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통제와 위협과 관리가 아닌 이해와 신뢰와 존중이 살아 있는 양육 문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출처: SBS뉴스, 배재학 기자, 2021. 11. 2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4616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129 원칙'**

1 긍정 양육의 기본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2 긍정 양육의 실천원리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 긍정 양육의 실천방법

- **자녀 알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를 잘 살펴주세요.
- **나 돌아보기**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 **관점 바꾸기** 내 자녀의 '문제'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
- **같이 성장하기**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
- **온전히 집중하기**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주세요.
- **경청하고 공감하기**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 **일관성 유지하기**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주세요.
- **실수 인정하기**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
- **함께 키우기** 양육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 <Part2_현명한 안내자 되기>에서는 훈육이 아닌, 육아에서 현명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 양육자가 되기 위한 작은 훈련의 과정을 제공한다. 본 활동에는 4개의 각기 다른 사례가 준비되어 있다. 진행자가 사전에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준비·제공할 수 있으며, 모듈별로 각기 다른 사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참여자들에게 더 적합하다 판단되는 사례를 중립적인 내용으로 새로이 구성하여 준비·제공할 수 있다.
- 활동지[현명한 안내자 되기]를 편집하여 Q1~Q4까지는 활동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Q5.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눠 볼 수 있을까요? 마치 실제로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는 역할극 활동으로 안내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활동 시간을 총 3시간으로 계획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로, 진행자는 사전에 활동 진행 방식과 시간 구성을 준비·계획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성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Q1~Q4에 대한 개별 활동지 작업 ② 모듈 토의 및 발표 준비 ③ Q5 제시와 함께 역할극 안내 ④ 모듈별로 Q1~Q4에 관해 정리된 내용 발표 및 Q5에 대한 역할극 발표 |
|--|

- 갈등과 문제 상황에서 아동이 성인 종사자를 함부로 여기거나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사자는 종사자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과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종사자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동이 보인 언어와 행동을 통해 종사자로서 인격적 훼손감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진행자는 아동인권을 위해 성인 종사자의 권리를 훼손시키거나 폄하하는 일은 인권의 맥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성인 종사자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인 종사자는 아동과 같은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의연하고 망설임 없는 어조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다. 이는 종사자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자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성인 종사자를 통해 습득하고 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아동인권의 진정한 교육 과정이기도 하다.

- 양육에 있어 주양육자들의 합의되고 합치된 양육 기준의 일관된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양육시설은 특히 주양육자가 여럿인 환경인만큼 합의되고 합치된 양육 기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필요로 하며, 양육자들 간의(즉, 종사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정보 공유, 논의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진행자는 이러한 부분을 참여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새길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더불어 시설마다 주양육자들 간의 소통 체계와 방식, 그 긴밀함은 상이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례나 긍정적인 사례들을 모듬 내 토의에서 발굴하여 참여자 모두와 공유하는 것 또한 긍정적인 진행 방식이 될 것이다.
- 진행자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과 그 과정의 중심에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3조. 아동 최상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유도할 수 있다.
- 양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양육이란 가장 중요한 사항이면서도 가장 어렵고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이다. 따라서 진행자는 비슷한 사례와 어려움을 경험한 종사자들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고 지지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모듬별 토의 시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모듬 토의를 통해 공감과 지지, 정서적 해소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 노하우, 보다 나은 가치와 태도를 교류하고 서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과정 또한 반드시 중요시 다루어져야 한다.

- 양육에 대한 주제는 아동에 대한 이해와 양육에 대한 이해 모두를 필요로 한다. 다음의 내용들을 본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로 숙지하기를 권한다.

〈아동에 대한 이해〉

- ☑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p.73-74
- ☑ 장애아동 p.74-76
- ☑ 시설보호아동의 특성 p.101-103
- ☑ 시설보호아동의 특별한 욕구(상담, 장애아동 지원 관련) p.145-155

〈양육에 대한 이해〉

- ☑ 공동의 양육지침 p.78-80
- ☑ 양육환경과 양육 방법 p.160-164
- ☑ 통고제도와 소년재판 p.165-166

- 참여자들의 현장에서의 양육을 엿볼 수 있는 면접조사 내용 발췌

이게 52시간이라는 게 아동 양육 시설의 특성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양육자가 수시로 바뀐다 그러면 아이들은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이 이틀이든 3일이든 해서 한 선생님이 계속해서 꾸준히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렵지 않나.

근래에 3교대 근무로 바뀌면서 그나마 예전에 비하면, 시간적으로 되게 좋아진 건 있는데, 3교대라고 인력을 주신 부분이 휴가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세 명에서 근무를 여덟 시간씩 꼬박 했을 때만 $3*8=24$, 그러면 하루가 딱 맞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로만 인력이 총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휴가를 가야 되면 대체인력이 없는 거예요. (...중략...) 연속성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휴가를 갔다가 와서 보면은 뭔가 좀 달라져 있고 그렇게,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애들이 익숙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은 잠깐 봤는데 애들이 며칠 동안 계속 못 보다가 또 어색해지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이 싸우고 있어서 제지하려고 뒤에서 껴안거나 팔목을 잡았는데도 “선생님이 때렸다” 이제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통의 지침은 ‘아이들 몸에 손대지 말 것’. 그리고 아이들 감정이 좀 잦아들 때까지 무조건 분리! 싸운 아이들끼리 분리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선생님도 가끔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 제외. 다른 선생님 투입해서 일단은 분리. 이게 공통의 지침입니다.

훈육지침은 없는 것 같고,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아이들이랑 뭔가 대치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자리를 우선 피하고, 그리고 다른 방 선생님한테 잠깐만 그 방을 맡게 부탁드립니다. 문제되는 아이랑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립되지 않기 위해서.

훈육 위주죠. 뭐 그냥 이제 얘기하고, 혼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육지침이라고 하면, 저희는 특별하게 훈육지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요, 얘기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힘든 부분이죠. 인제 뭐 계속 말로다가 하면 이 아이들이 그냥 말로 끝나는구나.

아이들에게 사실 “다음에는 그러지 마, ‘다음에 또 이러면 선생님 화낼 거야’ 이 정도의 이야기 정도지, 사실 아이들한테 벌을 줄 수가 없고, 뭐랄까요? 그럴 수가 없는 현실에서 아이들 지도가 더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어떤 일정한 벌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그런 거 자체도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되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악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좀 많이 선생님들의 의욕이 좀 소진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해요.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동지

- 지금, 여기, 나
- 내가 만난 아이
- 다시 만나보는 그 아이
- 아이가 사는 세상
- 아동 최상의 이익이란?
- 아동인권의 시각으로 칭찬하기
- 아동인권의 시각으로 집어보기
- Six Questions
- 훈육이란?
- 현명한 안내자 되기 _ 사례 적용①
- 현명한 안내자 되기 _ 사례 적용②
- 현명한 안내자 되기 _ 사례 적용③
- 현명한 안내자 되기 _ 사례 적용④

[활동지_지금, 여기, 나]

☞ 어떤 이유로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 시설 종사자가 아동의 삶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활동지_내가 만난 아이]

☞ 이제까지 만난 아이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1)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2) 그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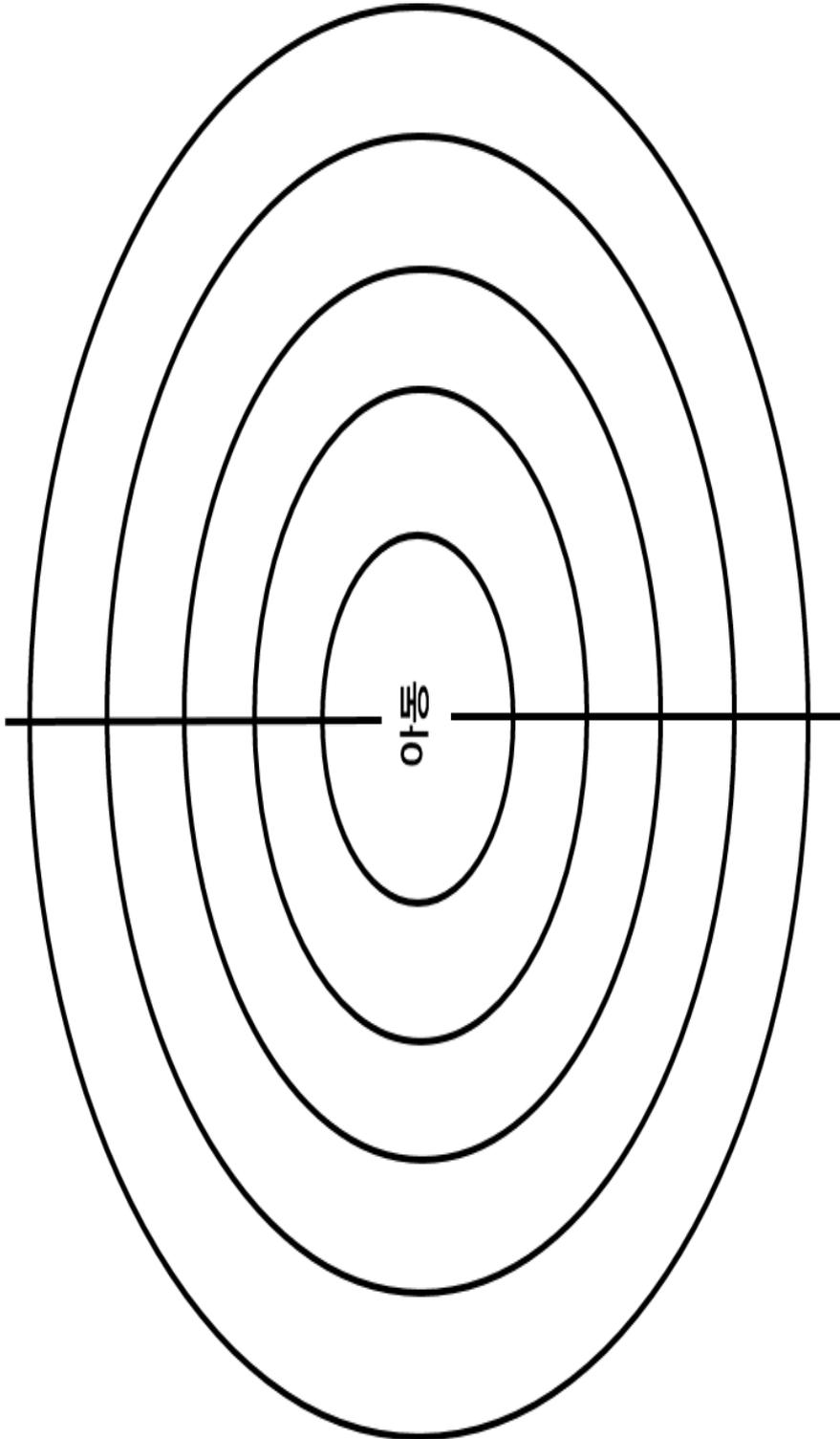
[활동지_다시 만나보는 그 아이]

☞ '내가 만난 아이'에서 소개한 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생각해보고 적어주세요.

강 점

약 점

[활동지_아이가 사는 세상]



[활동지_아동 최상의 이익이란?]

☞ '아동 최상의 이익'이란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나만의 정의를 내려 봅시다!



▶ 아동 최상의 이익이란, _____이다.

[활동지_인권의 시각으로 칭찬하기]

순 우리 시설 내에서 4가지 일반원칙이 잘 존중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 ‘self칭찬, self뿌듯 돌임!’을 나눠봅시다^^

<p>〈 제2조. 비차별 〉 비차별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우리들의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p>	<p>〈 제3조. 아동최상의 이익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해지고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p>
<p>〈 제6조. 생명, 생존 및 발달 〉 아이들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가 우리 시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쫓아주세요!</p>	<p>〈 제12조. 아동 견해 존중 〉 아이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우리 시설의 모습을 자랑해주세요^^</p>

[활동지_인권의 시각으로 집어보기]

☞ 4가지 일반원칙에 따라 조금 더 보완/발전되고 변화해야 할 우리 시설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p>〈 제2조. 비차별 〉 차별로부터 보호를 좀 더 실현시키면 좋겠다고 생각 드는 우리 시설의 모습은?</p>	<p>〈 제3조. 아동최상의 이익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해지면 좋는데 그렇지 못하여 안타깝고 아쉽다고 여겨지는 사항이 있다면?</p>
<p>〈 제6조. 생명, 생존 및 발달 〉 아이들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에 있어 우리 시설이 조금 더 훌륭하게 잘 실현시켜주면 좋겠다고 생각 드는 부분은?</p>	<p>〈 제12조. 아동 견해 존중 〉 아이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지고, 아이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p>

[활동지_Six Questions]

☞ 다음의 질문에 따라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Q1. “무엇”이 문제인가요?

Q2. “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Q3.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Q4.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Q5. “누가” 해결 할 수 있을까요?

Q6.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활동지_훈육이란?]

☞ 다음의 질문에 따라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Q1. “훈육”이란 무엇일까요?

--

Q2. “훈육”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감정 단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Q3. 2번 답변과 같은 감정 단어가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

[활동지_현명한 안내자 되기]

★ 사례 적용①

5살인 태현이는 장난감 더미와 자기가 방금 바닥에 집어던진 그림책들 위에 서있다. 그 전에는, 다른 두 살 된 아이를 때린 적도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담임선생님도 한 번 씩 친구들을 밀치거나 때린다는 이야기를 주신다. 언제부터인가 태현이의 이러한 무질서한 순간을 겪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고 있다. 이번에는 태현이를 위해서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질서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Q1.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요?

Q2.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까요?

Q3. 고려해야 할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개별적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초등학교 3학년이나 지적 기능은 7세 수준. 기본적인 생활이나 자기 챙김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할 수 있으나 또래와의 놀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에 실제 연령 대비 미숙함이 있음

Q4.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 1) 시설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
- 2) 성인이자 어른인 종사자로서 필요한 노력
- 3) 아동 당사자에게 필요한 노력

Q5.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마치 실제로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활동지_현명한 안내자 되기]

★ 사례 적용②

은영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은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손이 많이 간다. 학교 숙제, 준비물 챙기기, 밥 먹기 등 스스로 하기 보다는 모두 선생님들이 챙겨주어야지만 겨우 겨우 한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 혼자만 미술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았다고 연락을 하셨다. 아이에게 물으니 선생님이 챙겨주지 않아서 안가지고 갔다고 한다.

Q1.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요?

Q2.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까요?

Q3. 고려해야 할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개별적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초등학교 3학년이나 지적 기능은 7세 수준. 기본적인 생활이나 자기 챙김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할 수 있으나 또래와의 놀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에 실제 연령 대비 미숙함이 있음

Q4.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 1) 시설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
- 2) 성인이자 어른인 종사자로서 필요한 노력
- 3) 아동 당사자에게 필요한 노력

Q5.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마치 실제로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활동지_현명한 안내자 되기]

★ 사례 적용③

올해 중학생이 된 보영이가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낯선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하물며 학원 선생님께서 며칠 째 보영이가 학원에 오지 않았다고 연락을 주셨다. 분명히 오늘도 학원을 가겠다고 하고 나갔다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학원이 끝날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왔는데너무 당황스럽다. 아이를 잠시 불러 오늘 정말 학원을 다녀 온 것인지 물었더니 그렇다고 한다. “정말이야?”했더니 “아 ㅅㅂ.. 갔다 왔다니까 왜 자꾸 똑같은 질문하고 그래요 짜증나게”라고 반응한다.

Q1.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요?

Q2.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까요?

Q3. 고려해야 할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개별적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초등학교 3학년이나 지적 기능은 7세 수준. 기본적인 생활이나 자기 챙김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할 수 있으나 또래와의 놀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에 실제 연령 대비 미숙함이 있음

Q4.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 1) 시설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
- 2) 성인이자 어른인 종사자로서 필요한 노력
- 3) 아동 당사자에게 필요한 노력

Q5.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마치 실제로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활동지_현명한 안내자 되기]

★ 사례 적용④

우리 방에는 중·고등학교 남자아이들 7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오늘따라 아이들 방이 지저분한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간식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는 다같이 방을 치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가만히 듣는 아이들도 있고, 듣는 건지 마는 건지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중에 한 번씩 쉽게 지나가지 않는 진영이가 “B쌤은 우리 방 가지고 별 말 안하는데 왜 쌤은 맨날 우리 방가지고 뭐라고 해요?”라고 반응한다.

Q1.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요?

Q2.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까요?

Q3. 고려해야 할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개별적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초등학교 3학년이나 지적 기능은 7세 수준. 기본적인 생활이나 자기 챙김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할 수 있으나 또래와의 놀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에 실제 연령 대비 미숙함이 있음

Q4.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 1) 시설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
- 2) 성인이자 어른인 종사자로서 필요한 노력
- 3) 아동 당사자에게 필요한 노력

Q5.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마치 실제로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6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제언

1.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2. 다른 교육체계와의 연계와 단계적 통합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모니터링 제도 마련
4. 인권교육·훈련을 위한 실효적인 공적 지원
5. 인권‘교육’과 인권‘옹호’의 유기적 연결
6. 인권교육 활성화와 시설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지금까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관련 국내법·제도와 국제인권규범, 인권교육 현황, 그리고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 권리 교육과 인권교육을 보장하며,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CRC, 2019).⁷⁸⁾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아동 관련 종사자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낮은 인식을 우려하며 아동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훈련 시행을 반복하여 요청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아동 친화적인 아동복지시설을 조성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1.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관련된 규정으로는,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아동분야 사업안내’와 같은 지침이나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에 따라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물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제31조) 또한 아동의 생존·보호권 등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교육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진다. 제55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책무를 지는 교육·훈련의

78) CRC/C/KOR/CO/5-6, para. 13.

실시주기, 방법, 내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침에서도 교육에 필요한 예산 마련 정도와 언급될 뿐이다(보건복지부, 2021a). 교육·훈련의 내용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는지 또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아동권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이해되는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책무가 분명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결국 아동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침이나 평가지표가 아닌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법무부장관, 2021.06.30.), 해당 법률안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체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여 통합적·종합적 인권정책 추진에 겪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정책 반영을 통한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힌다. 이를 위해 “인권”과 “인권교육”⁷⁹⁾ 등을 정의하고(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학교, 공적 유관단체와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한다(제24조). 인권교육을 해야 하는 각 기관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제27조). 인권정책기본법안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시 역량이 주요하게 요구되는 변화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해야 할 책무에서 나아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특정 시설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무적 인권교육의 제도화는 곧 인권교육 제공기관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준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아동복지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실시주체인 법무부, 그리고 관계부처 모두가 갖춰야 할 전문성이다.

79) “인권교육”이란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사고와 행동방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교육, 훈련, 정보의 제공, 인식의 제고 및 학습 활동을 말한다. (인권정책기본법안 제3조 제2호)

2. 다른 교육체계와의 연계와 단계적 통합

면접조사에 참여한 시설 종사자 다수가 현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참여할 '의무'만 강조될 뿐, 실시되는 내용이 반복(혹은 중복)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각각의 기관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교육을 일원화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아동생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에 언급된 외부강사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어떠한 내용과 커리큘럼으로 인권교육이 제공되는지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강사에 대한 만족도조사 외에 인권강사의 역량을 모니터링하는 공적 체계도 부재하다. 이는 곧 어느 기관에서, 누구로부터 교육을 듣느냐에 따라 종사자의 만족도가 다른 결과로 나타났으며, 인권교육이 종사자의 직무태도와 인권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육의 내용과 교수방법의 적절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종사자가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보수교육, 직무교육 등 관련 교육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관련 교육과정이 인권교육을 포함해 하나의 틀 속에서 각 교육과정의 강점을 살리고 중복되지 않으면서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인권교육이 일관된 체계에서 실시될 때, 아동권리교육, 노동인권교육, 성인권교육 등 전문화된 인권교육이 사회 각 분야의 직무 특성에 맞게 연계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모니터링 제도 마련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질적인 평가 장치 또한 부재한 현실도 확인되었다. 다양한 인권 실태조사와 인식도조사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관련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능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그 역할을 하는 주체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일부 종사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시설 점검 때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답변했는데, 인권교육에 관한 모니터링은 민관이, 그리고 행정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예방적·협력적 관점이어야 한다.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아동복지시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다.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9항 제2호), 대부분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버 인권교육을 수강하거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국가인권위 강사를 섭외하여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실태를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복지시설 현장에 교육을 나가는 강사의 인권교육을 모니터링하고 지도·감독(슈퍼바이징)을 제공하여, 이들의 강사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권교육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다는 조사 참여자의 발언은 시대적 변화와 가치를 수용하여 점차 발전하고 확장되어야 할 인권교육 관계자의 책무를 내포한다. 본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강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4. 인권교육·훈련을 위한 실효적인 공적 지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 및 보급·관리하며,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관리하고, 인권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인권교육 관련 통계 또한 유지하고 관리하는 등 인권교육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8항 및 제9항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에 관한 이러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에 관한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미흡한 현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23%가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도 비준한 1991년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협약은 국가가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42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책무(「아동복지법」 제55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훈련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참여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 결과, 인권교육에 참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인력 부족과 업무 특성, 그리고 인권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큰 문제도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시설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인권교육을 마련하거나,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종사자와 직종별 참여자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편성하는 등 효과적인 인권교육 운영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 대면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명확하게 설계하여 안내하는 방안도 종사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5. 인권‘교육’과 인권‘옹호’의 유기적 연결

인권교육의 경험은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현장의 실천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인권에 기반한 관점과 태도를 내재화하며, 아동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춰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설계할 때 아동의 출생등록, 원가정 지원, 사생활과 참여권, 장애아동, 양육지침 등 구체적인 이슈를 질문한 이유도 결국 인권교육이 이러한 아동보호체계 현장에서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한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실현하는 인권옹호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의무이행자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인권을 함께 실현하는 동반자이자 당사자이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인권옹호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인권교육의 내용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례 중심이면서도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을 함께 짚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은 교육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촉발되고 훈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인권보장으로 구현된다.

인권교육이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제도에 명시된 원칙을 안내하는 것에서 나아가,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수방법(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이로써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보호하는 교육이 될 수 있어야(Education For Human Rights) 한다는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제2조).

6. 인권교육 활성화와 시설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무엇보다 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훈련이 확산되고 활성화되며 나아가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교육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 교육 시간대, 과중한 업무 등이 지적되었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노동강도’에 관한 만족도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보상(급여, 휴가 등)’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면접조사 전반에 나타난 종사자의 모든 어려움도 인력 부족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이는 곧 아동의 의료접근권을 저해하고, 원가정 보호에 필요한 시설의 역할과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연계에 최선을 다하기 어려우며, 장애아동과 경계선 지능 아동, 또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표출하는 아동에게 최적화된 지원과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참여자 대부분 인권교육을 포함해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시설을 벗어날 수 없는 업무 여건상 최소한의 교육을 받는 현실에 그쳤다. 결국 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중심에 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노동환경은 시설의 양적·질적 개선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아동 처우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육사를 비롯해 종사자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아동의 권리침해라 할 수 있다. 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업무환경 근로조건, 그로 인한 소진과 잦은 이직률 등의 문제는 다수의 연구에서 거듭 확인된 사실이다(황정화·김운정, 2017; 김아래미·이경상·김주일, 2015; 남희은·진혜민·백정원, 2015; 이재영·김진숙, 2011; 이은영·황혜원·김효진, 2011; 강현아 외, 200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목표가 분명하게 실천되려면, 생활시설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설계되고, 종사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인적·물적·재정적 지원도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첫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관리하

겠다고 밝혔는데(한겨레, 2021.08.09.), 시설 종사자의 어려운 업무여건을 인식하고 노동환경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할 것이다.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대규모 생활시설이 갖는 한계를 인지하고, 탈시설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준비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하고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CRC, 2019).⁸⁰⁾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당사자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은 원가정의 보호, 일시적으로 대리보호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도 가정형 보호를 원하고, 시설보호는 최선의 수단으로만, 이때에도 아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설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체가 생활하는 시설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1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된 것처럼(보건복지부, 2021.08.02.), 아동·청소년의 탈시설을 바라보는 중장기 정책도 아동복지시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찾고, 이를 위한 종사자의 대안적 업무환경을 고민해야 한다. 모두 종사자의 참여를 통해 종사자가 변화하는, 나의 삶과 아동의 삶을 옹호하는 사회의 동반자로 나아가는 인권교육을 통해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다.

80) CRC/C/KOR/CO/5-6, para. 32(a)

참고문헌

- 감영숙. (201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아동에 대한 인권의식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아, 노충래, 박은미, 신혜령. (2008).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소진 및 이직의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0(3), 107-127.
- 관계부처 합동.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 구미향, 황소영. (2014).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예 관한 인식 변화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7), 119-137.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 (11-1620000-000 810-01). 국가인권위원회.
- 국제아동인권센터. (2017). 2017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서울특별시.
-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 보건복지부 위탁 2019년도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 인식도조사 결과보고서.
- 김금희. (2020).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아동권리존중 인식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효과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7(4), 5-27.
- 김아래미, 이경상, 김주일. (2015).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이 소진 및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3(1), 55-75.
- 김정화. (2014).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인식과 유아권리존중 실행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3), 343-364.
- 김지혜. (2019). 체험적 인권교육활동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및 태도 변화.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3), 335-360.
- 김형모, 손병덕, 최권호, 김지영, 조영실, 오혜정, 김민선. (2019).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김희진, 김상원, 김진석, 엄문설, 이진혜, 장민정. (2021). 2021년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도 전문영향평가. 아동권리보장원 연구용역 보고서.
- 남희은, 진혜민, 백정원(2015). 사회복지사 소진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산학기*

- 술학회, 16(2), 1045-1053.
- 노혜련, 김미원, 조소연. (2015). *예방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론*. 학지사.
- 노혜련, 강정은, 김경희, 김유나, 김희진, 소라미, 김미애. (2021). 서대문구 시설보
호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아동의 지지체
계를 중심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 박명숙, 제철웅. (2018). 아동생활시설 미성년후견제도 실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44, 1-26.
- 박지영. (20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33, 1-27.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a).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 아동공동
생활가정 평가지침 -.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b). 2022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 보건복지부. (2019).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1].
- 보건복지부. (2021a).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1].
- 보건복지부. (2021b).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보건복지부. (2021c).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2021d). 2021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손명동. (202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문제행동과 종사자의 아동인권에 관한 인식이
지도방법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2(1), 2865-2878
- 아동권리보장원. (2020a). 2020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 아동권리보장원. (2020b). 2021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이은영, 황혜원, 김효진. (2011). 아동 공동생활가정 생활지도원의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1), 69-93.
- 이은주, 박명숙, 김형욱, 송사리, 박수영. (2010).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0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이재영, 김진숙. (2011).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교사의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0(4), 79-95.
- 이혜원, 이향란, 유정은, 이상애, 장혜영. (2010).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인권교

- 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4), 149-170.
- 정현수. (2017).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동북아법연구*, 10(3), 721-748.
- 제철웅. (2016). 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법학논총*, 36, 397-428.
- 제철웅, 김원태, 박명숙, 안재진, 장영인, 송지은. (2017).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 조영주. (201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인식하는 아동인권과 문제행동이 지도방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제아동인권센터. (201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아동 인권교육.
- 현영렬. (2009).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선미, 김제선, 이승훈, 김도희, 송승연, 이선향(2017).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황정화, 김윤정. (2017). 아동청소년 그룹홈 생활지도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4(2), 191-220.
- Butler, K., Currie, V., Reid, K., & Wright, L. (2021). Make our Voices Count: Children and young peoples' responses to a global survey for the Day of General Discussion 2021 on Children's Rights and Alternative Car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hild Rights and Development (IICRD).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CRC/Discussions/2020/DGD_Report_EN.pdf.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5). GENERAL COMMENT No. 7 (2005)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CRC/C/GC/7/Rev.1).

- <https://undocs.org/CRC/C/GC/7/Rev.1>.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6). GENERAL COMMENT No. 9 (2006)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C/GC/9). <https://undocs.org/CRC/C/GC/9>.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9). GENERAL COMMENT No. 12 (2009)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CRC/C/GC/12). <https://undocs.org/en/CRC/C/GC/12>.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3). General comment No. 14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art. 3, para. 1) (CRC/C/GC/14). <https://undocs.org/en/CRC/C/GC/14>.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5).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58/Rev.3). <https://undocs.org/en/CRC/C/58/Rev.3>.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6). General comment No. 20 (201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adolescence (CRC/C/GC/20). <https://undocs.org/en/CRC/C/GC/20>.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 General comment No. 24 (2019) on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 (CRC/C/GC/24). <https://undocs.org/en/CRC/C/GC/24>.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CO/5-6). <https://undocs.org/CRC/C/KOR/CO/5-6>.
- UN.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dgs.un.org/goals>
- UNGA. (1985).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A/RES/40/33).
<https://undocs.org/en/A/RES/40/33>.
- UNGA. (2010).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A/RES/64/142). <https://undocs.org/en/A/RES/64/142>.
- UNGA. (2012).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RES/66/137). <https://undocs.org/en/A/RES/66/137>.
- UNGA. (2019).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A/74/136). <https://undocs.org/en/A/74/136>.

웹사이트

- 국가인권위원회. (2019.09.26.). 보도자료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 복지부 ‘불수용’”,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id=7604562>, 접속일 2021.12.10.
- 경남도민일보. (2021.09.13.). "경계선지능아동 시설 전문인력 확충해야",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2426>, 접속일 2021.12.10.
- 경향신문. (2021.07.21.) “보호시설 아동, 외출·외박 제한에 취업 준비도 못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손발 묶인 아이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10600001#csidxe15ea8c28b888ba9bae2619f3399c29>, 접속일 2021.12.10.
- 법무부장관. (2021.06.30.). 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4389&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접속일 2021.12.10.
- 보건복지부. (2021.05.18.). 2020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page=1, 접속일 2021.12.10.

- 보건복지부. (2021.07.13.). 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425, 접속일 2021.12.10.
- 보건복지부. (2021.08.02.). 보도자료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703, 접속일 2021.12.10.
- 보건복지부. (2020.08.31.). 2020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59667, 접속일 2021.09.10.
- 아이마음 아이다음 캠페인, <https://www.imaum-idaum.com/Intro>, 접속일 2021.12.11.
-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접속일 2021.12.10.
- 한겨레. (2021.08.09.). 아동복지시설 첫 전수조사…욕설·협박·회초리 등 230명 학대 의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6992.html#csidx3411a194d48f3b0ad38f0dfb1bd7858>, 접속일 2021.12.11.

[별첨자료 1] 설문조사 질문지

조사지 번호

--	--	--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요구 및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여쭙고 있습니다. 설문지는 총 8쪽이며 예상 소요시간은 약 20~30분입니다.

참여자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설문내용은 관련 법(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하여 ▲누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 알 수 없게 익명으로 처리되고, 조사가 완료된 후 모든 식별정보 자료는 폐기합니다. 모든 응답은 ▲분석 자료로만 활용되며, 자료처리 과정에 있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응답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자료로 활용되며, 인권교육을 통해 참여자분들의 권리보장과 업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솔직한 답변으로 끝까지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에 모두 응답한 참여자 분들에게는 4,100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8월 31일 발송 예정). 설문지 마지막장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신 분들에게 기프티콘 발송이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는 발송 직후 즉시 파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 설문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결과가 궁금하다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 연구수행기관: 국제아동인권센터
- 담당연구자: 김희진, 강정은, 김상원, 노운영, 엄문설, 오혜민, 이하영, 전미아
- 설문 문의: 국제아동인권센터 (☐ incrc@incrc.org / ☎ 02-741-3132)
- 국가인권위원회 담당: 김현정(☐ hjkimedu@nhrc.go.kr ☎ 02-2125-9852)

9.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응답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시설 내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2) 시설 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2	3	4
3) 업무 수행 방법이나 업무 내용은 본인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4) 담당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한다.	1	2	3	4
5) 시설 내 상하직급 간/동료 간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다.	1	2	3	4
6) 시설 내 직원이 아동에게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한다.	1	2	3	4
7) 시설은 업무 관련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1	2	3	4
8) 시설은 업무 관련 개인 면담을 실시한다.	1	2	3	4

10. 평소 참여자의 업무 관련 만족도에 대하여 응답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받고 있는 보상(급여, 휴가 등)에 만족한다.	1	2	3	4
2) 내 업무의 고용안정성에 만족한다.	1	2	3	4
3) 나는 내가 하는 일의 의미에 만족한다.	1	2	3	4
4) 나는 내 근로시간에 만족한다.	1	2	3	4
5) 나는 내 노동 강도에 만족한다.	1	2	3	4

다음은 귀하의 근무지에서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귀 시설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주세요.

1. 최근 3년간 시설에 생활하는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상황에서 입소되었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도중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아동이 있었나요?

- ① 예 (☞ 1-1) ② 아니오 (☞ 2)

1-1. 당시 어떤 방식으로 아동의 출생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문제를 해결했나요?

- ①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보았음
 ② 관련 공무원(아동보호전문요원, 아동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등)/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
 ③ 외부 민간단체나 변호사의 도움
 ④ 기타()

2. 시설에서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관련 정보나 교육(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이나 지침 포함)을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3. 연락이 닿는 원가정 보호자(부모 또는 친인척 등 아동의 주 양육자)가 있는 아동의 경우, 다음의 항목과 관련하여 귀 시설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음
지속해서 원가정 보호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게 지원한다. (예: 주말/방학/명절 때 방문)	1	2	3	4	0
아동이 원가정 보호자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을 다루어준다.	1	2	3	4	0
원가정 보호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지원한다.	1	2	3	4	0
원가정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다.	1	2	3	4	0
아동 관련 정보(예: 시설 내 활동, 학교 활동 등)를 원가정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예: 카톡, 문자 등 SNS 활용).	1	2	3	4	0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2	3	4	0
아동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과정에 원가정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2	3	4	0

4. 아동 중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아동이 있나요?

- ① 예 (☞ 4-1) ② 아니오 (☞ 5)

4-1. 연락이 단절된 경우, 아동의 후견인이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후견인이 없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

5. 형제자매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나요?

- Ⓞ 해당 없음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이 없음) (☞ 7)
- ① 예 (☞ 7) ② 아니오 (☞ 6)

6.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아동이 원할 때 언제든지 형제자매에게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이유를 적어주세요 ()

7. 시설은 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외출, 휴대폰 사용, 취침 시간 등) 아동과 함께 정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8. 아동은 시설의 아동자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나요?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도 포함합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8-1. 아동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설 운영에 반영되고,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공지사항 안내나 여타 방법으로 아동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 ⑤ 모르겠다

9. 아동은 학원, 복지관, 방과후 학교 등의 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0. 아동은 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나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도 포함합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1. 아동은 원하는 종교를 스스로 선택하나요?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별첨자료 2] 면접조사 질문지

1. 종사자의 업무환경과 아동보호 업무

1) 계약조건, 근로시간/형태, 휴게시간/휴게공간 등

** 인권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교육시간, 대체교사 확보 어려움, 과중한 업무가 차례로 높게 나왔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아동의 병원진료를 신속하게 받기 어려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업무환경이 일하기에 적절한지, 좋은 점과 어려운 점 등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시설 내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법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 시설 내 종사 인력의 업무는 어떻게 분담되어 있고, 협력하나요? (보육사, 생활복지사,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자립전담요원의 업무 등)

3) 업무와 관련 교육과 상담이 제공되나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4) 아동의 시설보호는 어떻게 결정되며, 이 내용은 종사자와 기존에 생활하고 있던 아동들에게 어떻게 안내되나요? 그 과정에서 어렵거나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2. 아동의 원가정 교류와 지원

1)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 최근 3년간 출생신고 안 되었거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아동을 보호한 경우가 있나요? 출생신고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였나요?

**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의 시설은 출생미신고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알아보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등)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37.9%였습니다.*

2) 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관련된 정보나 교육은 어떻게 제공받고 있나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종사자의 업무로 안내하거나 또는 지자체가 정기

적인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안내하나요?

- 3) 시설이 아동과 원가정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하기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시설이 원가정 지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도우려면,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4) 부모와 연락이 단절되어서 아동보호에 어려움(병원치료, 보험가입, 휴대폰 개통 등)을 겪은 적이 있나요? 이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예: 후견인, 지자체의 지원 등)
- 7) 아동의 가정복귀 절차는 어떻게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종사자와 아동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 8) 아동이 가정에 복귀한 경우에도, 시설이 추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3. 아동의 시설 내 사생활과 참여권

- 1) 아동은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나요? 원치 않는 경우, 참여하지 않나요?
- 2) 아동은 원하는 종교를 스스로 선택하나요? 종교기반 시설의 경우, 종교 의례에 참여하지 않거나 타 종교시설에 다녀오는 것도 가능한가요?
- 3) 아동이나 종사자가 외부 기관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4) 진정제도가 잘 이용되지 않는 편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 5) CCTV 열람은 누가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관리되나요?

4. 시설보호아동의 특별한 보호조치

- 1) 시설 내 상담 전문인력이 있다면, 업무내용은 어떠한지, 해당 상담인력이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2) 외부 상담인력은 어떻게 연계되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나요?

- 3) 시설 내 장애아동(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모두 포함)이 있는지, 있다면 적절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어려운 경우,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4) 아동의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관련하여 지자체의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요?
- 6) 시설 내 아동이 규칙을 어기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예: 공동의 훈육지침이 있다, 종사자 업무회의를 한다 등)

응답해주신 내용들은 종사자가 활용하는 인권교육 자료로 개발하여, 현장에서 아동보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자료”에 꼭 담겨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되거나,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인쇄일 | 2021년 12월 13일
| 발행일 | 2021년 12월 13일
| 발행인 | 송 두 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인권교육기획과 02)2125-9852
| F A X | 02)2125-0917
| E-mail | hjkimedu@humanrights.go.kr
| 제 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 978-89-6114-859-7 93370 비매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